

#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

2020. 6. 17.

공정거래위원회

#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0-90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제2020-9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0. 6. 17.  
공정거래위원회

제1조(목적) 이 공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개별법상 표시·광고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의무사항과 권고사항을 통합공고하여 소비자의 구매활동 및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고의 작성)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고한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고내용 중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개정하거나 추가한 사항(이하 "개정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이나 고시 등의 공포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 내용을 공고한다.

제3조(이용상의 주의) 제2조제2항에 의한 개정등이 있는 경우 또는 관계행정기관과의 업무협의절차 등의 이유로 이 공고의 내용과 실제 시행중인 법령·고시의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공고를 이용하는 자는 소관 부처에 연락하여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별 표>

## <목 차>

### I. 일반적 사항

1. 가격	
<input type="checkbox"/> 가격의 표시.....	1
2. 거래	
<input type="checkbox"/> 다단계판매 후원수당 표시·광고 .....	1
<input type="checkbox"/> 전자대금 결제수단 발행자의 표시의무 .....	1
<input type="checkbox"/>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사항 .....	2
<input type="checkbox"/>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의무사항 .....	3
<input type="checkbox"/> 할부거래업자의 표시사항.....	4
3. 계량	
<input type="checkbox"/> 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금지.....	5
<input type="checkbox"/> 계량기의 최대허용오차 등의 표시.....	6
<input type="checkbox"/> 정량의 표시 .....	7
4. 환경	
<input type="checkbox"/> 분리배출의 표시 .....	10
<input type="checkbox"/> 환경표지 등의 사용 .....	12
<input type="checkbox"/> 제품의 환경성 표시.....	12
<input type="checkbox"/> 탄소성적표지 등의 사용.....	13
5. 원산지	
<input type="checkbox"/> 원산지의 표시.....	19
6. 제품 등의 인증	
<input type="checkbox"/> 제품·서비스의 인증표시.....	20
<input type="checkbox"/> 제품의 단체표준인증 표시 .....	21
<input type="checkbox"/> 성능인증제품의 인증 표시 .....	22
<input type="checkbox"/> 제품 및 사업장의 인증 표시 .....	22
7. 상표·특허·실용신안·디자인	
<input type="checkbox"/> 등록상표의 표시 .....	23
<input type="checkbox"/> 특허표시 .....	23
<input type="checkbox"/> 실용신안등록 표시 .....	24
<input type="checkbox"/> 디자인등록 표시 .....	24

## Ⅱ. 분야별 통합정보

### 1. 농림수산업

(1) 농산물	
□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 표시 .....	25
□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	26
□ 무농약농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무농약표시(20.8.28 시행)	26
□ 지리적 표시(농산물 가공품을 포함) .....	27
□ 표준규격품의 표시 .....	28
□ 원산지의 표시(축산물, 임산물 포함).....	28
□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	30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표시 .....	31
□ 이력추적관리 표시 .....	31
(2) 축산물	
□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32
□ 축산물의 표시 .....	33
□ 축산물의 검사 합격 표시 .....	33
□ 식육의 표시 .....	33
□ 축산물 이력관리 표시 .....	34
(3) 수산물	
□ 표준규격품의 표시 .....	35
□ 품질인증품의 표시 .....	35
□ 친환경수산물의 표시.....	36
□ 지리적 표시 .....	37
□ 원산지의 표시 .....	37
□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표시 .....	38
(4) 임산물	
□ 품질인증품의 표시.....	39
□ 규격 및 품질의 표시.....	40
□ 품질검사 결과표시.....	41

### 2. 제조업

(1) 식품	
□ 식품등의 표시.....	42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	42
□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43
□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44
□ 해외 유기식품 등의 광고의 금지	44

<input type="checkbox"/> 식품(농수산물가공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포함) 원료의 원산지의 표시 (식품접객업 등 음식점 포함) .....	45
<input type="checkbox"/> 인삼류의 연근 및 원산지 표시 .....	56
<input type="checkbox"/> 어린이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함유 식품의 표시 .....	56
<input type="checkbox"/> 어린이기호식품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	57
<input type="checkbox"/>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의 제한·금지 .....	58
<input type="checkbox"/>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	58
 (2) 의약품	
<input type="checkbox"/> 의약품의 표시 .....	59
<input type="checkbox"/> 의약외품의 표시 .....	64
<input type="checkbox"/> 동물용의약품의 표시 .....	69
 (3) 의료기기	
<input type="checkbox"/> 의료기기의 표시 .....	69
<input type="checkbox"/>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표시 .....	72
 (4) 화장품	
<input type="checkbox"/> 화장품의 표시 .....	75
 (5) 공산품	
<input type="checkbox"/>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표시 .....	79
<input type="checkbox"/>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의 표시 .....	106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등의 표시 .....	110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 .....	113
<input type="checkbox"/> 건축자재 실내표지 .....	113
<input type="checkbox"/> 효율관리기자재의 표시 .....	114
<input type="checkbox"/>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 .....	114
<input type="checkbox"/>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도 표시 .....	115
<input type="checkbox"/> 소음발생건설기계 소음도 표시 .....	115
<input type="checkbox"/> 가전제품 저소음 표시 .....	116
<input type="checkbox"/>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의 표시·광고 .....	116
 (6) 화학제품	
<input type="checkbox"/>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표시기준 .....	118
<input type="checkbox"/> 살생물제품 표시기준 .....	120
<input type="checkbox"/> 살생물처리제품 표시기준 .....	122
<input type="checkbox"/> 표시·광고의 제한 .....	123
 (7) 기타	
<input type="checkbox"/> 농약의 표시 .....	124
<input type="checkbox"/> 농약의 광고 .....	125
<input type="checkbox"/> 담배성분의 표시 .....	125

<input type="checkbox"/>	담배에 대한 오도 문구 사용제한 .....	126
<input type="checkbox"/>	특수용 담배의 표시 .....	127
<input type="checkbox"/>	담배, 주류의 경고 표시·광고 .....	127
<input type="checkbox"/>	비료의 보증표시 .....	129
<input type="checkbox"/>	사료의 표시 .....	129
<input type="checkbox"/>	유기농업자재의 표시 .....	165
<input type="checkbox"/>	유독물의 표시 .....	165
<input type="checkbox"/>	간행물의 정가 표시 .....	167
<input type="checkbox"/>	신문의 광고게재시 유의사항 .....	167
<input type="checkbox"/>	정기간행물의 광고게재시 유의사항 .....	167
<input type="checkbox"/>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167
<input type="checkbox"/>	해양오염 방제자재·약제의 형식승인의 표시 .....	170
<input type="checkbox"/>	소방용품의 인증표시.....	170
<input type="checkbox"/>	가공제품의 방사선 작용 표시·광고 금지.....	174
3.	가스업	
<input type="checkbox"/>	가스용품의 합격표시 .....	174
<input type="checkbox"/>	액화석유가스 충전량등의 표시 .....	175
<input type="checkbox"/>	고압가스 용기 등의 표시 .....	175
<input type="checkbox"/>	고압가스 용기의 합격표시 .....	181
4.	건설업	
<input type="checkbox"/>	전기공사표지의 게시 .....	183
<input type="checkbox"/>	건축물의 분양광고 .....	184
<input type="checkbox"/>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187
<input type="checkbox"/>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표시.....	187
5.	운수업	
<input type="checkbox"/>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의 표시 .....	188
6.	통신업	
<input type="checkbox"/>	정보통신망의 인증표시 .....	188
<input type="checkbox"/>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의 표시 .....	188
<input type="checkbox"/>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의 표시·홍보 .....	189
7.	금융업	
<input type="checkbox"/>	투자광고 .....	189
<input type="checkbox"/>	대부조건의 게시 .....	193
<input type="checkbox"/>	대부조건 등의 표시·광고.....	193
<input type="checkbox"/>	예금보험관계의 표시 .....	195
8.	사업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변호서비스광고 .....	199
<input type="checkbox"/>	외국법자문서비스 광고.....	201

9. 교육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학원교습비 등의 표시·광고 .....	202
<input type="checkbox"/> 자격증 관련 표시 .....	203
<input type="checkbox"/> 학원 등의 선행학습 광고 금지.....	204
10. 보건사업	
<input type="checkbox"/>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	204
<input type="checkbox"/> 진료과목의 표시 .....	206
11. 오락, 문화관련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우수문화상품등의 지정·표시 .....	207
<input type="checkbox"/> 복권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광고 .....	208
<input type="checkbox"/> 경륜·경정의 승차투표권의 표시·광고 .....	209
<input type="checkbox"/> 사행기구의 표시 .....	210
<input type="checkbox"/>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표시 .....	210
<input type="checkbox"/> 비디오물의 표시 .....	212
<input type="checkbox"/> 게임물의 표시 .....	213
<input type="checkbox"/>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	214
<input type="checkbox"/> 결혼중개업자의 표시·광고 의무사항.....	219

## I. 일반적 사항

구 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1. 가격	<input type="checkbox"/> 가격의 표시 가. 가격표시 명령권자 : 주무부장관 나. 가격표시 명령이 필요한 경우 -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가격표시 명령 내용 - 당해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 라. 가격표시 의무자 : 사업자 - 물품을 생산·판매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 - 용역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마. 표시 의무자의 가격 표시방법 - 물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거래 상대방이나 일반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	-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 동법 시행령 제5조 - 관련 고시 · 가격 표시 제 실시요령 ·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 044-203-4382)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 044-203-5228) -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044-203-5236)
2. 거래	<input type="checkbox"/> 다단계판매 후원수당 표시·광고 가. 표시의무자 : 다단계판매업자 나. 표시내용 - 전체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평균 후원수당 등 후원수당의 지급현황에 관한 정보 다. 표시방법 - 평균 후원수당과 후원수당의 분포를 알 수 있도록 도표로 작성된 서식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함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 044-200-4438)
	<input type="checkbox"/> 전자대금 결제수단 발행자의 표시의무 가. 표시의무자 -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전자적 대금지급 방법으로서 재화등을 구입·이용하기 위해 미리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의 결제수단의 발행자 나. 표시내용 - 당해 결제수단의 신뢰도의 확인과 관련된 사항, 사용상의 제한이나 그 밖의 주의 사항 등을 표시 또는 고지 1)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자본금 규모 및 자기 자본현황 등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사실 및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 동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 044-200-4465)

구 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계약의 내용(채무지급보증범위를 포함한다)과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p> <p>3) 잔여금의 현금환불과 관련된 사항</p> <p>4) 반품시 처리기준 및 현금화와 관련된 사항</p> <p>5) 당해 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몰 현황</p> <p>6) 당해 결제수단 사용상 제한 및 주의사항</p> <p>7) 그 밖에 소비자에게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p>		
	<p><input type="checkbox"/>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사항</p> <p>가. 표시의무자 :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p> <p>나. 표시내용</p> <p>1) 상호 및 대표자 성명</p> <p>2)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p> <p>3)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p> <p>4) 사업자등록번호</p> <p>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p> <p>6)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p> <p>다.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의 사항들은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함. 다만,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은 소비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음</li> <li>- 위의 사항들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연결하여야 함</li> <li>-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로서 이동통신단말기 등 출력에 제한이 있는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사업자는 위 표시내용을 사이버몰의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할 수 있음. 이 경우 대표자</li> </ul>	<p>- 전자상거래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p> <p>- 동법 시행령 제11조의4</p> <p>- 동법 시행규칙 제7조</p> <p>- 관련 고시</p> <p>·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p>	<p>- 공정거래위원회</p> <p>전자거래과</p> <p>(☎044-200-4465)</p>

구 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성명·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이버몰이용약관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p>		
	<p><input type="checkbox"/>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의무사항</p> <p>가. 표시·광고 시기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행하는 경우</p> <p>나. 표시·광고시 의무적 포함 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호 및 대표자 성명</li> <li>2)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li> <li>3)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한 통신판매업자 신고번호·신고기관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li> </ol> <p>*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와 계약 체결 전 다음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화 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에 관한 사항</li> <li>2) 재화 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li> <li>3) 재화 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li> <li>4) 재화 등의 공급 방법 및 시기</li> <li>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한다)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함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li> <li>6) 재화 등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불의 조건 및 절차</li> <li>7)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재화 등의 전송·설치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li> <li>8) 소비자피해보상, 재화 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과 사업자간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li> <li>9)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포함)</li> <li>10)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때까지</li> </ol>	<p>- 전자상거래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p> <p>- 동법 시행령 제20조</p> <p>- 관련고시</p> <p>·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p> <p>· 구매안전 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p>	<p>- 공정거래위원회</p> <p>전자거래과</p> <p>(☎044-200-4465)</p>

구 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대통령령이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 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p> <p>11) 재화등의 가격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p> <p>12) 판매일시·판매지역·판매수량·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p>		
	<p>□ 할부거래업자의 표시사항</p> <p>가. 표시시기 :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와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p> <p>나. 표시내용</p> <p>1)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p> <p>2) 현금가격(할부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의 공급을 받은 때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전액)</p> <p>3) 할부가격(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나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과 할부금의 총합계약)</p> <p>4)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 및 지급시기</p> <p>5)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p> <p>6) 계약금(최초지급금·선수금등 명칭이 무엇이든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p> <p>7) 지연손해금 산정시 적용하는 비율 단,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간접할부계약의 경우 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p> <p>다. 할부계약내용의 표시방법</p> <p>1) 사업소에 게시하거나 서면으로 제시하되, 사업소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붙여야 하며, 서면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9호 이상의 큰 활자를 사용할 것</p> <p>2)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은 소수점이하</p>	<p>-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p> <p>- 동법 시행령 제4조</p> <p>- 동법 시행규칙 제2조</p>	<p>-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 044-200-4832)</p>

구 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1단위 이상까지 표시할 것</p> <p>라. 적용제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li> <li>2) 농·수·축·임·광산물로서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되지 아니한 것</li> <li>3)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li> <li>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li> <li>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3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어음</li> <li>6) 부동산</li> </ol>		
3. 계량	<p><input type="checkbox"/> 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금지 등</p> <p>가. 누구든지 법정단위 외의 단위(이하 “비법정단위”라 한다)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나 상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li> <li>2. 선박·항공기 또는 군용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li> <li>3.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li> <li>4.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계량기나 상품</li> <li>5. 수출물품의 원료 또는 부품으로서 수입하는 계량기나 상품</li> </ol> <p>나. 누구든지 비법정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량</li> <li>2. 선박·항공기 또는 군용 물품의 계량</li> <li>3.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li> </ol>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 043-870-5516)

구 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시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비법정단위를 법정단위와 함께 표시할 수 있다.</p> <p>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비법정단위의 사용을 단속하고, 비법정단위를 사용한 자에게는 법정단위의 표시를 명할 수 있다.</p> <p>마. 제4항에 따라 법정단위의 표시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명령을 이행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p> <p>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법정단위 표시 명령 및 결과보고에 관한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p>□ 계량기의 최대허용오차 등의 표시</p> <p>가. 표시의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량기 제작업의 등록을 한 자</li> <li>- 계량기 수리업의 등록을 한 자</li> <li>- 계량기 수입업의 신고를 한 자</li> </ul> <p>나. 표시대상 계량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식승인대상 계량기(동법 시행령 별표 7)</li> </ul> <p>다. 표시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대허용오차</li> <li>2) 기호·상표 또는 업체명(수입하는 계량기의 경우는 제조한 자의 상표 및 업체명을 포함)</li> <li>3) 제작·수입 또는 수리한 일자</li> <li>4) 품질보증기간</li> <li>5) 사용상의 주의사항</li> <li>6) 소비자의 상담을 위한 연락처</li> </ol> <p>라.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량기에 직접 표시가 불가능한 것은 표장에 표시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량에 관한 법률 제38조</li> <li>- 동법 시행규칙 제33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통상자원부</li> <li>- 국가기술표준원</li> <li>- 계량측정제도과</li> <li>(☎ 043-870-5512)</li> </ul>

구 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 세부내용은 계량기별 형식승인기준(법 제 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으로 정한다.		
	<input type="checkbox"/> 정량의 표시 가. 표시대상 제품 - 법정단위인 길이, 질량, 부피, 면적과 개수 [이하 “정량”(정량)이라 한다]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나 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게 한 상품 * 정량표시상품 종류 및 허용오차(첨부 참조) 나. 표시의무자 - 정량표시상품을 제조·수입·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다. 표시내용 - 정량표시 상품사업자의 상호, 성명 및 정량 라. 표시장소 - 용기 또는 포장 마. 표시방법(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 첨부 참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1조 -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7조 제1항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 043-870-5514)

<첨부>

### **정량표시상품의 종류**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곡류(미곡, 맥류, 잡곡류를 말한다)</li> <li>2. 두류(가공품을 포함한다)</li> <li>3. 쌀가루, 보리가루 및 그 외의 곡류가루(가공품을 포함한다)</li> <li>4. 전분류</li> <li>5. 채소류(김치류 등 가공품을 포함한다)</li> <li>6. 과일류(가공품을 포함한다)</li> <li>7. 설탕(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및 올리고당류를 포함한다)</li> <li>8. 차, 커피, 초콜릿류 및 코코아(가공품을 포함한다)</li> <li>9. 향신료</li> <li>10. 면류</li> </ol> |
|---|

11. 과자류 및 빵류(캔디류, 츄잉껌 및 빙과류를 포함한다)
12. 육류(냉동품 및 가공품을 포함한다)
13. 꿀
14. 우유(유가공품을 포함한다)
15. 생선류, 어패류 및 수산물(생선알, 냉동품 및 가공품을 포함한다)
16. 해조류(신선한 것, 냉장한 것, 말린 것 및 가공품을 포함한다)
17. 조미식품, 식용유지류 및 장류
18. 소스류(면류의 국물, 불고기, 갈비 등의 소스, 스프류 및 토마토케첩, 마요네즈, 드레싱을 포함한다)
19. 간장 및 식초
20. 조리식품(즉석식품, 냉동식품, 냉장식품, 통조림과 병조림을 포함한다)
21. 조미 반찬류
22. 음료류 및 주류(의약품은 제외한다)
23. 액화석유가스(1회용 용기에 충전된 것에 한정한다)
24. 윤활유
25. 도료(유성도료, 수성도료, 락카, 합성수지도료 및 도료용 신나를 포함한다)
26. 합성세제(비누, 세정제, 표백제 및 섬유유연제를 포함한다)
27. 위생용품 및 생활용품(일회용품, 물티슈, 화장지, 랩, 호일,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및 탈취제를 포함한다)

### **정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1. 질량 또는 부피 상품의 표시량 (g 또는 mL)	허용부족량	
	표시량의 백분율	g 또는 mL
50 이하	9	
50 초과 100 이하		4.5
100 초과 200 이하	4.5	
200 초과 300 이하		9
300 초과 500 이하	3	
500 초과 1 000 이하		15

1 000 초과 10 000 이하	1.5	
10 000 초과 15 000 이하		150
15 000 초과 50 000 이하	1.0	
2. 길이 상품의 표시량	허용부족량	
표시량 ≤ 5 m	허용하지 않음	
표시량 > 5 m	표시량의 2 %	
3. 면적 상품의 표시량	허용부족량	
모든 표시량	표시량의 3 %	
4. 개수 상품의 표시량	허용부족량	
표시량 ≤ 50	허용하지 않음	
표시량 > 50	표시량의 1 %를 반올림한 정수값	

**정량표시상품 정량의 표시방법**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1. 양의 표시
- 가. 양의 표시는 전면 또는 그 외의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나. 양의 표시는 상품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 한다.
- 1) 액체 또는 점성을 가진 액상제품에 대해서는 부피단위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질량단위를 병기할 수 있다.
  - 2) 반고체, 고체, 가스, 액화가스 제품은 질량단위로 표시한다.
  - 3) 에어로졸 형태의 제품은 질량 또는 부피 단위로 표시한다.
  - 4) 개수 제품은 정수로 표시하되, 부피 또는 질량 단위를 병기할 수 있다.
  - 5) 액체매질 내에 존재하는 고체상품은 고품량을 질량으로 추가 표시한다.
- 다. 양이 개별판매를 목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두 개 또는 이상의 개별 포장들로 구성된 상품의 경우 그 양은 겉포장에 전체 개별포장의 총량을 나타내도록 하여야 한다.
- 라. 양을 표시할 때 숫자와 문자의 높이는 최소 2 mm 이상이어야 한다.

2. 단위 표시

가. 단위와 숫자는 직립체를 사용하고 단위와 숫자를 구별하기 위해 띄워야 한다.

나. 단위는 측정형태와 내용량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측정형태별 내용량의 크기에 따른 표시단위는 다음 표와 같다.

측정형태	내용량	표시단위
부피	내용량 < 1 000 mL	mL (ml) 또는 cL (cl)
	1 000 mL ≤ 내용량	L (l)
질량	내용량 < 1 g	mg
	1 g ≤ 내용량 < 1 000 g	g
	1 000 g ≤ 내용량	kg
길이	내용량 < 1 mm	µm 또는 mm
	1 mm ≤ 내용량 < 100 cm	mm 또는 cm
	100 cm ≤ 내용량	m
면적	내용량 < 100 cm <sup>2</sup>	mm <sup>2</sup> 또는 cm <sup>2</sup>
	100 cm <sup>2</sup> ≤ 내용량 < 1 m <sup>2</sup>	cm <sup>2</sup>
	1 m <sup>2</sup> ≤ 내용량	m <sup>2</sup>

구 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4. 환경	<input type="checkbox"/> 분리배출의 표시 가. 표시의무자 - 표시대상 제품·포장재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자 나. 표시대상 제품·포장재 1) 다음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첩합·도포된 종이팩에 한함)·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트레이를 포함) 가) 식료품류(식품위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공전상의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품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7호 내지	- 자원의 절약 및 재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8조 - 관련 고시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044-201-7383)

구 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먹는 샘물을 말함)</p> <p>나) 농·수·축산물(위의 음식료품류를 제외한 1차 생산물에 한함)</p> <p>다) 세제류(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치약, 비누 및 기타세제 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함)</p> <p>라)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p> <p>마)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바이알 앰플·PTP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병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체외진단용의약품 및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을 제외)</p> <p>바) 부탄가스제품</p> <p>사) 살충·살균제(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살충제·살균제로서 농약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을 제외)</p> <p>아) 의복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봉제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및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말한다)</p> <p>자) 종이제품(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종이제품을 말한다)</p> <p>차) 고무장갑(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고무장갑 중 가정용 고무장갑을 말한다)</p> <p>카) 부동액·브레이크액 및 제6호에 따른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p>		

구 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한다)</p> <p>타) 가목부터 카목까지 외의 제품(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하되,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플라스틱용기는 제외한다)</p> <p>2)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제외)</p> <p>3)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류,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사무 기기와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 포함)의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p> <p>4) 기타 종이·금속·유리·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하는 제품·포장재로서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제품·포장재</p> <p>다. 적용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포장재 및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포장재의 견본품 및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포장재</li> </ul>		
	<p>□ 환경표지 등의 사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표지(마크) 또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얻은 자는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환경표지 등을 표시하거나 환경표지 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음.</li> </ul> <p>* 환경표지 등의 표시방법(동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2조</li> <li>- 동법 시행규칙 제43조</li> <li>- 관련 고시</li> <li>- 환경표지 대상 제품 및 인증기준</li> <li>- 환경성적표지 대상 제품과 작성지침</li> </ul>	<p>-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044-201-6669)</p>
	<p>□ 제품의 환경성 표시</p> <p>가. 표시</p> <p>(1) 표시의 주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li> </ul>	<p>-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044-201-6669)</p>

구 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2) 표시내용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사항</p> <p>(3) 표시대상 - 제품의 용기·포장(첨부물 및 내용물 포함)</p> <p>(4) 표시방법 - 문자·숫자 또는 도형</p> <p>나. 광고</p> <p>(1) 광고주체 -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p> <p>(2) 광고내용 - 표시내용과 동일</p> <p>(3) 광고매체 -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 - 음성·음향·영상·인터넷 - 인쇄물·간판 -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제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p> <p>다. 표시·광고시 금지사항 :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표시·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실증할 수 있어야 함 (동법 제16조의10, 제16조의11)</p> <p>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p> <p>2. 기만적인 표시·광고</p> <p>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p> <p>4. 비방적인 표시·광고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p> <p>※ 제품의 환경성 :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5호)</p>		
	<p><input type="checkbox"/> 탄소성적표지 등의 사용</p> <p>-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얻은 자는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탄소성적표지 등을</p>	<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p>	<p>-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044-201-6888)</p>

구 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표시하거나 탄소성적표지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음</p> <p>- 탄소성적표지 등의 표시방법(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p>	<p>- 관련고시</p> <p>·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p>	

<첨부>

### 탄소성적표지 및 표시의 방법(제7조 관련)

1. 환경성 정보 중 지구온난화 정보인 탄소배출량 인증을 위한 탄소성적표지의 도안모형은 제1형으로 표시하고, 제품 설명서·인터넷 등에 제2형으로 게재합니다.

1) 제1형(제품 또는 포장·용기에 부착)

가) 도안모형(탄소배출량 인증)



나) 도안요령



비고 1. 탄소성적표지 탄소배출량 도안의 별색컬러는 'C', '나뭇잎', '탄소배출량'과 '환경부' 바탕 및 테두리 컬러는 PANTONE 368C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색으로 표현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PANTONE 368C, PANTONE 3005C, 그리고 검은색입니다.

2. 프로세스 칼라(4도 인쇄방식)의 경우에 'C', '나뭇잎', '탄소배출량'과 '환경부' 바탕 및

테두리컬러는 C65+Y100으로 하고, 'O2'는 C100+M15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색으로 표현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C65+Y100, C100+M15, K100입니다.

3. 검은색(Black)과 흰색(White) 반전형식의 경우, 배경색이 검은색 50% 이하인 경우에는 검은색 100% 1도로 사용하고, 검은색 50% 이상인 경우에는 흰색을 사용합니다.
4. '나뭇잎'의 '000g'은 'HY 헤드라인 M'으로 표기합니다.
5. 도안 크기는 가로 세로 같은 비율로 확대·축소하여 사용합니다.
6. 도안의 하단 중앙에 적용기준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예: OO제품 1개 기준). 다만, 제품크기 제한, 금형 사용 등으로 도안에 적용기준 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증기관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습니다.

## 2) 제2형(제품설명서 · 인터넷 등에 게재)

1. 제품개요
2. 회사개요
3. 지구온난화 정보
  - ※ 전 과정 단계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표시
4. 인증정보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기간	

본 환경성 정보는 타 제도의 환경성 정보와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2. 저탄소제품 인증을 위한 탄소성적표지의 도안모형은 제1형으로 표시하고, 제품 설명서 · 인터넷 등에 제2형으로 게재합니다.

### 1) 제1형(제품 또는 포장 · 용기에 부착)

가) 도안모형(저탄소제품 인증)

(A형)



(B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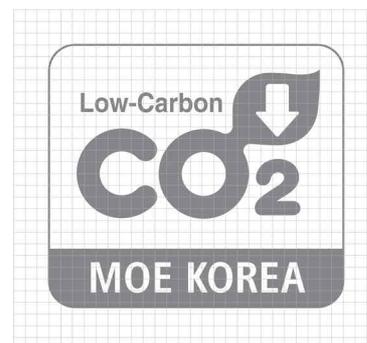


나) 도안요령

(A형)



(B형)



- 비고 1. 저탄소제품 도안의 별색 컬러는 PANTONE 348C로 하고, '환경부' 바탕 및 테두리 컬러는 PANTONE 368C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색으로 표현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PANTONE 368C, PANTONE 368C, 그리고 검은색입니다.
2. 프로세스 칼라(4도 인쇄방식)는 C85+Y100로 하고, '환경부' 바탕 및 테두리 컬러

는 C65+Y100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색으로 표현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C85+Y100, C65+Y100, 그리고 검은색입니다.

3. 검은색(Black)과 흰색(White) 반전형식의 경우, 배경색이 검은색 50% 이하인 경우에는 검은색 100% 1도로 사용하고, 검은색 50% 이상인 경우에는 흰색을 사용합니다.
4. '나뭇잎'의 '000g'은 'HY 헤드라인 M'으로 표기합니다.
5. 도안 크기는 가로 세로 같은 비율로 확대·축소하여 사용합니다.
6. 도안의 하단 중앙에 적용기준(A형) 또는 제품명(B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예: OO제품 1개 기준)
7. 저탄소제품인증 도안 1형은 A형의 사용을 기본으로 하며, B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저탄소제품인증 표지사용계획서"에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2) 제2형(제품설명서·인터넷 등에 게재)

1. 제품개요	
2. 회사개요	
3. 지구온난화 정보	
※ 전과정 단계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표시	
4. 인증정보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기간	

본 환경성 정보는 타 제도의 환경성 정보와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3. 탄소중립제품 인증을 위한 탄소성적표지의 도안모형은 제1형으로 표시하고, 제품 설명서·인터넷 등에 제2형으로 게재합니다.

1) 제1형(제품 또는 포장·용기에 부착)

가) 도안모형(탄소중립제품 인증)



나) 도안요령



- 비고 1. 탄소중립제품 도안의 별색 컬러는 'CO2', '탄소중립제품'과 '환경부' 바탕 및 테두리 컬러는 PANTONE 368C로 하고, '나뭇잎'은 PANTONE 3005C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색으로 표현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PANTONE 368C, PANTONE 3005C, 그리고 검은색입니다.
2. 프로세스 칼라(4도 인쇄방식)의 경우에 'CO2', '탄소중립제품'과 '환경부' 바탕 및 테두리 컬러는 C65+Y100으로 하고, '나뭇잎'은 C100+M15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색으로 표현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C65+Y100, C100+M15, K100입니다.
3. 검은색(Black)과 흰색(White) 반전형식의 경우, 배경색이 검은색 50% 이하인 경우에는 검은색 100% 1도로 사용하고, 검은색 50% 이상인 경우에는 흰색을 사용합니다.
4. 도안 크기는 가로 세로 같은 비율로 확대·축소하여 사용합니다.

2) 제2형(제품설명서 · 인터넷 등에 게재)

1. 제품개요	
2. 회사개요	
3. 탄소상쇄량	
4. 상쇄정보	
상쇄단위 비율	배출권구매( )%, 산림조성사업( )%
배출권 유형	
배출권 구매량	( )tCO <sub>2</sub>
5. 인증정보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기간	

본 환경성 정보는 타 제도의 환경성 정보와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구 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5. 원산지	<p>□ 원산지의 표시</p> <p>가. 표시의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li> </ul> <p>나. 원산지표시대상물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대외무역관리규정 참조)</li> </ul> <p>다.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글·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것</li> <li>2) 최종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li> <li>3)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li> <li>4)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li> <li>5)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li> <li>6)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 또는 변형한 자는 그 단순 가공한 물품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li> </ol> <p>라. 수출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와 같은 방법(1)~4)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되, 그 물품에 대한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규정이 이와 다르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li> <li>- 단,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단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외무역법 제33조</li> <li>- 동법 시행령 제56조</li> <li>- 관련 고시</li> <li>· 대외무역관리 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 044-203-4044)</li> </ul>

구 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가공활동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여서는 안됨		
6. 제품 등의 인증	<input type="checkbox"/> 제품·서비스의 인증 표시 가. 제품의 인증표시 1) 표시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로서 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 2) 표시장소 - 제품·포장·용기·납품서 또는 보증서 3) 표시방법 - 당해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음 나. 서비스의 인증표시 1) 표시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서비스의 인증을 받은 자 2) 표시장소 - 당해 서비스의 계약서·납품서 또는 보증서 3) 표시방법 - 그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음 다. 표시사항 -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다만, 영 별표3에 따른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음 1) 한국산업표준의 명칭 및 번호 2)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등급 또는 호칭(종류·등급 또는 호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3) 인증번호	- 산업표준화법 제15조, 제16조 -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 043-870-5387)

구 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4) 한국산업표준에 맞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제품의 제조일(제품인증표시에만 해당)</p> <p>5) 인증받은 자의 업체명, 사업자명 또는 그 약호(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제조자명 또는 실제의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p> <p>6) 인증기관명</p> <p>7) 한국산업표준을 표시하는 도표</p> <p>* 제품 :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3 서비스 :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5</p> <p>8) 한국산업표준에서 제품의 품목 또는 서비스의 분야별 특성에 따라 표시하도록 정한 사항</p>		
	<p><input type="checkbox"/> 제품의 단체표준인증 표시</p> <p>가. 표시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자</li> </ul> <p>나. 표시장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 등</li> </ul> <p>다. 표시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단체표준명 및 단체표준번호</li> <li>2) 단체표준 인증단체명</li> <li>3) 단체표준 인증번호</li> <li>4) 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단체표준인증표시를 한 제품의 제조일</li> <li>5) 단체표준 제품의 제조자명 또는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의하여 단체표준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제조자명 또는 실제의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li> <li>6)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3 참조)</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표준화법 제27조</li> <li>- 동법 시행규칙 제20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통상자원부</li> <li>- 국가기술표준원</li> <li>- 산업표준혁신과</li> <li>(☎ 043-870-5471)</li> </ul>

구 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input type="checkbox"/> 성능인증제품의 인증 표시 가. 표시자 - 제품의 성능 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심사,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나. 표시장소 - 성능인증제품이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다. 표시사항 - 성능인증 표지(EPC마크)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2 참조) 라. 표시기간 -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이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제품 상용화 등을 위하여 3년 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 그 기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 -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042-481-4569)
	<input type="checkbox"/> 제품 및 사업장의 인증 표시 가. 제품의 인증표시 1) 표시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의하여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받은 업력45년 이상의 경제·사회적 기여도가 큰 중소·중견기업 2) 표시장소 - 제품 또는 그 포장·용기 3) 표시방법 - 명문장수기업 마크 부착 등 나. 사업장의 인증표시 1) 표시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의하여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2) 표시장소 - 사업장 3) 표시방법 - 명문장수기업 마크 부착 등 다. 표시사항 1) 명문장수기업의 명칭 2) 명문장수기업마크(동법 시행규칙 제25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5제2항 -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 042-481-1664, 042-481-1662)

구 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조의5 별표 참조) - 마크의 크기는 표시하려는 제품, 포장용기의 크기·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음		
7. 상표·특허실용 신안·디자인	<input type="checkbox"/> 등록상표의 표시 가. 표시자 -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나. 표시방법 - 등록상표를 사용할 때에는 당해 상표가 등록상표임을 표시할 수 있음.	- 상표법 제90조	-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042-481-5377)
	<input type="checkbox"/> 특허 표시 가. 표시자 -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나. 표시방법 - 물건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물건에,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에 특허표시를 할 수 있으며, 물건에 특허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그 표시를 할 수 있음. - 특허표시는 물건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물건에 "특허"라는 문자와 그 특허번호를,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에 "방법특허"라는 문자와 그 특허번호를 표시함 - 특허출원표시는 물건의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그 물건에 "특허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와 그 출원번호를,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에 "방법특허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와 그 출원번호를 표시하며, 특허출원표시를 물건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용기 또는 포장에 할 수 있음 - 특허번호 또는 특허출원번호를 표시하는	- 특허법 제223조 - 동법 시행규칙 제121조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042-481-5397)

구 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것에 같음하여 특허번호 또는 특허출원 번호를 게재한 인터넷주소를 표시할 수 있음</p> <p><input type="checkbox"/> 실용신안등록 표시</p> <p>가. 표시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용신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 실시권자</li> </ul> <p>나.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의 등록실용신안에 있어서는 그 물품에 실용신안등록표시를 할 수 있으며, 그 물품에 실용신안등록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실용신안등록표시를 할 수 있음</li> <li>- 실용신안등록표시를 할 때에는 등록실용신안의 물품에 “실용신안등록”이라는 문자와 그 실용신안등록번호를 표시함</li> <li>- 실용신안등록출원표시를 할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물품에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번호를 표시하며, 실용신안등록출원표시를 물품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할 수 있음</li> <li>- 실용신안등록번호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번호를 표시하는 것에 같음하여 실용신안등록번호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번호를 게재한 인터넷주소를 표시할 수 있음</li> </ul> <p><input type="checkbox"/> 디자인 등록 표시</p> <p>가. 표시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 실시권자</li> </ul> <p>나.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디자인에 관한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디자인등록의 표시를 할 수 있음</li> </ul>	<p>- 실용신안법 제44조(특허법 제223조 준용)</p> <p>- 특허법 시행규칙 제121조</p> <p>- 지식재산권 표시 지침 제3조</p> <p>- 디자인보호법 제214조</p>	<p>-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042-481-5397)</p> <p>-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5766)</p>

## II. 분야별 통합정보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1. 농림수산업 (1) 농산물	<input type="checkbox"/>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 표시 가. 표시의 주체 - 친환경 인증을 받은 사업자(개인 포함) 나. 표시대상 - 인증을 받은 친환경 농·축산물 등 *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20.8.28.부터 제외),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20.8.28.부터 시행) 다. 표시방법 1) 유기표시를 하려는 인증사업자는 유기표시와 함께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전화번호, 포장작업장 주소, 인증번호, 인증기관명 및 생산지를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에 표시하여야 함. 단, 포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표시판 또는 푯말에 표시할 수 있음 2) 인증품의 포장을 뜯어 내용물이나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단순 처리한 후 다시 포장하여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려는 자는 다. 1)에 따른 표시와 함께 취급자의 업체명, 전화번호, 작업장 주소와 롯데번호 또는 바코드 등의 식별체계를 표시하여야 함 3)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표시는 다1)과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표시”는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표시”로 본다. 4) “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표시 등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사항 -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0조제36조 -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45조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7)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표시·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표시·광고를 포함)하는 행위 또는 인증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p> <p>*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표시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제45조제1항, 별표5, 별표6, 별표12</p> <p><input type="checkbox"/>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 표시</p> <p>가. 표시의 주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개인 포함)</li> </ul> <p>나. 표시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농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면서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li> </ul> <p>다. 표시방법</p> <p>1) 유기농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면서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에 대해서는 사용한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함</p> <p>*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별표7</p> <p><input type="checkbox"/> 무농약농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무농약 표시 (‘20.8.28.부터 시행)</p> <p>가. 표시의 주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개인 포함)</li> </ul> <p>나. 표시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면서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li> </ul> <p>다. 표시방법</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1)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면서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에 대해서는 사용한 무농약농산물의 함량에 따라 제한적으로 무농약 표시를 허용함		
	<p>□ 지리적 표시</p> <p>가. 지리적 표시의 의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한 가공품을 제외)의 명칭·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li> </ul> <p>나. 표시할 수 있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리적표시 등록자</li> </ul> <p>다. 표시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이하 "지리적표시품")품목</li> </ul> <p>라.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리적표시권자가 그 표시를 하려면 지리적표시품의 포장·용기의 겉면 등에 등록 명칭을 표시하여야 하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별표 15)에 따른 지리적표시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등록 명칭, 지리적표시관리기관 명칭, 지리적표시 등록번호, 생산자, 주소)을 같이 표시할 수 있음</li> <li>-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상품목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지판 또는 풋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음</li> <li>- 지리적표시품 중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의 경우에는 인삼류와 그 용기·포장 등에 "고려인삼"·"고려수삼"·"고려홍삼"·"고려태극삼" 또는 "고려백삼" 등 "고려"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32조, 제34조</li> <li>-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별표 1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044-201-2277)</li> </ul>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input type="checkbox"/> 표준규격품의 표시 가. 표시할 수 있는 자 - 표준규격에 맞는 농산물을 출하하는 자 나. 표시대상 - 표준규격에 맞는 농산물 다. 표시사항 1) 품목 2) 산지 3) 품종(품종 표시하기 어려운 품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품종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4) 생산년도(곡류에 한함) 5) 등급 6) 무게(실중량) 또는 갯수 7)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다. 표시방법 - 당해 물품의 포장표면에 "표준규격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위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 급식진흥과 (☎ 044-201-2279)
	<input type="checkbox"/> 원산지의 표시 가. 원산지의 의미 - 농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 나. 표시 의무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 포함)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 다. 표시대상 1)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산물 2) 표시대상이 아닌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라. 표시 기준 1) 국산 농산물(임산물·축산물 포함)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 동법 시행령 제3조(별표1), 제4조 - 동법 시행규칙 제3조(별표 1부터 별표4까지), 제4조(별표 5) - 관련고시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044-201-2277)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가) 국산농산물 등의 경우에는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그 농산물 등을 생산한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함</p> <p>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 제34조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봄</p> <p>다) 국산 농수산물로서 지역이 각각 다른 동일 품목의 농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지역까지의 시·도명 또는 시·군·구명과 그 혼합 비율을 표시하거나 "국산", "국내산"으로 표시</p> <p>라) 동일 품목의 국산 농산물과 국산 외의 농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국가까지의 원산지과 그 혼합비율을 표시</p> <p>2) 수입농산물 또는 반입농산물</p> <p>가) 수입: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지를 표시</p> <p>나) 반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입 시의 원산지를 표시</p> <p>마. 표시 방법</p> <p>1)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p> <p>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음</p> <p>나) 글자크기</p> <p>(1) 포장 표면적이 3,000cm<sup>2</sup> 이상인 경우: 20포인트 이상</p> <p>(2) 포장 표면적이 50cm<sup>2</sup> 이상 3,000cm<sup>2</sup> 미만인 경우: 12포인트 이상</p> <p>(3) 포장 표면적이 50cm<sup>2</sup> 미만인 경우: 8포인트 이상. 다만, 곤란한 경우에는</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다른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p> <p>다) 글자색: 포장재의 바탕색 또는 내용물의 색깔과 다른 색깔로 선명하게 표시</p> <p>라)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으며, 그물망 포장인 경우나 포장하지 않고 엮거나 묶는 상태인 경우에는 꼬리표, 내찰 등으로도 표시 가능</p> <p>2)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풋말, 안내표시판, 일괄 안내표시판, 상품에 붙이는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p> <p>가) 풋말: 가로 8cm × 세로 5cm × 높이 5cm 이상</p> <p>나) 안내표시판</p> <p>(1) 진열대: 가로 7cm × 세로 5cm 이상</p> <p>(2) 판매장소: 가로 14cm × 세로 10cm 이상</p> <p>(3) 일괄 안내표시판: 글자 크기는 20포인트 이상</p> <p>(4) 상품에 붙이는 스티커: 가로 3cm × 세로 2cm 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p>		
	<p>□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p> <p>가. 표시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전자변형농산물 :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li> <li>-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해당 품목을 싹틔워 기른 농산물 포함)</li> </ul> <p>나. 표시의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li> </ul> <p>다.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시는 한글로 표시,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거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6조</li> <li>-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li> <li>- 관련고시</li> <li>·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의약품안전처</li> <li>- 식품안전표시인증과 (☎ 043-719-2194)</li> </ul>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떨어지지 아니하는 스티커 또는 라벨지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용기·포장 등의 바탕색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색상으로 12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선명하게 표시		
	<input type="checkbox"/>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표시 가. 표시대상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나. 표시사항 - 표지 - 산지(시·도, 시·군·구) - 품목(품종) - 중량·개수 - 생산연도 - 생산자(생산자집단명) 또는 우수관리시설명 다. 표시방법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품의 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농산물우수관리 인증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함 - 포장하지 않고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나 소포장 등으로 농산물우수관리의 표지와 표시사항을 인쇄하거나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농산물우수관리의 표지만 표시할 수 있음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별표1 참조	- 농수산물품질 관리법 제6조 -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 식진흥과 (☎ 044-201-2279)
	<input type="checkbox"/> 이력추적관리 표시 가. 농산물 1) 표시대상 - 이력추적등록을 받은 농산물(권고사항,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산물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표시) 2) 표시사항 - 표지 - 산지(시·도, 시·군·구) - 품목(품종) - 중량·개수 - 생산 연도	- 농수산물품질 관리법 제24조 -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 관련 고시 · 농산물이력추적 관리기준 및 그 밖에 농산 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는 시설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044-201-2277)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자(생산자 성명이나 생산자단체·조직명 등)</li> <li>- 이력추적관리번호</li> </ul> <p>3)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포장·용기의 겉면 등에 이력추적관리품의 표시사항을 인쇄하거나 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함</li> <li>-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나 소포장인 경우는 표지만 표시할 수 있음</li> </ul> <p>* 이력추적관리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 별표12 참조</p>		
(2) 축산물	<p><input type="checkbox"/>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p> <p>가. 표시의 주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은 사업자(개인 포함)</li> </ul> <p>나. 표시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축산물('20.8.28.부터 시행)</li> </ul> <p>다. 표시방법</p> <p>1) 무항생제표시를 하려는 인증사업자는 무항생제표시와 함께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전화번호, 포장작업장 주소, 인증번호 및 생산지를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에 표시하여야 함. 단, 포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진열·판매하는 경우에는 표시판 또는 푯말에 표시할 수 있음</p> <p>2) 인증품의 포장을 뜯어 내용물이나 포장 단위를 변경하거나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단순 처리한 후 다시 포장하여 무항생제표시를 하려는 자는 다. 1)에 따른 표시와 함께 취급자의 업체명, 전화번호, 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법 제42조의6</li> <li>-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1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축산식품부</li> <li>-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2)</li> </ul>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업장 주소와 롯데번호 또는 바코드 등의 식별체계를 표시하여야 함</p> <p>* 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13 제1항, 별표 9, 별표10</p>		
	<p><input type="checkbox"/> 축산물의 표시</p> <p>가. 표시대상 : 식육·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p> <p>나. 표시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명, 식품유형,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영양성분 등</li> </ul> <p>다.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한글로 표시</li> </ul> <p>라. 세부사항은 고시(식품등의 표시기준)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li> <li>-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 조 제 3 항, 제6조제4항</li> <li>- 관련고시</li> <li>·식품등의 표시기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 043-719-2188)</li> </ul>
	<p><input type="checkbox"/> 축산물의 검사 합격 표시</p> <p>가. 표시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축장에서 처리하는 식육 중 검사에 합격한 축산물(닭·오리의 식육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li> </ul> <p>나. 표시의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임명한 검사관·책임수의사 또는 영업자</li> </ul> <p>* 합격표시 :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6조</li> <li>- 동법 시행규칙 제23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 043-719-3217)</li> </ul>
	<p><input type="checkbox"/> 식육의 표시</p> <p>가. 표시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li> </ul> <p>나. 표시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식육의 종류, 부위명칭, 등급, 도축장명, 이력번호, 판매가격</li> </ul> <p>다.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스티커 등에 인쇄하여 부착하거나 비닐에 그대로 인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li> <li>-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진열상자에 놓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li> <li>-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1호</li> <li>- 관련고시</li> <li>·소 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 043-719-2181)</li> </ul>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판매표지판을 식육의 전면에 설치하여 표시라. 세부사항은 고시(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참조</p>		
	<p><input type="checkbox"/> 축산물 이력관리 표시</p> <p>1. 표시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산이력축산물 :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지육, 정육, 포장육)와 가정용으로 유통·판매되는 계란이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li> <li>- 수입산이력축산물 : 수입 쇠고기나 수입 돼지고기(지육, 정육, 포장육,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li> </ul> <p>2. 표시사항 : 축산물이력번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산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계란과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농식품부장관이 부여하는 번호</li> </ul> <p>3. 표시방법</p> <p>&lt;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산은 도축업자가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li> <li>* 수입산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식육포장처리업자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가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표시</li> <li>-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이력번호를 표시</li> <li>-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통신판매업자 등은 표시대상의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를 조리하거나 판매한 경우 영업장이나 제품, 인터넷 등에 이력번호를 게시 또는 표시</li> </ul> <p>&lt; 계란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처리업자가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li> <li>-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계란을 재포장하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및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8조</li> <li>-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1조</li> </ul>	<p>-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044-201-2346)</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경우는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재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용 계란을 통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경우는 인터넷 등에 이력번호를 게시 또는 표시</li> </ul> <p>※ 이력번호 발급, 표시 및 관리 : 시행규칙 별표 8, 9, 9의3, 9의4, 10, 11, 13, 14, 15 참조</p>		
(3) 수산물	<p><input type="checkbox"/> 표준규격품의 표시</p> <p>가. 표시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규격에 맞는 수산물(표준규격품)</li> <li>* 표준규격 : 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 규격을 말함</li> </ul> <p>나. 표시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규격품에 맞는 수산물을 출하하는 자</li> </ul> <p>다.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물품의 포장표면에 "표준규격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다음의 사항을 표시 1) 품목, 2) 산지, 3) 등급, 4) 무게 또는 개수(마리수), 5) 생산자의 성명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li> <li>- 생산자단체는 공동 출하하는 표준규격품에 대하여 표시사항·품질·등급 등에 관한 표준규격의 준수여부를 자체 점검한 후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li> <li>- 동법 시행규칙 제5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044-200-5632)</li> </ul>
	<p><input type="checkbox"/> 품질인증품의 표시</p> <p>가. 표시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권고사항)</li> </ul> <p>나. 표시내용</p> <p>1) 품질인증표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물·수산특산물 품질인증 표지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별표7 참조</li> <li>-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지 : 식품산업진흥법 제10조 참조</li> </ul> <p>2) 품질인증의 표시항목</p> <p>가) 산지</p> <p>나) 품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4조</li> <li>-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1항</li> <li>- 식품산업진흥법제14조</li> <li>- 동법시행규칙 제10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044-200-5632)</li> </ul>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다)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주소 및 전화번호</p> <p>라) 생산조건</p> <p>다.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의 포장·용기의 표면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함.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꼬리표를 부착하여 이를 표시할 수 있음</li> </ul>		
	<p>□ 친환경수산물의 표시</p> <p>가. 표시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수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인증품</li> <li>- 무항생제 또는 활성처리제비사용 인증품</li> </ul> <p>나. 표시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의 표시 : 해양수산부소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5 참조</li> <li>- 무항생제, 활성처리제비사용의 표시 : 해양수산부소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12 참조</li> </ul> <p>다.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식품등의 표시 : 인증사업자는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이하 "포장등"이라 한다)에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이하 "유기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때에는 표시판 또는 풋말에 유기표시를 할 수 있다.</li> <li>- 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 : 인증사업자는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무항생제 수산물등에 직접 또는 그 포장등에 무항생제, 활성처리제 비사용(해조류만 해당한다)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때에는 표시판 또는 풋말에 표시할 수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36조</li> <li>- 해양수산부소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44조</li> </ul>	<p>-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044-200-5632)</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input type="checkbox"/> 지리적 표시 가. 지리적 표시의 의미 -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명칭·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경우 그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것임을 표시하는 것 나. 표시자 -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한 자 다. 표시대상 - 지리적 표시품(수산물·수산가공물) 라. 표시방법 - 지리적 표시품의 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지리적 표시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함. * 지리적 표시품의 표지 :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별표15 참조 -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직접 표지를 부착하거나 다른 물품과 구분하여 진열한 후 구분·진열된 부분을 표시판 또는 풋말로써 표시할 수 있음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2조 - 동법 시행령 제13조 -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044-200-5632)
	<input type="checkbox"/> 원산지의 표시 가. 원산지의 의미 - 농수산물이 생산·채취 또는 포획된 국가나 지역 또는 해역 나. 표시의무자 -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 다. 표시대상 1)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의 원료 - 해양수산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료 및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 제2조에 따른 별표1, 별표2 2)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 15품목(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3조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044-200-5449)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해당 수산물가공품을 포함) 및 살아있는 수산물</p> <p>라. 원산지표시의 예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규격품표시, 품질인증표시, 수산물 이력추적관리표시, 친환경수산물인증표시, 지리적표시, 원산지인증표시,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수출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를 한 경우와 다른 법률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나 그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봄</li> </ul> <p>마. 원산지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표1~4 참조</li> </ul> <p>1)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표시</p> <p>가) 포장하여 판매하는 수산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장에 직접 인쇄하거나 스티커(붙임딱지),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 부착할 수 있으며, 그물망 포장 또는 무포장으로 엮거나 묶은 상태의 경우에는 꼬리표, 안쪽 표지 등으로 표시</li> </ul> <p>나)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기에 표시하거나 스티커, 풋말, 안내표시판, 일괄 안내표시판 등으로 표시</li> </ul> <p>다) 살아있는 수산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관시설(수족관, 활어차량 등)에 원산지 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획(동일 어종의 경우만 해당)하고 풋말 또는 안내표시판 등으로 표시(일괄표시 가능)</li> </ul>		
	<p><input type="checkbox"/>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표시</p> <p>가.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의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수입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수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수산물</li> </ul> <p>나. 표시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물이력추적관리에 등록한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물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li> <li>- 동법 시행규칙 제28조</li> </ul>	<p>-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044-200-5450)</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다. 표시대상 - 이력추적관리에 등록된 수산물</p> <p>라. 표시기준 - 이력추적관리수산물 : 표지 및 이력추적관리번호</p> <p>마. 표시방법 - 포장재 주 표시면의 옆면에 표시하되, 포장재의 구조상 옆면에 표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 가능 - 표시내용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인쇄하거나, 스티커, 표찰 등으로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 - 인쇄와 부착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띠 모양의 표지로 표시 가능</p> <p>* 수산물유통이력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2참조</p>		
(4) 임산물	<p><input type="checkbox"/> 품질인증품의 표시</p> <p>가. 표시대상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 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중 품질인증을 받은 임산물</p> <p>나. 표시사항</p> <p>1) 품질인증표시 - 임산물 품질인증 표시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 참조</p> <p>2) 품질인증의 표시항목</p> <p>가) 건조제재목 : 품명, 등급, 수종, 원산지, 치수, 함수율, 생산 또는 수입자, 생산일자</p> <p>나) 방부목재 : 사용환경범주, 사용방부제, 수종, 건조구분, 생산(수입)자, 생산일자</p> <p>다) 합판 : 합판종류, 접착성,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수종, 치수, 휨성능, 생산(수입)자, 생산일자</p> <p>라) 파티클보드 : 파티클보드종류, 표면상태, 접착성, 휨강도, 폼알데하이드방출량,</p>	<p>-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p> <p>- 동법시행령 제23조</p> <p>-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19조</p>	<p>- 산림청 목재 산업과 (☎042-481-4205)</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난연성), 치수, 생산(수입)자, 생산일자</p> <p>마) 섬유관 : 섬유관종류, 표면상태, 접착성, 휘강도, 폼알데하이드방출량, (난연성), 치수, 생산(수입)자, 생산일자</p> <p>바) 목재펠릿 : 상품명, 등급, 종류, 원산지, 품질, 무게, 생산(수입)자, 제조일자</p> <p>사) 목탄(숯) : 종류, 원료, 원산지, 품질, 생산(수입)자, 제조일자, 포장</p> <p>아) 목초액 : 종류, 가마종류, 원료, 원산지, 품질, 생산(수입)자, 제조일자</p> <p>다.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인증의 표시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개별단위로 표시하여야 하며, 품목번호, 품목별 인증등록번호인증년도를 마크 아래에 별도로 표시한다</li> </ul> <p>* 품질인증표지 : 산림청 고시 제2014-22호 참조</p>		
	<p><input type="checkbox"/> 규격 및 품질의 표시</p> <p>가. 표시대상(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관,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 중 어느 하나의 목재제품을 판매·보관 또는 통관하려는 경우</li> </ul> <p>나. 표시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장용, 구조용 제재목 : 품명, 등급, 수종, 원산지, 치수, 함수율, 생산(수입)자</li> <li>2) 방부목재 : 목재보존제, 방부처리등급, 함수율, 수종, 생산(수입)자, 생산연월</li> <li>3) 난연목재 : 수종, 옥내용(옥외용), 제조(수입)자명, 원산지, 치수</li> <li>4) 목재플라스틱 복합재: 열가소성 수지 종류, 최대 굴곡하중/시험시 지지대 간격, 생산(수입)자명, (산지), 생산연월</li> <li>5) 집성재 : 품명, 길이방향 접합, 등급, 사용환경,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급, 수종, 원산지, 치수, 제조국</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li> <li>- 동법 시행령 제14조</li> <li>-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 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청 목재산업과 (☎ 042-481-4205)</li> </ul>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6) 합판 : 종류, 접착성,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휨강성변형량, 휨성능, 수종, 시추, 제조회사, 생산연월</p> <p>7) 파티클보드 : 종류, 표면상태, 접착제, 휨강도, 폼알데하이드방출량, 난연성, 치수, 생산(수입)자명, (산지), 생산연월</p> <p>8) 섬유판 : 종류, 표면상태, 접착제, 휨강도, 폼알데하이드방출등급, 난연성, 치수, 생산(수입)자명, (산지), 생산연월</p> <p>9) 배향성스트랜드보드 : 품명, 종류, 폼알데하이드방출량 등급, 치수, 원산지, 생산연월</p> <p>10) 목질바닥재 : 품명, 치장재료, 난방, 폼알데하이드 방출등급, 치수, 생산(수입)자, 생산연월</p> <p>11) 목재펠릿 : 상품명, 용도, 등급, 크기, 품질, 무게, 생산(수입)자, 제조일자</p> <p>12) 목재칩 : 제품명, 종류, 등급, 제조원료, 제조국, 품질</p> <p>13) 목재브리켓 : 상품명, 등급, 원산지, 품질, 무게, 생산(수입)자, 제조일자</p> <p>14) 성형숯 : 상품명, 제조국, 용도, 등급, 착화제, 품질, 생산(수입)자, 제조년월, 무게</p> <p>15) 숯 : 종류, 원료, 원산지, 품질, 생산자, 제조일자, 중량</p> <p>다.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함.</li> </ul> <p>* 국립산림과학원 품목별 고시 참조</p>		
	<p><input type="checkbox"/> 품질검사 결과표시</p> <p>가. 표시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자·수입자 또는 판매자가 품질검사의 기준에 적합한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통관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의무사항)</li> </ul> <p>나. 표시내용</p> <p>1) 품질검사 결과의 표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 :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9 별지 제12호의1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li> <li>- 같은법 시행령 제17조8</li> <li>-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독과 (☎ 042-481-1206)</li> </ul>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서식 참조 2) 품질검사 결과의 표시항목 가)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법인명 포함) 나) 생산지 또는 수입국 다) 품질검사기관·단체, 품질검사번호 및 품질검사일자 라) 품질검사의 유효기간 다. 표시방법 -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통관 또는 판매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검사 합격증을 붙일 수 있는 크기의 상자 또는 용기에 포장하고, 합격증을 붙여야 함		
2. 제조업 (1) 식품	<input type="checkbox"/> 식품 등의 표시 가. 표시대상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나. 표시사항 - 제품명, 식품유형,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영양성분 등 다. 표시방법 -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한글로 표시 라. 세부사항은 고시(식품등의 표시기준) 참조 <input type="checkbox"/>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가. 표시대상 - 건강기능식품 나. 표시사항 - 건강기능식품 표시(건강기능식품 도안), 제품명,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내용량, 영양정보, 기능정보, 섭취량 및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원료명 및 함량,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다. 표시방법 -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잉크·각인 또는 소인을 사용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 관련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 관련고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 043-719-2188, 218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 043-719-2188, 2181)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하여 한글로 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 색의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을 사용하여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을 구분해서 표시</li> <li>- 글씨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하고, 정보 표시면에 글자 비율(장평) 90퍼센트 이상, 글자 간격(자간) 5퍼센트 이상으로 표시</li> </ul> <p>라. 세부사항은 고시(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참조</p>		
	<p><input type="checkbox"/>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p> <p>가. 표시대상 식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레토르트식품(축산물은 제외),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중 빙과·아이스 크림류, 빵류 및 만두류, 코코아 가공품류 및 초콜릿류, 잼류, 식용 유지류(동물성 유지류, 식용유지가공품 중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식용유지가공품은 제외), 면류, 음료류(다류와 커피 중 볶은 커피 및 인스턴트 커피는 제외), 특수용도식품, 어육가공품류 중 어육소시지,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및 즉석조리식품, 장류(한식메주, 한식된장, 청국장 및 한식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 제외), 시리얼류, 유가공품 중 우유류·가공유류·발효유류·분유류·치즈류, 식육가공품 중 햄류, 소시지류,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를 하는 식품</li> </ul> <p>나. 표시대상 영양성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영양 표시나 영양강조표시를 하려는 경우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명시된 영양성분</li> </ul> <p>다. 표시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양성분의 명칭, 함량 및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li> </ul> <p>라. 세부사항은 고시(식품등의 표시기준)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li> <li>-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li> <li>- 관련고시</li> <li>- 식품등의 표시기준</li> </ul>	<p>-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 043-719-2188, 2181)</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p> <p>가. 표시대상 식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미식품이 포함되어 있는 면류 중 유당면 (기름에 튀긴 면), 국수 또는 냉면</li> <li>- 즉석섭취식품(동·식물성 원료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서 더 이상의 가열 또는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 중 햄버거 및 샌드위치</li> </ul> <p>나. 표시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교 단위의 나트륨 함량,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기준으로 한 세부구간과 유사 식품의 비교표준값</li> </ul> <p>다.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거나 QR코드 등과 연계하여 전자적으로 표시</li> </ul> <p>라. 세부사항은 고시(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6조</li> <li>-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li> <li>- 관련고시</li> <li>·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li> </ul>	<p>-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 043-719-2188, 2181)</p>
	<p>□ 해외 유기식품 등의 광고의 금지</p> <p>가. 대상자 : 인증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해외 유기식품 등을 광고하려는 자</p> <p>* 유기식품 등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농축산물·무농약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 동등성을 인정받은 유기가공식품</p> <p>나. “유기”, “무농약”, “친환경” 표시 등 광고 행위의 금지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식으로 수입통관 되지 않은 해외제품을 직구대행 등을 통해 소비자 구매 유도를 목적으로 외국의 유기인증을 받았다는 내용의 “유기”, “유기농”, “친환경” 또는 “무농약” 이라는 표시 및 내용으로 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행위 금지</li> <li>- 일반 식품으로 수입·통관된 동등성 인정을 받지 않은 제품 등에 해외 유기인증의 표시·내용과 함께 “유기”, “유기농”, “친환경” 또는 “무농약” 이라는 표시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30조</li> </ul>	<p>-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044-201-2437)</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내용으로 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행위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가공식품 제조에 사용한 원료가 해외 유기식품 등의 원료인 경우라도 그 원료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과 동등성인정을 받은 유기식품 등이 아니라면 “유기”, “유기농”, “친환경” 또는 “무농약” 이라는 표시 및 내용으로 제품·인터넷 등에 표시·광고하는 행위 금지</li> </ul>		
	<p>□ 식품(농수산물가공품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을 포함) 원료의 원산지의 표시(식품접객업 등 음식점 포함)</p> <p>가. 원산지의 의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li> </ul> <p>나. 표시의무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농수산물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 포함)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li> <li>2)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li> </ol> <p>*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영업소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집단급식소</p> <p>다. 표시대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농수산물에 대하여 표시(물·식품첨가물·주정 및 당류는 배합비율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li> </ol> <p>*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 제2조에 따른 별표1, 별표2 참조</p> <p>가)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배합 비율에 따른 표시대상</p>	<p>- 농 수 산 물 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p> <p>- 동법 시행령 제3조(별표 1), 제4조</p> <p>- 동법 시행규칙 제3조(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제4조(별표 5)</p> <p>- 관련고시</p> <p>· 농 수 산 물 의 원산지 표시 요령</p>	<p>-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044-201-2277)</p> <p>-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044-200-5449)</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1)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p> <p>(2)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두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의 합이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p> <p>(3) 위의 (1),(2) 외의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3순위 까지의 원료</p> <p>(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치류 및 절임류(소금으로 절이는 절임류에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치류 중 고춧가루(고춧가루가 포함된 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고춧가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품목은 고춧가루 및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 및 소금</li> <li>-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품목은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li> <li>- 절임류는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 다만,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와 소금으로 함</li> </ul> <p>(5)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원료</p> <p>(6)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원료 농수산물이 배합비율에 따른 표시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원료 농수산물을 함께 표시대상으로 함.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 가능</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시에서 규정한 표시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li> <li>-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 포함)의 원료 사용된 경우</li> <li>-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표시기준에 따라 원재료명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li> </ul> <p>2)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의 표시대상</p> <p>가) 쇠고기[식육의 종류(한우, 젓소, 육우)를 함께 표시]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구이용, 탕용(湯用), 찜용, 튀김용, 육회용(肉膾用) 등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제공(육회용의 경우 조리과정 없이 날 것으로 판매·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p> <p>나) 돼지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과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등의 공전(公典)에 따른 식육가공품 중 보쌈·족발만 해당):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p> <p>다) 닭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 및 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p> <p>라) 오리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햄류·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 및 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또는 훈제용으로 조리하여</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판매·제공하는 것(햄류는 훈제용만 해당한다)</p> <p>마)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 및 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 구이용, 탕용, 찜용, 육회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p> <p>바) 쌀(찐쌀을 포함한다):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판매하는 경우로서 밥(죽, 식혜, 떡 및 면은 제외)으로 제공하는 것</p> <p>사) 배추김치(원료 중 고춧가루를 포함): 절임, 양념 혼합, 발효 또는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반찬, 찌개용 또는 탕용으로 제공하는 것</p> <p>아)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한다),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해당 수산물가공품을 포함)</p> <p>자)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p> <p>차) 원산지 표시대상 원료로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원료</p> <p>*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 제3조 참조</p> <p>3) 2) 각 호의 원산지 표시 대상 중 가공품에 대해서는 주원료를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p> <p>*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 제3조의2 참조</p> <p>4) 표시대상이 아닌 원료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도 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다만,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준수하여야 함.</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라. 표시기준</p> <p>*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1 참조</p> <p>1) 농수산물 가공품(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p> <p>가) 국산 농수산물 : “국산“,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하거나 그 원료가 생산된 시·도명이나, 시·군·구명 으로 표시(양식 수산물이나 연안정착성 또는 내수면 수산물인 경우)</p> <p>나) 원양산 수산물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해외수역에서 어획하여 국내에 반입한 수산물은 “원양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양산“ 표시와 함께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북빙양“의 해역명을 표시</p> <p>다)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한다.</li> <li>-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같은 법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li> </ul> <p>리)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개 국가까지의 원료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 다만, 국내가공품에 사용된 원료 농수산물의 원산지가 모두 국산일 경우에 원산지를 일괄하여 "국산" 또는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국산 수산물인 경우)으로 표시할 수 있음</p> <p>마)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의 원산지별 혼합 비율이 변경된 경우로서 그 어느 하나의 변경의 폭이 최대 15퍼센트 이하인 때에는 종전의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표시된 포장재를 혼합 비율의 변경이 있는 날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p> <p>바) 가공품원료의 수급사정으로 인하여 원료원산</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지의 잦은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p> <p>*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 제4조 참조</p> <p>(1) 특정원료의 원산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3회) 이상 변경되거나 최근 1년 동안에 3개국(3회) 이상 변경된 경우와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3개국 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p> <p>(2)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p> <p>(3) 정부가 가공품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p> <p>(4)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p> <p>마. 표시방법</p> <p>*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표1~4 참조</p> <p>1) 농수산물 가공품</p> <p>가)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p> <p>(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표시기준에 따른 원재료명 표시란에 추가하여 표시한다. 다만, 원재료명 표시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되, 구매시점에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함</p> <p>(2) 글자크기</p> <p>(가)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진하게(굵게)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할 수 있으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원재료명의 표시와 동일한 크기로 진하게(굵게) 표시</p> <p>(나) (가)에 따른 글씨는 각각 장평 9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장평 5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음</p> <p>(3) 글자색: 포장재의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p> <p>(4)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으며, 그물망 포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꼬리표, 안쪽 표지 등으로도 표시 가능</p> <p>(5)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는 가맹사업자의 직영점과 가맹점에 제조·가공·조리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사업자가 원산지 정보를 판매시점 정보관리(POS, Point of Sales) 시스템을 통해 이미 알고 있으면 포장재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p> <p>나)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풋말, 안내표시판, 일괄 안내표시판, 상품에 붙이는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p> <p>(1) 풋말, 안내표시판, 일괄 안내표시판, 상품에 붙이는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 다만,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원산지는 일괄 안내표시판에 표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p> <p>(가) 풋말: 가로 8cm × 세로 5cm × 높이 5cm 이상</p> <p>(나) 안내표시판</p> <p>① 진열대: 가로 7cm × 세로 5cm 이상</p> <p>② 판매장소: 가로 14cm × 세로 10cm 이상</p> <p>③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 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육축</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진열장에 진열하여 판매하는 식육에 대하여 식육판매표지판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의 세부 표시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름</p> <p>(다) 일괄 안내표시판</p> <p>① 위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크기: 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되, 글자 크기는 20포인트 이상으로 한다.</p> <p>(라) 상품에 붙이는 스티커: 가로 3cm × 세로 2cm 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이어야 한다.</p> <p>(2) 문자: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p> <p>(3) 원산지를 표시하는 글자(일괄 안내 표시판의 글자는 제외한다)의 크기는 제품의 명칭 또는 가격을 표시한 글자 크기의 1/2 이상으로 하되, 최소 12포인트 이상으로 한다.</p> <p>2) 통신판매의 경우</p> <p>가) 표시는 한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음. 다만, 매체 특성상 문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 말로 표시</p> <p>나) 원산지를 표시할 때에는 소비자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글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글자의 위치·크기 및 색깔은 쉽게 알아 볼 수 있어야 하고, 말로 표시할 경우에는 말의 속도 및 소리의 크기는 제품을 설명하는 것과 같아야 함</p> <p>다)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음</p> <p>라) 매체별 표시방법</p> <p>(1) 전자매체 이용</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가) 글자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시 위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거나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할 수 있음</li> <li>- 표시 시기: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할 제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li> <li>- 글자 크기: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그보다 커야 한다. 다만,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표시할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따름</li> <li>- 글자색: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li> </ul> <p>(나) 글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 1회당 원산지를 두 번 이상 말로 표시</p> <p>(2) 인쇄매체 이용</p> <p>(가) 표시 위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거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 표시 위치를 명시하고 그 장소에 표시할 수 있음</p> <p>(나) 글자 크기: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글자 크기의 1/2 이상으로 표시하거나, 광고 면적을 기준으로 농수산물 표시방법 중 글자크기 기준을 준용</p> <p>(다) 글자색: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p> <p>마) 판매 제공 시 표시방법 :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되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 할 수 있음</p> <p>(1) 농수산물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p> <p>(2) 농수산물 가공품 : 농수산물의 원산</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가목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p> <p>(3) 음식점 및 식품접객업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표시 대상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p> <p>3) 식품접객업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경우 (음식점)</p> <p>가) 공통적인 표시방법</p> <p>(1) 음식명 또는 원산지 표시대상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 다만, 원산지가 같은 경우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음</p> <p>(2) 글자 크기: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 보다 커야 함</p> <p>(3)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p> <p>(4) 원산지가 국내산인 경우에는 “국산”이나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해당 농수산물이 생산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명이나 시·군·자치구명으로 표시할 수 있음</p> <p>(5) 농수산물 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p> <p>(가) 외국에서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 완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그 포장재에 적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p> <p>(나) 국내에서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어 “외국산”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원료의 원산지를 “외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음</p> <p>(6)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진열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냉장고 등 보관장소 또는 보관용기별 앞면에 일괄하여 표시한다. 다만,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p> <p>(7) 표시대상 농수산물 가공품을 조리하여 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원료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음</p> <p>나) 영업형태별 표시방법</p> <p>(1)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p> <p>(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업소 내의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p> <p>(나) 다음과 같이 “원산지표시판”을 사용하는 경우, 메뉴판 및 게시판 원산지 표시 생략 가능</p> <p>① 표제로 “원산지 표시판” 사용</p> <p>② 표시판 크기 : 42cm × 29cm 이상</p> <p>③ 글자 크기 : 60포인트 이상(음식명 30포인트 이상)</p> <p>④ 글자색은 바탕색과 다른 색으로 선명하게 표시</p> <p>(2)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당이나 취식(取食) 장소에 월간 메뉴표, 메뉴판, 게시판 또는 팸말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시</li> <li>- 교육·보육시설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원산지가 적힌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으로 알려주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하여야 함</li> </ul> <p>(3) 장례식장, 예식장, 병원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운영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취식자를 포함한다)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팸말, 게시판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음</li> </ul> <p>다) 닭고기 및 돼지고기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리한 음식에 사용된 닭고기 또는 돼지</li> </ul>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고기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인삼류의 연근 및 원산지 표시 가. 표시자 -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 나. 표시대상 - 홍삼·태극삼·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흑삼)이나 그 용기·포장 등 다. 표시내용 - 연근 및 원산지	- 인삼산업법 제15조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044-201-2239)
	<input type="checkbox"/> 어린이기호식품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표시 가. 영양성분 표시 1) 표시의무자 : 식품접객영업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점포수 100개 이상인 경우의 영업자 2) 표시대상 : 표시의무자의 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 3) 표시사항 :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그 밖에 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영양성분 4) 표시방법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표시 나.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 1) 표시권고자 : 식품 제조·가공·수입업자 2) 표시대상 · (간식용) 과자류 중 과자(한과 제외), 캔디류, 빙과류, 빵류, 초콜릿류, 유가공품(원유 함량 82.5% 이상 제외) 중 가공유류·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 제외)·아이스크림류,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시행령 제8조 - 관련고시 ·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정책과 (☎ 043-719-2254) - 식품안전표시인증과 (☎ 043-719-2186)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음료류 중 과.채주스·과.채음료·탄산음료·유산균음료·혼합음료</p> <p>·(식사대용) 면류(용기면만 해당) 중 유당면류·국수,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p> <p>3) 표시대상 영양성분: 총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p> <p>4) 표시방법 : 표시대상식품에 들어 있는 총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의 함량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의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적색, 황색, 녹색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p> <p>다.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p> <p>1) 표시권고자 : 식품 제조·가공·수입업자</p> <p>2) 표시대상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카페인 함량이 ml당 0.15mg 이상 함유로 고카페인 함유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p> <p>3) 표시방법 :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눈에 띄게 표시면의 바탕색과 구분되는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p> <p>* 가, 나 및 다의 세부 표시는 관련 고시(어린이 기호식품 등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참조</p>		
	<p>□ 어린이 기호식품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p> <p>가. 표시의무자 : 식품접객영업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점포수 100개 이상인 경우의 영업자</p> <p>나. 표시대상 : 표시의무자의 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p> <p>다. 표시사항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또는 원재료명</p> <p>라. 표시방법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p>	<p>-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2, 시행령 제8조</p> <p>- 관련고시</p> <p>·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p>	<p>-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정책과 (☎ 043-719-2254)</p> <p>- 식품안전표시인증과 (☎ 043-719-2186)</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표시</p> <p>* 세부 표시는 관련 고시(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참조</p> <p><input type="checkbox"/>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의 제한·금지</p> <p>가. 대상자 :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p> <p>나. 광고의 제한·금지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 금지</li> <li>-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텔레비전방송광고 시간 제한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li> <li>-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방송법」 제73조제2항제2호)에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 시행령 제7조의2</li> <li>- 관련고시</li> <li>·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총괄과 (☎ 043-719-2254)</li> </ul>
	<p><input type="checkbox"/>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p> <p>가. 표시대상: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유전자변형 식품임을 표시</p> <p>나. 표시의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li> <li>- 유전자변형식품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위생법 제12조2</li> <li>-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li> <li>-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li> <li>-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li> <li>- 관련고시</li> <li>·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 043-719-2194)</li> </ul>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p> <p>다.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시는 한글로 표시,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스티커 또는 라벨지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용기·포장 등의 바탕색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색상으로 12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선명하게 표시</li> </ul>		
(2) 의약품	<p><input type="checkbox"/> 의약품의 표시</p> <p>가. 용기·포장</p> <p>1) 표시의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li> </ul> <p>2) 표시내용</p> <p>가)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위탁제조한 경우 제조소의 명칭과 주소)</p> <p>나) 명칭(대한약전에 실린 의약품은 대한약전에서 정한 명칭, 그밖의 의약품은 일반명칭)</p> <p>다)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p> <p>라) 중량 또는 용량이나 개수</p> <p>마) 대한약전에서 의약품의 첨부문서 또는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p> <p>바) 생물학적 제제 및 대한민국 약전에 실리지 아니한 의약품에 대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성질·상태, 품질 및 저장 방법 등의 기준을 정한 의약품의 경우 그 저장방법과 그밖에 그 기준에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사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li> <li>-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6조, 제77조</li> <li>- 관련고시</li> <li>·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li> </ul>	<p>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 (☎ 043-719-2671)</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의약품의 첨부문서 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p> <p>사)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유효 성분의 분량(유효 성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그 본질 및 그 제조방법의 요지) 및 보존에의 분량. 다만, 보존제를 제외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할 수 있음</p> <p>아)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문자</p> <p>자) 용법·용량 그밖에 사용 또는 취급할 때에 필요한 주의사항</p> <p>차) 성상</p> <p>카) 효능·효과</p> <p>타) 저장방법</p> <p>파) 모든 제조공정을 위탁제조하거나 원료 칭량·포장공정을 제외한 모든 공정을 위탁제조하는 경우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기재방법은 위탁자는 "제조의뢰자"로, 수탁자는 "제조자"로 함)</p> <p>하) 수입품 또는 수입하여 소분한 경우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기재방법은 수입 또는 소분한 자는 "수입자" 또는 "소분제조자"로, 생산국 제조자는 "제조자"로 함)</p> <p>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 제5호에 따른 규격품 한약의 경우 "규격품"이라는 표시와 원산지명(국가명 등)</p> <p>너) 낱알모음하여 한 알씩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하는 경우 낱알모음포장에 제품의 명칭,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 다만,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은 기한을 넘지</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월로 표시할 수 있음</p> <p>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p> <p>러) 동물에서 유래된 성분(첨가제를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성분명, 기원 동물 및 사용부위. 다만, 빈 캡슐 등 제조공정상 소해면상뇌증의 감염 우려가 없는 품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p> <p>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은 “오·남용우려의약품”이라는 문자</p> <p>버)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경우 그 명칭</p> <p>서)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인 경우 포장단위마다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이라는 문자</p> <p>* 약국개설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의 가격을 용기나 포장에 적어야 함</p> <p>나. 외부 포장</p> <p>1) 의약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적힌 위의 각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경우,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함</p> <p>다. 첨부문서</p> <p>1) 용법·용량, 그 밖에 사용 또는 취급할 때에 필요한 주의 사항</p> <p>2)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의약품은 대한민국약전에서 의약품의 첨부 문서 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p> <p>3) 위 가. 2)에서 (다), (아), (더)를 제외한 모든 사항</p> <p>4)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문자</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5) “오·남용우려의약품”이라는 문자</p> <p>6)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이 지났거나 변질·변패·오염되거나 손상된 의약품은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게만 바꾸어 준다는 내용과 교환방법</p> <p>7) 첨부문서 작성 연월일 또는 최종 개정 연월일 * 한약재의 용기나 포장에 ① 수입자의 상호, ② 제품의 명칭, ③ 중량 또는 용량, ④ 원산지명(국가명), ⑤ 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의 사항이 기재된 경우에는 첨부문서를 생략할 수 있음</p> <p>라. 표시방법 및 주의사항</p> <p>1)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다음과 같이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함</p> <p>가) 기재사항은 한글로 기재하되, 한글과 같은 크기의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음. 단, 수출용의약품의 경우는 그 수출대상국의 언어로 기재할 수 있음</p> <p>나)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제품의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등은 점자표기를 병행할 수 있음</p> <p>다)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주소·위탁제조한 경우 제조소의 주소·모든 제조공정을 위탁제조하거나 원료칭량·포장공정을 제외한 모든 공정을 위탁제조하는 경우 제조자의 주소·수입품 또는 수입하여 소분한 경우 생산국 제조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시·도명(외국의 경우에는 국가명)만을 기재할 수 있으며, 용기 또는 포장이나 첨부 문서 중 어느 하나에는 그 주소를 명기할 것</p> <p>라) 바코드 또는 전채태그는 판독기로 인식</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될 수 있고 다른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하게 표시할 것</p> <p>마) 의약품의 내용량은 용기나 포장 자체의 무게가 포함되지 아니한 양을 기재할 것</p> <p>바) 제품의 특징은 허가된 범위에서 충분히 객관성이 있는 내용만을 기재할 것</p> <p>사) 유효성분의 규격을 기재할 것</p> <p>아) 효능·효과를 거짓 또는 과장하는 인상을 주는 약리작용을 기재하지 아니할 것</p> <p>자) 복합제의 경우 성분별 효능이나 효과, 관련 질병 등을 나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승작용 또는 상가작용을 표현하려는 경우에는 객관성이 있는 근거자료에 의할 것</p> <p>차)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기재할 것</p> <p>카) 예외적인 자료 등을 일반적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지 아니할 것</p> <p>타) 동물실험자료를 설명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실험동물의 종류 등을 명기하여야 하며, 그 실험의 결과가 인체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표현하지 아니할 것</p> <p>파) 다른 의약품과의 비교자료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객관성이 있는 근거에 의하여야 하며, 비교대상의 약품은 유효성분의 일반명칭으로 할 것</p> <p>하)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문자는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기재할 것</p> <p>거) 용법이 특정한 한가지로 정하여진 주사제 용기에는 굵은 글씨로 용법을 알아보기 쉽게 한글 또는 영문 약자 등을 이용하여 기재할 것(기재방법은 "정맥주사용"·"정주용"·"I.V.", "근육</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주사용"."근주용"."I.M." 등). 다만, 수액용주사제는 제외</p> <p>너) 그 밖에 글자크기, 줄 간격, 기재방법 및 예외사항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참고)</p>		
	<p>□ 의약외품의 표시</p> <p>1) 표시의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li> </ul> <p>2) 표시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약외품의 용기·포장, 첨부문서</li> </ul> <p>3) 표시내용</p> <p>가) 의약외품의 명칭</p> <p>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p> <p>다) 용량 또는 중량(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은 용량 또는 중량이나 개수)</p> <p>라)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p> <p>마)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단, ① 보존제를 제외한 소량 함유 성분 ② 품목허가(신고)증에 기재된 성분 중 원료약품(원자재) 및 그 분량에 기재된 원료명 이외의 성분으로서 별도 규격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할 수 있음)</p> <p>바) 식약처장이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제법·성상·성능·품질 및 저장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의약외품의 경우 그 저장방법, 그 밖에 그 기준에서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p> <p>사) "의약외품"이라는 문자</p> <p>아) 가격(의약외품의 가격은 의약외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가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사법 제65조, 제65조의2 부터 제65조의4</li> <li>-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4조 부터 제77조 까지</li> <li>- 관련고시</li> <li>-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li> </ul>	<p>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 (☎ 043-719-3710)</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차) 효능·효과</p> <p>카) 용법·용량</p> <p>타) 사용상의 주의사항</p> <p>파) 동물에서 유래된 성분(첨가제를 포함)을 사용하는 경우 그 성분명, 기원 동물 및 사용부위. 단, 빈 캡슐 등 제조공정상 소해면상뇌증의 감염 우려가 없는 품목은 제외</p> <p>하) 모든 제조공정을 위탁제조하거나 원료 칭량·포장공정을 제외한 모든 공정을 위탁제조하는 경우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위탁자는 “제조외자”로, 수탁자는 “제조자”로 기재)</p> <p>거) 수입품 또는 수입하여 소분한 경우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기재 방법은 수입 또는 소분한 자는 “수입자” 또는 “소분제조자”로, 생산국 제조자는 “제조자”로 함)</p> <p>너) 금연보조제의 경우 경고문구, 타르·일산화탄소 개비당 함량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외부포장에 기재하도록 정하는 사항</p> <p>더)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경우 그 명칭 * 차)~거), 더) 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p> <p>4) 표시방법</p> <p>가)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함</p> <p>나) 기재사항은 한글로 기재하되, 한글과 같은 크기의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음. 단, 수출용 의약외품의 경우는 그 수출대상국의 언어로 기재할 수 있음</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다) 의약외품의 내용량은 용기나 포장 자체의 무게가 포함되지 아니한 양을 기재(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p> <p>라) 제품의 특징은 허가된 범위에서 충분히 객관성이 있는 내용만 기재</p> <p>마) 효능·효과를 거짓 또는 과장하는 인상을 주는 약리작용을 기재하지 않아야 함</p> <p>바) 유효성분의 규격을 기재(내용액제, 내용고형제, 연고제, 카타플라스마제, 외용스프레이파스만 해당)</p> <p>사)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기재</p> <p>아) 예외적인 자료 등을 일반적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지 아니할 것</p> <p>자) 동물실험자료를 설명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실험동물의 종류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그 실험의 결과가 인체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표현하지 않아야 함</p> <p>차) 다른 의약외품과의 비교자료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객관성이 있는 근거에 의하여야 하며, 비교대상의 의약외품은 유효성분의 일반명칭으로 해야 함</p> <p>카) “의약외품”이라는 문자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p> <p>타) 그 밖에 기재방법 및 예외사항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p> <p>파) 공공기관 납품을 조건으로 허가받은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는 “납품용”이라는 문자를 추가 기재</p> <p>하) 다음의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에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할 수 없는</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경우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 또는 다른 기재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음</p> <p>(1) 표시내용을 외부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기재한 경우 : 제품의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외의 기재사항을 생략(단,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외의 기재사항을 생략할 수 있음)</p> <p>(2) 3) 표시내용 차)용법·용량, 가)사용상의 주의사항 의 기재사항을 외부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기재한 경우 : 직접 답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용법·용량-외부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 참조” 또는 “주의사항-외부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 참조” 라는 기재사항으로 갈음할 것</p> <p>거) 글자크기</p> <p>* "포인트"는 한국산업규격 KS A 0201(활자의 기준 치수)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자의 크기를 표시하는 단위</p> <p>(1) 용기 및 포장</p> <p>(가) 내용액제, 내용고형제, 연고제, 카타플라스마제, 외용스프레이파스의 경우</p> <p>① 의약외품의 명칭, 사용기한 및 “의약외품”이라는 문자는 7포인트 이상</p> <p>② 이외 기재사항은 6포인트 이상</p> <p>(나) 가목 이외 기타 제형의 경우</p> <p>① 의약외품의 명칭, 사용기한 및 “의약외품”이라는 문자는 7포인트 이상</p> <p>② 제조업자·수입자의 상호 및 제조번호는 6포인트 이상</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③ 이외 기재사항은 6포인트 미만 가능</p> <p>(2) 첨부문서의 경우 글자 크기는 6포인트 이상</p> <p>너) 중량 또는 용량이나 개수는 허가 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토대로 판매되는 단위를 구체적으로 기재</p> <p>더) 사용기한은 “사용기한: ○○년○○월○○일”, “○○.○○.○○(연. 월. 일) 까지”, “사용기한 : ○○○○년○○월○○일” 또는 “○○○○.○○.○○(연. 월. 일) 까지” 등의 방법으로 표시(단, 사용기한 표시항목에 날짜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기한 표시 위치를 기재할 수 있음(예, 사용기한 : 용기 상단 표시일까지)</p> <p>러) 더)에서 연, 월, 일의 표시순서가 전단의 표시순서와 다를 경우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연, 월, 일의 표시순서를 용기나 포장에 예시하여야 함</p> <p>머) 읽기 쉬운 글자체의 한글을 사용하여 각각의 글자가 겹쳐지지 않도록 하며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기재</p> <p>버) ‘외부용기나 포장 중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기재요령 및 순서’, ‘품목별 추가 기재사항’ 중 상세 내용은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별표1], [별표2]참조</p> <p>서) 의약외품의 명칭은 허가(신고)된 ‘제품명’으로 기재하여야 함,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품명이 기재된 동일면에는 제품명의 일부 상호나 상표도 표시기재로 인정할 수 있음</p> <p>* 거~머)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출용 의약외품은 제외</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 법령	소관부처
	<p>□ 동물용의약품의 표시</p> <p>(1) 표시의 주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li> </ul> <p>(2) 표시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용의약품의 표시 : 국가검정필, 국가출하승인 제외, 국가출하승인검정 면제</li> </ul> <p>(3) 표시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검정필: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li> <li>○ 국가출하승인 제외 : 국가출하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제제에 해당하는 생물학적 제제</li> <li>○ 국가출하승인검정 면제 : 국가출하승인검정면제 동물용의약품</li> </ul> <p>(4)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검정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검정제품 최소 포장단위의 포장자재 및 상표에 따른 표시 사항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국가검정필' 표시</li> </ul> </li> <li>○ 국가출하승인 제외 : 포장 또는 용기의 외부에 '국가출하승인 제외'라는 문구 기재</li> <li>○ 국가출하승인검정 면제 : 포장 또는 용기의 외부에 '국가출하승인검정 면제'라는 문구 기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사법 제53조, 제85조</li> <li>-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li> <li>- 관련고시</li> <li>· 국가검정제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취 요령 제6조</li> <li>·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등에관한 규정 제5조</li> </ul>	<p>-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 (☎054-912-0555)</p>
(3) 의료기기	<p>□ 의료기기의 표시</p> <p>가. 용기나 외장</p> <p>1) 표시의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li> </ul> <p>2) 표시내용</p> <p>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p> <p>나) 수입품의 경우는 제조원(제조국 및 제조사명)</p> <p>다) 허가(인증 또는 신고)번호, 제품명(제품명이 있는 경우에 한함), 품목명, 모델명</p> <p>라) 제조번호와 제조 연월(사용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 연월 대신에 사용기한을 적을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기기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li> <li>-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3조, 제44조</li> </ul>	<p>-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 (☎043-719-3811)</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마) 중량 또는 포장단위</p> <p>바) “의료기기”라는 표시</p> <p>사) 일회용인 경우 “일회용”이라는 표시와 “재사용 금지”라는 표시</p> <p>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의료기기 표준코드 [시행일] 4등급(2019.7.1.), 3등급(2020.7.1), 2등급(2021.7.1) 1등급(2022.7.1.)</p> <p>자) 첨부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 형태로 제공한다는 사실 및 첨부문서가 제공되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첨부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p> <p>3)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기나 외장의 면적이 좁거나 용기 또는 외장에 가)~자)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할 수 없는 의료기기로서 기재사항을 외부의 용기나 외부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기재한 경우, 당해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제품명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를 기재하여야 함</li> </ul> <p>나. 외부포장 등의 기재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기재된 기재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li> </ul> <p>다. 첨부문서</p> <p>1) 표시의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li> </ul> <p>2) 표시내용</p> <p>가) 사용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p> <p>나) 보수점검이 필요한 경우 보수점검에 관한 사항</p> <p>다)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재하도록 정하는 사항</p> <p>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마) 수입품의 경우는 제조원(제조국 및 제조사명)</p> <p>바) 허가(인증 또는 신고)번호, 제품명(제품명이 있는 경우에 한함), 품목명, 모델명</p> <p>사) 중량 또는 포장단위</p> <p>아) "의료기기"라는 표시</p> <p>자) 제품의 사용목적</p> <p>차) 보관 또는 저장방법</p> <p>카) 일회용인 경우 "일회용"이라는 표시와 "재사용 금지"라는 표시</p> <p>타) 모든 제조공정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의뢰자(위탁자를 말한다)와 제조자(수탁자를 말한다)의 상호와 주소</p> <p>파) 날개모음으로 한개씩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하는 경우에는 최소단위포장에 형명과 제조회사명</p> <p>하) 멸균후 재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인 경우에는 그 청소, 소독, 포장, 재멸균 방법과 재사용 횟수의 제한내용을 포함하여 재사용을 위한 적절한 절차에 대한 정보</p> <p>거) 의학적 치료목적으로 방사선을 방출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방사선의 특성·종류·강도 및 확산 등에 관한 사항</p> <p>너) 그 밖에 의료기기의 특성 등 기술정보에 관한 사항</p> <p>더) 첨부문서의 작성연월</p> <p>* 가)~더)의 사항은 디스켓, 시디(CD) 등의 전산매체 또는 안내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p> <p>3)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용의료기기의 첨부문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p> <p>가) "임상시험용"이라는 표시</p> <p>나) 제품명 및 형명</p> <p>다)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일(사용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기한으로 기재할 수 있다)</p> <p>라) 보관(저장)방법</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위탁제조 또는 수입의 경우에는 제조원과 국가명을 포함한다)</p> <p>바) "임상시험용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표시</p> <p>라. 기재 시 주의사항 및 표시방법</p> <p>1) 기재 시 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 외부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의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도화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기재하여야 하고, 한글로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li> </ul> <p>2)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 외부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 기재사항의 표시방법</p> <p>가)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 외부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의 기재사항은 한글로 기재하거나, 한글에 한글과 같은 크기의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것. 다만, 수출용 의료기기는 수출 대상국의 언어만 사용할 수 있다.</p> <p>나) 그 밖에 글자 크기, 줄 간격 및 그 밖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p> <p>다) 의료기기의 용기 또는 외장이나 포장에 제품의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 등을 기재할 때에는 위의 표시방법에 병행하여 점자표기를 할 수 있다.</p>		
	<p>□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표시</p> <p>가. 용기나 외장</p> <p>1) 표시의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li> </ul> <p>2) 표시내용</p> <p>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p> <p>나) 수입품의 경우는 제조원(제조국 및 제조사명)</p> <p>다) 허가(인증 또는 신고)번호, 제품명(제품명이</p>	<p>-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p> <p>-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p>	<p>-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체외진단의료기기지원TF (☎ 043-719-3787)</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있는 경우에 한함), 품목명, 모델명</p> <p>라) 제조번호와 제조 연월(사용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 연월 대신에 사용기한을 적을 수 있다)</p> <p>마) 중량 또는 포장단위</p> <p>바) 일회용인 경우 "일회용"이라는 표시와 "재사용 금지"라는 표시</p> <p>사) 의료기기 표준코드</p> <p>아) 첨부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형태로 제공한다는 사실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제공하는 경우에 한함)</p> <p>자) 사용목적</p> <p>차) "체외진단의료기기"라는 표시</p> <p>카) 보관 또는 저장방법</p> <p>3)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기나 외장의 면적이 좁거나 용기 또는 외장에 가)~카)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할 수 없는 체외진단의료기기로서 기재사항을 외부의 용기나 외부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기재한 경우, 당해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제품의 모델명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함</li> </ul> <p>나. 첨부문서</p> <p>1) 표시의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li> </ul> <p>2) 표시내용</p> <p>가) 사용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p> <p>나) 정도관리가 필요한 경우 정도관리에 관한 사항</p> <p>다) 「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른 기준규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재하도록 정하는 사항</p> <p>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p> <p>마) 수입품의 경우는 제조원(제조국 및 제조사명)</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바) 허가(인증 또는 신고)번호, 제품명(제품명이 있는 경우에 한함), 품목명, 모델명</p> <p>사) 중량 또는 포장단위</p> <p>아) 일회용인 경우 "일회용"이라는 표시와 "재사용 금지"라는 표시</p> <p>자) 첨부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형태로 제공한다는 사실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제공하는 경우에 한함)</p> <p>차) 사용목적</p> <p>카) "체외진단의료기기"라는 표시</p> <p>타) 보관 또는 저장방법</p> <p>파) 모든 제조공정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의뢰자(위탁자를 말한다)와 제조자(수탁자를 말한다)의 상호와 주소</p> <p>하)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구조 등 기술 정보에 관한 사항</p> <p>거) 방사선을 방출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우 방사선의 특성·종류 등에 관한 사항</p> <p>너) 첨부문서의 작성연월</p> <p>3) 임상적 성능시험용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p> <p>가) 제조업자(위탁제조)의 경우 제조자 포함)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 및 주소</p> <p>나) 수입품의 경우 제조국가명과 제조자의 상호 및 주소</p> <p>다) 제품명과 모델명</p> <p>라) 보관 또는 저장방법</p> <p>마) "임상적 성능시험용"이라는 표시</p> <p>바) "임상적 성능시험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표시</p> <p>다. 외부포장 등의 기재사항</p> <p>-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기재된 기재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4) 화장품	<p><input type="checkbox"/> 화장품의 표시</p> <p>가. 표시의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li> <li>* 가격의 경우 판매자가 표시</li> </ul> <p>나. 표시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li> <li>*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함)은 2차 포장에 기재·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1차 포장에 기재·표시</li> <li>**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음<sup>1</sup></li> </ul> <p>다. 표시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화장품의 명칭</li> <li>2)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li> <li>3)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재·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성분</li> <li>- 제조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제품에 남아있지 않은 성분</li> <li>-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자체에 들어있는 부수성분으로서 그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있는 성분</li> <li>- 내용량이 10mL 초과 50ml 이하 또는 중량이 10g 초과 50g 이하 화장품의 포장인 경우에는 다음 성분을 제외한 성분</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top: 10px;"> <p>가. 타르색소</p> <p>나. 금박</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품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li> <li>-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0조, 제21조, 별표3, 별표 4</li> </ul>	<p>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043-719-3409)</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다. 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종류</p> <p>라. 과일산(AHA)</p> <p>마.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p> <p>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용 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p> </div> <p>4)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별표 4 참조</p> <p>5) 제조번호</p> <p>6)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함)</p> <p>7) 가격(소비자에게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는 자가 판매하려는 가격을 표시하여야 함) : 화장품 가격표시제실시요령(식약처 고시) 참조</p> <p>8)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도안</p> <p>9)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 동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별표 3 및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참조</p> <p>10)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 :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식약처 고시) 참조 * 맞춤형화장품은 제외</p> <p>11)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효과, 용법·용량</p> <p>12)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성분명과 함량(방향용 제품 제외)</p> <p>13)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이 들어있는 경우 그 함량</p> <p>14) 화장품에 천연 또는 유기농으로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원료의 함량</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15) 수입화장품인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을 생략할 수 있다),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 * * 맞춤형화장품은 제외</p> <p>16)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p> <p>1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원료 중 보존제의 함량</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가.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만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제품류인 경우</p> <p>나. 만 4세 이상부터 만 13세 이하까지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임을 특정하여 표시·광고하려는 경우</p> </div> <p>※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가격(견본품이나 비매품 등의 표시),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li> <li>-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사전에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포장 (이 경우 '가격' 표시는 견본품이나 비매품 등의 표시를 말한다. )</li> </ul> <p>다.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재·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문장보다</li> </ul>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정확히 기재·표시하여야 하되,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글로 읽기 쉽도록 기재하되,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고, 수출용 제품 등의 경우에는 그 수출 대상국의 언어로 적을 수 있다.</li> <li>- 화장품의 성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하여야 함.</li> <li>-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화장품,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 및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초과 50밀리리터 이하 또는 중량이 10그램 초과 50그램 이하 화장품(타르색소, 금박, 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종류, 과일산(AHA),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원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배합 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 제외)에 해당되어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의 기재·표시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생략된 성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① 소비자가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을 것</p> <p>②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이 적힌 책자 등의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늘 갖추어 둘 것</p> </div>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5) 공산품	<p>□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표시</p> <p>가. 표시의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li> </ul> <p>나. 표시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li> </ul> <p>다.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 또는 포장에 안전인증표시*(안전인증의 표시 또는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또는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제품의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표시를 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안전확인신고의 표시</li> <li>*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li> </ul> </li> <li>- 표시는 해당 제품 또는 포장에 쉽게 식별이 될 수 있는 곳에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되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전기용품이 소형이거나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사용되어 표시사항 전체를 표시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하여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품 표면에 표시 할 수 있는 최대 단면적이 400 mm<sup>2</sup> 이하인 소형 제품으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KC마크 또는 인증번호·안전확인신고번호 중 1개를 표시하고, 전기용품의 최대 단면적이 400 mm<sup>2</sup> 초과 900 mm<sup>2</sup> 이하인 소형제품은 제품에 KC마크와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 번호 각각을 표시하여야 하며, 소형제품에 표시하지 않은 나머지 표시사항은 꼬리표 또는 포장지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li> </ol> </li> </ul>	<p>-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 제18조 및 제25조</p>	<p>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 안전과 (☎ 043-870-5441)</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표시하여야 함</p> <p>2. 전선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표시하여야 함</p> <p>2-가. 불소수지절연전선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전선의 표면에 1 m이하 마다 (600 V 고무절연 전선, 고무코드, 기타 표면에 표시하기 곤란 한 것에 있어서는 절연 피복 안에 넣은 테이프에 연속하여)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코드 이외의 것으로서 전선에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 권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꼬리표에 표시 부착할 수 있음</p> <p>2-나. 불소수지절연전선은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1 권마다 꼬리표에 표시하여야 함</p> <p>3. 전구류는 제품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 확인마크 및 정격을 표시하고, 이를 제외한 표시사항은 꼬리표 또는 포장지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 할 수 있음</p> <p>4. 제품의 구조상 해당 제품에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표시사항은 꼬리표 또는 포장지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 할 수 있음</p> <p>5. 전기용품에 내장되어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 충전지는 안전확인 마크 또는 안전확인 신고번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충전지에 표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표시사항은 전기제품의 꼬리표 또는 포장지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할 수 있음</p> <p>6. 휴대폰, 스마트폰, 태블릿 PC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자적 표시</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Electronic-Labeling 이하 “e-labeling“ 이라 한다)를 할 수 있음</p> <p>6-가. 전자적 표시(e-labeling)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제품의 포장에 쉽게 식별이 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함</p> <p>6-나. 전자적 표시(e-labeling)의 방법 및 이를 사용하는 제품의 요구조건,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3조 별표 5 제3호(전자적 표시 방법 및 절차)를 준용함</p> <p>- 안전인증의 표시 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함</p> <p>* 아래의 내용을 대상제품과 그 포장에 표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 확인의 마크</li> <li>2.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 번호</li> <li>3. 모델명</li> <li>4.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외국 소재 제조업체인 경우에만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li> <li>5.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예 : 제조년월, 로트번호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년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li> <li>6. 애프터서비스 연락처(실질적으로 A/S가 가능한 국내의 연락처)</li> <li>7. 개별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li> </ol> <p>비고 : 해당 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의 표시,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제품 포장의 표시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생략할 수 있음</p>		

<첨부>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목록

①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0-23호 별표 1 근거)

분류	품 목	세부품목
1. 전선 및 전원코드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① 절연전선(공칭단면적이 95mm <sup>2</sup>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② 케이블(공칭단면적이 95mm <sup>2</sup>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③ 코드(공칭단면적이 0.5mm <sup>2</sup> 이상 6mm <sup>2</sup>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④ 코드세트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통신 및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전기기기용스위치	가. 스위치	① 전기기기용 스위치(정격전압 480V이하, 정격전류가 30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② 전기설비용 스위치[교류전용 수동식 범용스위치로 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나사 없는 단자가 달린 스위치의 정격전류는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③ 코드스위치(코드선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스위치로서 250V 이하,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④ 전자식 스위치(정격전압 250V이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⑤ 리모트콘트롤스위치(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⑥ 시간지연스위치(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⑦ 조광기(정격전압 250V이하, 정격전류

분류	품 목	세부품목
		가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⑧ 제어회로용 스위치(정격전압 480V이하, 정격전류가 30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나. 전자개폐기	① 전자개폐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① X·Y 커패시터(도체간의 전압이 500V 이하이거나 도체와 접지간의 전압이 250V 이하인 것 또는 저항 커패시터가 조합되어 결합되어진 것으로 등가회로의 직렬저항값이 1kΩ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② 전파장해역제용 전원필터(도체간 공칭 전압이 500V 또는 도체와 접지간의 공칭전압이 250V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③ 형광등용 커패시터(용량이 0.1μF 이상이고 무효전력이 2.5kvar 이하인 형광등용인 것에 한정한다)
	비고: 100Hz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① 전기기기용접속기류(전원분배기 포함) ② 상호연결커플러(전기기기 또는 그 밖의 전기장치와 전원용 코드를 접속하기 위한 것으로 정격전압 250V 이하, 정격전류 16A 이하의 접지극이 있거나 접지극이 없는 것에 한정한다) ③ 플러그 및 콘센트 [교류 전용 플러그와 콘센트 또는 이동형 콘센트로 정격전류가 32A(나사 없는 단자 고정형콘센트의 정격전류는 20A) 이하인 접지

분류	품 목	세부품목
		<p>핀을 장착한 것 또는 접지극이 없는 것으로서 옥내용 또는 옥외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정한다]</p> <p>④ 케이블릴(단상 정격전압 250V 정격전류 16A 이하, 삼상 정격전압 440V 정격전류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p>
		비고: 방폭형(防爆型)인 것은 제외한다.
5. 전기용품보호용 부품	가. 퓨즈	<p>① 퓨즈(정격전류가 20mA 이상 10A 이하인 것으로 소형퓨즈인 것에 한정한다)</p> <p>② 온도퓨즈(동작온도가 80 ℃ 초과 280 ℃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p>
	나. 차단기	<p>① 기기보호용 차단기(정격전류가 125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p> <p>② 배선용차단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p> <p>③ 누전차단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으로 누전보호전용 또는 누전·과부하보호·단락검용보호 겸용인 것에 한정한다)</p>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한다.
6. 절연변압기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p>① 전압조정기</p> <p>② 가정용 소형변압기</p> <p>③ 교류어댑터</p>
		비고: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가. 전기청소기	<p>① 진공청소기</p> <p>② 물흡입청소기</p> <p>③ 전기바닥청소기</p> <p>④ 전기표면세척기</p> <p>⑤ 스팀청소기</p> <p>⑥ 스팀해빙기</p>

분류	품 목	세부품목	
7. 전기기기		⑦ 고압세척기(정격입력 3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나.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① 전기다리미 ② 스팀다리미 ③ 바지 프레스기 ④ 주름펴기 ⑤ 다림질 프레스	
	다. 주방용 전열기구	① 전기레인지 ② 전기오븐기기 ③ 전기저치식그릴 ④ 전기호브 ⑤ 전기곤로 ⑥ 전기가열기 ⑦ 전기토스터 ⑧ 전기프라이팬 ⑨ 전기휴대형그릴 ⑩ 전기고기구이기 ⑪ 와플기기 ⑫ 핫플레이트	
	라.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① 전기세탁기 ② 전기탈수기	
	마. 모발관리기	① 모발건조기 ② 전기머리인두 ③ 모발말개	
	바. 삭제<2018.12.31>		
	7. 전기기기		

분류	품 목	세부품목
7. 전기기기	사.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 기기	① 주서 ② 주서믹서기 ③ 후드믹서 ④ 전기녹즙기 ⑤ 크림거품기 ⑥ 계란반죽기 ⑦ 혼합기 ⑧ 버터제조기 ⑨ 압즙기 ⑩ 슬라이스기 ⑪ 전기칼갈이 ⑫ 전기짱통따개 ⑬ 전기칼 ⑭ 커피분쇄기 ⑮ 빙삭기 ⑯ 전기고기갈개 ⑰ 전기국수제조기 ⑱ 전기육절기 ⑲ 전기골절기 ⑳ 기타주방용전동기기
	아. 전기액체 가열기	① 전기밥솥 ② 전기보온밥솥 ③ 전기주전자 ④ 전기냄비 ⑤ 전기물끓이기 ⑥ 전기약탕기 ⑦ 커피메이커 ⑧ 전기스팀쿠커 ⑨ 달걀조리기 ⑩ 우유가열기

분류	품 목	세부품목
7. 전기기기		① 젓병가열기 ② 요구르트제조기 ③ 증기조리기 등 기타 액체가열기기
	자.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① 전기요 ② 전기매트 ③ 전기카펫 ④ 전기장판 ⑤ 전기침대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	① 전기방석 ② 전기찜질기 ③ 발보온기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카. 전기온수기	① 전기온수기(끓는 점 이하의 온도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순간온수기
	타. 전기냉장·냉동기기	① 전기냉장·냉동기기 ② 제빙기 ③ 아이스크림프리저 ④ 전기냉수기  비고: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다만 제빙기는 3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파. 전자레인지	① 전자레인지(300MHz ~ 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하. 전기충전기	① 전기충전기  비고: 교류전원 30V 초과 250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한다.

분류	품 목	세부품목
7. 전기기기	거. 전기건조기	① 회전형 전기건조기 ② 손건조기 ③ 전기건조기 ④ 의류관리기 비교: 손,발,의류,농산물,수산물 등을 건조하는 것에 한정한다.
	너. 전열기구	① 전기스토브 ② 전열보드 ③ 전기라디에이터 ④ 전기온풍기 ⑤ 축열식 전기난방기 ⑥ 전구모양 히터 ⑦ 펠릿 스토브 (전열소자를 이용하여 점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더. 전기 마사지기	① 전기마사지기
	러. 냉방기	① 냉방기
	머. 삭제<2018.12.31>	
	머 . 삭 제 <2018.12.31>	

분류	품 목	세부품목
7. 전기기기	서.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① 전격살충기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어. 삭제<2018.12.31>	
	저. 팬, 레인지후드	① 선풍기 ② 송풍기 ③ 환풍기 ④ 레인지후드 ⑤ 전기냉풍기 비고: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처. 화장실용 전기기기	① 자동세정건조식변기 ② 전기변좌 ③ 오물흡입기
	커. 가습기	① 가습기
	터. 그 밖에 가목부터 커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防爆型)인 것은 제외한다.
	8. 전동공구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분류	품 목	세부품목
		⑩ 전기왕복톱 ⑪ 전기진동기 ⑫ 전기체인톱 ⑬ 전기대패 ⑭ 전기잔디깎이 ⑮ 전기못총 ⑯ 라우터 ⑰ 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 비교: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9.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대상 없음	
10. 정보·통신·사무기기	가. 직류전원장치	① 직류전원장치 ② 휴대전화 전지 충전기(충전 거치대를 포함한다) 비교: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나. 단전지	① 단전지 비교: 1.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PC에 적용되는 에너지밀도 700 Wh/L 이상, 충전전압 4.4 V 이상 되는 리튬이차 단전지만 해당된다. 2. 일상생활에서 전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리튬이차 단전지는 전지로 간주하며,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3. 교류전원 30 V 이하, 직류전원 42 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그 밖에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교: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11. 조명기기	가. 램프홀더	① 형광램프 홀더

분류	품 목	세부품목
		② 에디슨 나사형 홀더 ③ 기타 램프 홀더 ④ 형광등용 스타터 홀더
	나. 일반조명기구	① 형광등기구 ② PLS조명기구 ③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 ④ LED등기구 ⑤ 할로젠등기구(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램프당 150W 이하인 것에 한정함) ⑥ 고압방전등기구(램프당 150W 이하인 것에 한정함) ⑦ 투광조명기구(구동장치가 있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함) ⑧ LED조명 시스템
	다.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① 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을 한정한다) ②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을 한정한다) ③ 네온변압기 ④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 포함)
	라. 안정기 내장형램프	① 안정기내장형램프(LED용 포함)
12.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리튬이차단전지	① 리튬이차단전지 비교: 1. 일상생활에서 전지시스템을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단전지는 전지시스템으로 간주하며,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2.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 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분류	품 목	세부품목
비고:		
1. 차량, 철도, 선박 및 항공기 등에 설치된 전용구조의 것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제외한다. 다만, 가정, 사무실, 농장, 경공업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2.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②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0-23호 별표 2 근거)

분류	품 목	세부품목
1. 전선 및 전원 코드	대상 없음	
2.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① 온도조절기 ② 온도과승방지장치 ③ 자동압력 스위치 ④ 타이머 및 타임스위치 ⑤ 전기구동 모터 기동릴레이 ⑥ 에너지 레귤레이터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대상 없음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대상 없음	
5. 전기용품보호용 부품	대상 없음	
6. 절연 변압기	가. 고주파웰더(고주파용접기)	① 고주파웰더(고주파용접기)
	나. 전기용접기	① 전기용접기 ② 권총형아크접착기
	비고: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분류	품목	세부품목
7. 전기기기	가. 과일 껍질깎이	① 과일 껍질깎이
	나. 전기 용해기	① 왁스 용해기 ② 초코렛 용해기 ③ 파라핀 용해기
	다. 이·미용기기	① 두피모발기 ② 샴푸기기 ③ 모발가습기 ④ 손톱정리기 ⑤ 전기면도기 ⑥ 전기이발기 ⑦ 안면사우나기
	라. 전기의자 전동침대	및 ① 전기이발용의자 ② 전동침대 ③ 전기온열의자 ④ 각도조절의자
	마. 컴프레서(compressor)	① 컴프레서(compressor)
	바. 전기온수매트	① 전기온수매트 ② 전기온수침대
	사. 구강청결기	① 전동칫솔 ② 구강세척기
	아. 해충퇴치기	① 해충퇴치기 ② 전기포충기
	자. 전기집진기	① 전기집진기
	차. 서비스기기	① 전기광택기 ② 수하물보관기 ③ 지폐교환기 ④ 동전교환기
7. 전기기기	카. 전기에어커튼	① 전기에어커튼
	타.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①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파. 폐열 회수 환기장치	① 폐열 회수 환기장치
	하. 게임기구	① 레이저사격기기

분류	품목	세부품목
7. 전기기기		② 운전시물레이션게임기구 ③ 인형뽑기 ④ 다트판 ⑤ 농구게임기 ⑥ 기타게임기구  비교: K 또는 KC 60335-2-82에 규정된 개인용 서비스기기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하는 것에 한정하며, K 또는 KC 60065 및 60950-1에 규정된 비디오게임용기구는 별표 2의2 제9호 비목(비디오 게임기구)을 적용한다.
	거. 식기세척기 및 식기 건조기	① 전기식기세척기 ② 전기식기건조기  비교: 정격입력이 5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너. 전기훈증기	① 전기훈증살충기 ② 전기방향확산기
	더. 수도 동결 방지기	① 수도 동결 방지기
	러. 산소이온 발생기	① 산소이온발생기
	머. 전기정수기	① 전기정수기 ② 전기이온수기
	버. 전기세척기	① 초음파세척기 ② 과일야채세척기 ③ 기타 전기세척기 ④ 오존수 발생장치  비교: 오존수 발생장치는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서. 전기헬스기구	① 전기헬스기구
	어. 전기차 충전기	① 전기차충전기(정격용량이 200 kV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② 자동차 어댑터
	저. <삭제>	<삭제>

분류	품목	세부품목
7. 전기기기	처. 가정용 전동재봉기	① 가정용 전동재봉기
	커. 사우나기기	① 전기스팀사우나기기 ② 전기사우나기기 ③ 사우나기기용 전열기 ④ 스팀사우나용 전열기
	터.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① 관상어용·식물용 히터 ② 동물부화·사육용 히터 ③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④ 관상용전기어항
	퍼. 기포발생기기	① 기포발생기
	허.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① 공기청정기 ② 이온발생기
	고. 전기분무기	① 전기분무기
	노.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① 물수건포장기 ② 물수건마는기기
	도.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전동기기	① 주서 ② 주서믹서기 ③ 후드믹서 ④ 전기녹즙기 ⑤ 크림거품기 ⑥ 계란반죽기 ⑦ 혼합기 ⑧ 버터제조기 ⑨ 압즙기 ⑩ 슬라이스기 ⑪ 커피분쇄기 ⑫ 빙삭기 ⑬ 기타 주방용 전동기기
	로. 직류전원을 사용하	① 전기찜질기
		비고: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분류	품목	세부품목
	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	② 발보온기 ③ 전기손난로 ④ 전기방석 ⑤ 온열시트 비교: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① 전격살충기 비교: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전지(건전지) 및 2차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보. 자동판매기	① 자동판매기
	소. 전기소독기	① 전기소독기
	오. 제습기	① 제습기
	조. 음식물처리기	① 음식물처리기(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제외한다) ② 주방용 오물분쇄기(하수도법에서 허용한 제품에 한정한다)
	초.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① 전기보온기 ② 전기주온기 ③ 전기온장고 비교: 음식이나 그릇류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코. 유체펌프	① 유체펌프 ② 전기온수펌프 비교: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토. 전기 가열기기	① 납땜인두 ② 납땜제거인두 ③ 권총형납땀기 ④ 열가소성도관용접기 ⑤ 필름접착기

분류	품목	세부품목
		⑥ 플라스틱절단기 ⑦ 페인트제거기 ⑧ 가열총 ⑨ 전기조각기
	포. 전기욕조	① 소용돌이욕조(독립적으로 사용가능한 욕조 기포발생기를 포함한다) ② 반신·전신욕조 ③ 발욕조
	호. 그 밖에 가목부터 포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교: 정격입력이 10 kW 이하(전기차 충전기는 정격용량이 200 kVA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8. 전동공구	대상없음	
9.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가. 텔레비전수상기	① 텔레비전수상기 ②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칠판 ③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테이블
	나. 디스크 플레이어	① 디스크플레이어
	다. 오디오시스템	① 오디오시스템
	라. 삭제<2018.12.31>	
	마. 오디오프로세서	① 오디오프로세서(오디오 믹서를 포함한다)
	바. 영상프로세서	① 영상프로세서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교: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10. 정보·통신·사무기기	가. 모니터	① 모니터 ②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③ 모니터 내장형 전자테이블  비교: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나. 프린터	① 프린터(플로터 및 그래픽 전용인 것은 제외한다)  비교: 1.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

분류	품목	세부품목
		<p>성확인대상으로 한다.</p> <p>2. 정격입력 3k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p>
	다. 프로젝터	<p>① 프로젝터</p> <p>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p>
	라. 문서세단기	① 문서세단기
	마. 천공기	① 천공기
	바 삭제<2018.12.31>	
	사. 복사기	① 복사기(광원의 정격 출력이 1.2 kW 이하인 것을 말한다)
	아. 무정전 전원장치	① 무정전 전원 장치 (정격용량이 10 kV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자.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①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차. 디지털TV(스마트 TV, IPTV 등을 말한다)	① 디지털TV(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방송 및 콘텐츠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카. 코팅기	① 코팅기(종이 등을 코팅하는 것을 말한다)
	타. 노트북컴퓨터	<p>① 노트북 컴퓨터</p> <p>② 태블릿 PC(화면 대각선의 길이가 17 cm 이상인 것에 한정하며, 음성 통화기능이 있는 경우도 태블릿 PC로 본다)</p> <p>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p>
	파. 전지(충전지만 해당한다)	<p>① 전지</p> <p>비고:</p> <p>1. 일상생활에서 전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리튬이차 단전지는 전지로 간주하며,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p> <p>2.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 전원 42V 이하에서</p>

분류	품목	세부품목
		<p>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p> <p>하. 그 밖에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p> <p>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p>
11. 조명기기	가. 백열등기구	<p>①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 (전자회로가 없는 구조의 것)</p> <p>② 샹데리아 등(1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p>
	나. 방전램프	<p>① 형광램프</p> <p>② 무전극램프</p> <p>③ 수은램프</p> <p>④ 메탈할라이드램프</p> <p>⑤ 나트륨램프 (※ 칼라램프 포함)</p> <p>비고 : 정격입력이 1,000 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p>
	다. 가목을 제외한 그밖의 조명기구	<p>① 체인형 조명기구</p> <p>② 충전식휴대전등</p> <p>③ 투광조명기구 (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p> <p>④ 할로겐등기구 (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p>
	라. 나목을 제외한 그밖의 램프	<p>① 백열전구</p> <p>② LED램프 (모듈)</p> <p>③ 할로겐전구 (250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칼라램프 포함)</p> <p>비고: 일상생활에서 조명기구를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PCB LED 모듈은 LED램프 (모듈)로 간주하며,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p>
12.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가. 전력변환장치 (정격용량이 2MW 이하인 것만	① 전력변환장치

분류	품목	세부품목
	해당한다) 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정격용량이 300kWh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① 리튬이차전지시스템
비고:		
1. 차량, 철도, 선박 및 항공기 등에 설치된 전용구조의 것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7호 로목 온열시트 또는 가정, 사무실, 농장, 경공업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2.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7호 전기기기 모목의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에 대하여는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포함한다.		

③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  
(국가기술표준원고 시 제2020-23호 별표 3 근거)

분류	품목	세부품목
1. 전선 및 전원코드	대상 없음	
2. 전기기기용 스위치	대상 없음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대상 없음	
4. 전기살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대상 없음	
5.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대상 없음	
6. 절연변압기	대상 없음	
7. 전기기기	가. 감자탈피기	① 감자탈피기
	나. 전기정미기	① 전기정미기
	다. 전기빵 자르개	① 전기 빵 자르개
	라. 애완동물 목욕기	① 애완동물목욕기
	마. 전기주류 숙성기	① 전기주류숙성기
	바. 전기시계	① 전기시계
	사. 적외선·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① 적외선방사 피부관리기 ②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아. 전기분수기	① 전기분수기
	자. 투영기	① 슬라이드 투영기 ② 필름스트립 투영기

분류	품목	세부품목
		③ OHP ④ 필름투영기
	차. 착유기	① 착유기
	카. 보풀제거기	① 보풀제거기
	타.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①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파. 전기 작동 도어록 (door lock)	① 전기 작동 도어록
	하.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① 공기청정기 ② 이온발생기 비고: 직류 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 하는 것을 포함한다.
	거. 전동형 롤스크린	① 전동형 롤스크린(전동식 커튼, 셔 터, 그릴, 차양, 블라인드 및 전기 구동장치를 말한다)
	너. 그 밖에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 외한다.	
8. 전동공구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충전용 전동공구	①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충전용 전동 공구
9.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가. 비디오카메라	① 비디오카메라
	나. 튜너	① 튜너
	다. 라디오 수신기	① 라디오 수신기
	라. 리시버	① 리시버
	마. 음성기록계	① 음성기록계
	바. 음성플레이어	① 음성플레이어
	사. 위성방송수신기	① 위성방송수신기
	아. 비디오폰	① 비디오폰
	자. 음질조절기	① 음질조절기
	차. 신호변환장치	① AD/DA 변환장치
	카. 컴프레서 게이트	① 컴프레서 게이트
	타. 전자시계	① 전자시계
	파. CCTV 카메라	① CCTV 카메라
	하.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①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분류	품목	세부품목	
	거. 영상기록계	① 영상기록계	
	너. A/V신호수신기	① A/V신호수신기	
	더. CATV방송수신기	① CATV방송수신기	
	러. 턴테이블	① 턴테이블	
	머. 모듈레이터	① 모듈레이터	
	버. 비디오 게임기구		① 비디오게임기구(텔레비전수상기에 접속하여 사용하거나 브라운관, 액정표시장치 또는 플라즈마표시장치를 갖는 구조의 것만 해당한다)
			비고: K 또는 KC 60065 및 60950-1에 규정된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기기에 한정하며, K 또는 KC 60335-2-82에 규정된 상업용 비디오게임기, 폴리퍼게임기, 전자게임기, 상업용스코어링 머신은 별표2 제7호 하목(게임기구)을 적용한다.
	서.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①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어. 앰프	① 앰프 ② 앰프 내장형 스피커	
	저. 편집기	① 편집기 (음성·음향 또는 영상을 편집하는 기기)	
	처. 음성 및 영상분배기	① 음성 및 영상분배기	
	커. 영상전송기	① 영상전송기	
	티. 전자악기	① 전자악기	
	퍼. 그 밖에 가목부터 터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10. 정보·통신 · 사무기 기	가. 스캐너	① 스캐너	
	나. 지폐계수기	① 지폐계수기	
	다. 금전등록기	① 금전등록기	
	라. 어학실습기	① 어학실습기	
	마. 전자칠판 및 보드	① 전자칠판	
		② 전자보드	

분류	품목	세부품목
		비고: 텔레비전(TV), 모니터 기능이 없는 것을 말한다.
	바. 동전계수기	① 동전계수기
	사. 전동타자기	① 전동타자기
	아. 전기소자기	① 전기소자기
	자. 교통카드 충전기	① 교통카드 충전기
	차. 번호표 발행기	① 번호표 발행기 ② 티켓 발행기 ③ 순번대기기
	카. 생활무선국용 무선기(이동형, 고정형 및 아마추어 무선국용기기 포함)	①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HF주파수대 기기) ②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VHF/UHF주파수대 기기) ③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④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타. 음성·음향신호 및 기타 신호전송용 무선기기	① 무선마이크 시스템 ② 무선스피커 시스템 ③ 무선 헤드셋 ④ IP 주소 공유기
	파.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가입자단말 장치	①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가입자 단말장치(IPTV용 셋톱박스 등)
	하. 종합유선 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①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디지털 CATV용 셋톱박스 등)
	거.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	①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지상파 디지털 TV용셋톱박스, D/A용 셋톱박스, A/V 신호수 신기 등)
	너. A/D 및 D/A 신호 변환기	① A/D 및 D/A 신호변환기(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방송신호로 변환해주는 셋톱박스 등)
	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신호처리기(셋톱박스 등)	①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신호 처리기 ② 아날로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신호처리기
	러. 차단기	① 차단기

분류	품목	세부품목
	머.실물화상기	① 실물화상기
	버. 입체영상기	① 입체영상기
	서.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 등 이동형 무선 통신 기기	① 휴대폰 ② 스마트폰 ③ TRS 휴대폰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 함하며, 휴대용 통신기기만 해당 된다
	어. 전화기(공공 전화망에 연결되는 것만 해당한 다)	① 전화기(유선·무선, 공중 및 영상 전화기를 포함한다) ②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 (인터넷전화기, 회의용브릿지, 번 호표시기, 착신표시기, 통화감지 기, 통화시간기록기, 자동다이얼 기, 장거리자동전화발신 제어기, 착신전환기, 자동 응답기 등)
	저. 팩시밀리기기	① 팩시밀리기기(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 기기를 포함한다)
	처.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 합 단말기기	① 홈오토메이션 ② 비디오도어폰 ③ 기타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
	커. 공중전화 회선을 이용 한 데이터 전송 및 검 색 단말기	①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 송 및 검색 단말기
	퍼.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①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허.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①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② 현금자동취급기 ③ 금융단말기기
	고. 위치기반 서비스용 무선기기	① 버스정류장 버스 안내 시스템 ② 내비게이션 ③ 기타 위치기반 서비스용 무선기기
	노. 원격제어방송기기	① 원격제어방송기기
	도. 제분기	① 제분기

분류	품목	세부품목
		② 스테이플러 비교: 정격입력이 1 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로. 그 밖에 가목부터 도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교: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11. 조명기기	가. 형광램프용 TM타터	① 램프용 글로우스타터 ② 램프용 전자식스타터
12.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대상 없음	
비교: 1. 차량, 철도, 선박 및 항공기 등에 설치된 전용구조의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0호 고목 내비게이션 또는 가정, 사무실, 농장, 경공업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2.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별표 2 제7호 전기기기 모목의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에 대하여는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포함한다.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5)공산품	<p>□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의 표시</p> <p>가. 표시의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업자</li> </ul> <p>나. 표시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 및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생활용품</li> </ul> <p>다. 표시방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제20조, 제37조, 제48조, 제51조 및 제55조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용품) 해당 생활용품 또는 최소포장 단위에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및 개별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함</li> <li>· 해당 생활용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li> <li>· 생활용품의 표면에 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생활용품의 최소 포장마다 붙일 수 있음</li> <li>-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해당 생활용품은 제품 또는 최소 포장단위에 어린이보호포장신고를 이행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함</li> </ul>	<p>-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제9조, 제15조, 제18조, 제23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32조 및 제33조</p> <p>-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7조, 제48조, 제51조 및 제55조</p>	<p>-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 안전과 (☎ 043-870-5455)</p>

<첨부>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 목록

①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분 야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가. 화학	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드고무를 포함한다)
나. 생활	1) 가스라이터 2) 물놀이기구 3) 비비탄 총
다. 기계금속	1) 삭제 <2019. 2. 8.> 2)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라. 섬유	대상 없음
마. 건축	대상 없음

②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분 야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가. 화학	1) 건전지(충전지는 제외한다) 2)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3) 자동차용 타이어
나. 생활	1)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2) 고령자용 보행차 3) 디지털 도어록 4)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5) 스노보드 6) 스케이트보드 7) 전동보드 8) 스키용구 9) 이륜자전거 10) 헬스기구 11) 휴대용 레이저용품 12) 승차용 운전모(승차용 눈 보호구를 포함한다) 13) 운동용 안전모 14) 온열팩(주머니난로를 포함한다) 15) 수유패드 16) 기름난로(연료소비량 600g/h 이하 제품으로 한정한다)
다. 기계금속	1) 빙삭기 2)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3) 삭제 <2019. 2. 8.>
라. 섬유	1) 등산용 로프 2) 스포츠용 구명복
마. 건축	1) 미끄럼 방지 타일

분 야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2) 실내용 바닥재

### ③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분 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가. 화학	폴리염화비닐관(연질염화비닐호스를 포함한다)
나. 생활	1)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에 한정한다) 2) 롤러스케이트 3) 바퀴 달린 운동화 4) 모터 달린 보드 5) 창문 블라인드 6) 쌍꺼풀용 테이프 7) 속눈썹 열 성형기 8) 가(假) 속눈썹(인조속눈썹) 9) 쇼핑카트 10) 휴대용 사다리 11) 인라인롤러스케이트 12) 키보드
다. 기계금속	자동차용 휴대용 잭
라. 섬유	대상 없음
마. 건축	물탱크

### ④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분 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가. 화학	1) 가죽제품 2) 합성수지제품
나. 생활	1)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은 제외한다) 2) 간이 빨래걸이 3) 선글라스 4) 안경테 5) 텐트 6) 고령자용 신발 7) 고령자용 지팡이 8)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9) 고령자용 목욕의자 10) 고령자 위치추적기 11) 물안경 12) 반사 안전조끼 13) 스테인리스 수세미 14)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15) 침대 매트리스 16) 우산 및 양산

	17) 휴대용 경보기 18) 접촉성 금속 장신구 19) 벽지 및 종이장판지(인테리어 필름을 포함한다)
다. 기계금속	대상 없음
라. 섬유	1) 가정용 섬유제품 2) 양탄자
마. 건축	대상 없음

⑤ 어린이보호포장대상 생활용품

분 야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가. 화학	대상 없음
나. 생활	대상 없음
다. 기계금속	대상 없음
라. 섬유	대상 없음
마. 건축	대상 없음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5)공산품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등의 표시 가. 표시의무자 -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업자 나. 표시대상 -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어린이제품 다. 표시방법(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별표 7), 제38조(별표 11) 및 제42조(별표 12) 관련) - 해당 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및 개별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 안전인증 등의 표시를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 ·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 등의 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어린이제품의 최소 포장마다 붙일 수 있음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 -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9조 및 제42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 안전과 (☎ 043-870-5457)

<첨부>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 목록

①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적용 안전기준
1.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안전기준
2. 어린이 놀이기구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기준
3.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안전기준

4. 어린이용 비비탄총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어린이용 비비탄총 안전기준
--------------	--------------------------------------

②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적용 안전기준
1. 유아용 섬유제품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2.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3.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보호 장구 및 안전모)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 안전기준
4.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안전기준
5. 아동용 이단침대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아동용 이단침대 안전기준
6. 완구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완구 안전기준
7. 유아용 삼륜차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유아용 삼륜차 안전기준
8. 유아용 의자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유아용 의자 안전기준
9. 어린이용 자전거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어린이용 자전거 안전기준
<삭제>	
11. 학용품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학용품 안전기준
12. 보행기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보행기 안전기준
13. 유모차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유모차 안전기준
14. 유아용 침대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유아용 침대 안전기준
15. 어린이용 온열팩 (주머니난로 포함)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어린이용 온열팩 안전기준
16. 유아용 캐리어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유아용 캐리어 안전기준
17.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안전기준

③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적용 안전기준
가. 어린이용 가죽제품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가죽제품 안전기준
나. 어린이용 면봉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면봉 안전기준
다. 어린이용 안경테(선글라스를 포함한다)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안경테 안전기준
라. 어린이용 물안경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물안경 안전기준
마.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안전기준
바.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바퀴 달린 운동화 안전기준
사.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안전기준
아. 어린이용 스키용구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스키 용구 안전기준
자. 어린이용 스노보드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스노보드 안전기준
차. 쇼핑카트 부속품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쇼핑카트 부속품 안전기준
카. 어린이용 장신구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장신구 안전기준
타. 어린이용 킥보드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킥보드 안전기준
파.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안전기준
하. 어린이용 가구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가구 안전기준
거. 아동용 섬유제품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2.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적용한다.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5) 공산품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 가. 표시의무자 -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나. 표시대상 -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가 포함된 어린이용품 다. 표시방법 - 판매하려는 최소 판매 단위마다 해당 재질별 환경유해인자 함유여부 및 함유량을 표시하여야 함 - 다만, 용품의 크기 및 특징 등에 의해 최소 판매단위마다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용품 포장에 표시할 수 있음 - 용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내용을 인쇄하거나 떨어지지 않게 부착하여야 함	- 환경보건법 제24조제10항 -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방법과 내용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232호)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199호)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54)
	<input type="checkbox"/> 건축자재 실내표지 부착 가. 표시의무자 - 건축자재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 나. 표시대상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확인(시험)을 받은 건축자재 다. 표시방법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 동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른 '실내' 표지도안 참조 - 건축자재의 표면에 실내표지를 직접 부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현장에서 직접 설치하는 건축자재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자재의 벌크 포장재 등에 표지를 붙일 수 있음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 제11조의6 -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9 및 별표 7	-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201-6798)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 효율관리기자재의 표시</p> <p>가. 적용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그 사용량에 있어서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다음의 기자재</li> </ul> <p>1) 전기냉장고, 2) 전기냉방기, 3) 전기세탁기, 4) 자동차, 5) 조명기기, 6) 삼상 유도전동기, 7)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효율향상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및 설비</p> <p>나. 표시의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li> </ul> <p>다.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의 소비 효율·사용량·소비효율등급등을 측정받아 그 결과를 당해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15조</li> <li>-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통상자원부</li> <li>- 에너지효율과 (☎044-203-5146)</li> </ul>
	<p>□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p> <p>가. 적용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시의 적용범위와 동일</li> </ul> <p>나. 광고의무 준수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li> </ul> <p>다. 광고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를 할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에 당해모델의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li> </ul> <p>(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p> <p>(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p> <p>(3)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15조</li> <li>-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통상자원부</li> <li>- 에너지효율과 (☎044-203-5146)</li> </ul>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5) 당해 효율관리기자재의 제품안내서 (6) 그 밖의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것		
	<input type="checkbox"/>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도 표시 가. 표시의무자 - 표시대상 자동차용 타이어를 제작·수입하는 자 나. 표시대상 자동차용 타이어 1) 승용자동차용 타이어 2) 승합자동차용 타이어 3) 화물자동차용 타이어 다. 표시내용 1) 저소음 등급 2) 소음도(dB) 라. 표시방법 - 자동차용 타이어가 제품으로 출고되어 해당 자동차에 장착되기 전까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타이어에 소음도 표시(시행규칙 별표14의4)	- 소음·진동관리법 제34조의2 -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서 제39조의5까지	-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201-6794)
	<input type="checkbox"/> 소음발생건설기계 소음도 표시 가. 표시의무자 - 표시대상 건설기계를 제작·수입하는 자 나. 표시대상 건설기계 1) 굴삭기(정격출력 19kW 이상 500kW 미만의 것으로 한정) 2) 다짐기계 3) 로더(정격출력 19kW 이상 500kW 미만의 것으로 한정) 4) 발전기(정격출력 400kW 미만의 실외용으로 한정) 5) 브레이크(휴대용을 포함, 중량5톤 이하로 한정) 6)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	- 소음·진동관리법 제44조 -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제59조	-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201-6794)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p> <p>7) 콘크리트 절단기 8) 천공기 9) 향타 및 항발기</p> <p>다. 표시내용</p> <p>1) 소음도(dB) 2) 제작사명 3) 기계명, 모델명 4) 검사일, 검사기관</p> <p>라. 표시방법</p> <p>- 기계별로 눈에 잘 띄고 작업으로 인한 훼손이 되지 않는 위치에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 (시행규칙 별표19)</p>		
	<p><input type="checkbox"/> 가전제품 저소음표시</p> <p>가. 표시 적용대상</p> <p>- 가전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자</p> <p>나. 표시대상</p> <p>1)진공청소기(정격출력 500와트이상의 이동형 또는 수직형 전기 진공청소기를 말한다) 2)세탁기(세탁용량이 5킬로그램 이상의 가정용 세탁기에 한정하며, 탈수 전용 또는 업소용 제품은 제외한다.)</p> <p>다. 표시내용</p> <p>1)저소음 등급 2)소음도(dB) 3)모델명 4)용량</p> <p>라. 표시방법</p> <p>- 눈에 잘 띄고 기계 작동으로 인한 훼손이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시행규칙 별표19의2)</p>	<p>- 소음·진동관리법 제44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p>	<p>-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201-6794)</p>
	<p><input type="checkbox"/>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의 표시·광고</p> <p>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임을 나타내는 표시·광고</p> <p>1) 표시·광고자</p>	<p>-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제34조의2 - 동법 시행규칙</p>	<p>-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87) 산업안전과</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검사에 합격한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li> <li>2) 표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기준에 맞는지 여부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합격한 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해서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해야 함</li> <li>- 합격표시는 검사를 수행한 정부위탁 안전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안전검사 합격 증명서를 대상 기계·기구 등에 부착·인쇄 등을 하는 방법으로 표시함</li> </ul> </li> </ul>	제73조의3	
(6) 화학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표시기준</li> <li>가. 표시의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li> </ul> </li> <li>나. 표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35개 품목)</li> </ul> </li> <li>다. 표시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품목</li> <li>2) 제품명</li> <li>3) 용도(표백제의 경우 계열을 함께 표시)</li> <li>4) 제형</li> <li>5) 제조연월</li> <li>6) 유통기한(해당 없는 제품 생략 가능)</li> <li>7) 중량·용량·매수·크기</li> <li>8) 어는점(자동차용 워셔액 및 부동액에 한함)</li> <li>9) 액성(세정제품 및 세탁제품에 한함)</li> <li>10) 표준사용량(해당 없는 제품 생략 가능)</li> <li>11) 효과·효능(승인 제품에 한함)</li> <li>12) 제조자, 주소, 연락처(국내 제조 제품에 한함)</li> <li>13) 판매자, 주소, 연락처[제조자개발생산(ODM)방식으로 국내 제조된 제품에 한함]</li> <li>14) 제조국명 및 제조회사(수입 제품에 한함)</li> <li>15) 수입자, 주소, 연락처(수입 제품에 한함)</li> <li>16) 어린이보호포장 대상/비대상 제품의 표시</li> </o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li> <li>- 동법 시행령 제7조</li> <li>- 동법 시행규칙 제7조</li> <li>- 관련고시</li> <li>· 안전확인대상생활 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기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부 화학제품 관리과 (☎ 044-201-6826)</li> </ul>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17)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p> <p>18) 신호어 및 그림문자</p> <p>19) 사용방법(해당 없는 제품 생략 가능)</p> <p>20) 사용상 주의사항</p> <p>21) 응급처치</p> <p>22) 안전기준확인 마크</p> <p>23)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 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승인번호</p> <p>* 16)~18), 22)의 경우 각각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p> <p>** 23)은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로 축약할 수 있음</p> <p>*** 제품별 특정 표시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별표5] 참조</p> <p>라. 표시방법</p> <p>1) 표시는 한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하는 경우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표시하여야 한다.</p> <p>2)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로 인쇄하거나 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표시사항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떨어질 우려가 없어야 한다.</p> <p>3)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연월 등 일부 표시사항의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4) 표시는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제품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다음 아래의 표시방법을 권장한다.</p> <p>① 시각장애인의 올바른 제품 사용을 위하여 품목, 제품명,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 등의 표시사항을 점자 등의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② 표시사항이 시각적으로 잘 보이고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사용상 주의사항, 응급처치 등의 표시사항을 그림기호로 표시</p> <p>③ 제품 내 별도의 첨부문서가 동봉된 경우 “동봉된 첨부문서를 확인하십시오.” 등의 안내문 표시</p> <p>④ 어린이의 삼킴 및 중독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살균·소독제품, 구제제품, 보존제품에 식품관련 도안 및 만화캐릭터 표시 자제</p> <p>5) 사용상 주의사항, 응급처치 등의 표시사항을 부록 1에 따른 그림기호로 나타낸 경우에는 해당 그림기호와 연계된 문구가 표시된 것으로 본다.</p> <p>* 표시위치, 활자크기, 표시사항별 표시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별표6] 참조</p>		
	<p>□ 살생물제품 표시기준</p> <p>가. 표시 의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li> </ul> <p>나. 표시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살생물제품</li> </ul> <p>다. 표시 사항</p> <p><b>[법 제27조]</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살생물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li> <li>2)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li> <li>3) 살생물제품의 사용에 따른 위험성 및 응급처치 방법</li> <li>4) 살생물제품의 유통기한 및 폐기방법</li> <li>5)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 있는 경우 나노물질의 명칭, 사용 목적 및 용도</li> </ol> <p><b>[시행규칙 제26조]</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및 살생물제품 유형</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제품안전법 제27조</li> <li>- 동법 시행규칙 제26조</li> <li>- 관련고시</li> <li>·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li> <li>(☎ 044-201-6827)</li> </ul>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2) 중량 또는 용량  3) 살생물제품의 승인번호  4) 살생물제품의 유해성  5)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  6) 살생물제품의 표준사용량,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7)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또는 중점관리물질의 명칭</p> <p><b>[고시 별표 1.]</b></p> <p>1) 제품명  2) 살생물제품유형  3) 유통기한  4) 중량·용량  5) 효과·효능  6) 사용대상자 및 사용범위  7) 표준사용량  8) 제조자, 주소, 연락처(국내 제조 제품에 한함)  9) 제조국명 및 제조회사(수입 제품에 한함)  10) 수입자, 주소, 연락처(수입 제품에 한함)  11) 어린이 보호포장의 표시(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에 한함)  12) 살생물물질  13) 나노 물질  14) 기타 화학물질  15) 제품 유해성·위험성  16) 사용 방법  17) 사용상 주의사항  18) 승인번호  19) 제조번호</p> <p>* 11), 15)의 경우 각각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p> <p>라. 표시 방법</p> <p>1) 한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하는 경우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로 인쇄하거나 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을</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사용하여야 하며, 표시사항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떨어질 우려가 없어야 한다.</p> <p>3)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표시사항의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4)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제품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다음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표시할 것을 권장한다.</p> <p>① 시각장애인의 올바른 제품 사용을 위하여 제품명, 살생물제품유형, 살생물제품 승인번호 등의 표시사항을 점자 등의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p> <p>② 제품 내 별도의 첨부문서가 동봉된 경우 “동봉된 첨부문서를 확인하십시오.” 등의 안내문 표시</p> <p>③ 어린이의 삼킴 및 중독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품에 식품관련 도안 및 만화캐릭터 표시 자제</p> <p>* 표시위치, 활자크기, 표시사항별 표시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별표1] 참조</p>		
	<p><input type="checkbox"/> 살생물처리제품 표시기준</p> <p>가. 표시 의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li> </ul> <p>나. 표시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살생물처리제품</li> </ul> <p>다. 표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살생물제품이 사용되었음을 알리는 문구</li> <li>2)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명칭 및 기능</li> <li>3)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함유된 경우 그 함유 사실</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제품안전법 제28조</li> <li>- 동법 시행규칙 제27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 044-201-6827)</li> </ul>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4)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위험성 및 취급 시 주의사항</p> <p>라. 표시 방법</p> <p>1) 한글로 표시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할 것</p> <p>2)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할 것 (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3) 지워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p> <p>4) 살생물처리제품을 살생물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p> <p><input type="checkbox"/> 표시·광고의 제한</p> <p>가. 대상자</p> <p>-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p> <p>나. 제한사항</p> <p>1)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의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p> <p>2)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문구를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제품의 광고에 포함시킬 것</p> <p>① 제품명 및 제품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p> <p>② 제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유하는 문구</p> <p>3) 제품승인등을 받은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이 아닌 제품을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임을 표시·광고하거나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p>	<p>- 화학제품안전법 제34조</p> <p>- 동법 시행규칙 제34조</p>	<p>-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 044-201-6807)</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7) 기타	<input type="checkbox"/> 농약의 표시 가. 표시의무자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나. 표시방법 -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사항을 표시 다. 표시내용 - '농약' 문자 - 품목등록번호 - 농약의 명칭 및 제제형태 - 유효성분의 일반명 및 함유량과 기타 성분의 함유량 - 포장단위 - 농작물별 적용병해충(제초제·생장조정제나 약효를 증진시키는 자재의 경우에는 적용 대상토지의 지목이나 해당 용도를 말함) 및 사용량 - 사용방법과 사용에 적합한 시기 - 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제한기준(그 기준이 설정된 농약에 한함) - 고독성·작물잔류성·토양잔류성·수질오염성 및 어독성 농약의 경우에는 그 문자와 경고 또는 주의사항 - 사람 및 가축에 위해한 농약의 경우에는 그 요지 및 해독방법 - 수서생물에 위해한 농약의 경우에는 그 요지 - 인화 또는 폭발 등의 위험성이 있는 농약의 경우에는 그 요지 및 특별취급방법 - 저장·보관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 상호 및 소재지(수입농약의 경우에는 수입업자의 상호 및 소재지와 제조국가 및 제조자의 상호를 말함) - 농약제조시 제품의 균일성이 인정되도록 구성한 모집단의 일련번호 - 약효보증기간 - 작용기작그룹 - 독성 및 행위강제의 표시 그림문자 설명 - 해독 및 응급처치 요령	- 농약관리법제 20조 -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 044-201-1894)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 063-238-0825)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 농약의 광고</p> <p>가. 광고의무 준수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li> </ul> <p>나. 광고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약의 광고를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그 광고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함</li> <li>· 농약의 명칭</li> <li>· 안전사용기준의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 (라디오 및 텔레비전 광고의 경우에는 생략 가능)</li> <li>- 광고에 농약의 품질·제조방법 또는 약효에 관한 문헌을 이용할 때에는 농업관련 학회나 법 제17조의4의 시험연구기관에서 발행한 문헌을 이용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약관리법 제22조</li> <li>- 동법 시행규칙 제24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 044-201-1894)</li> <li>-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 063-238-0825)</li> </ul>
	<p>□ 담배성분의 표시</p> <p>1) 표시의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li> </ul> <p>2) 표시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배 갑포장지의 양 옆면중 한 면</li> <li>- 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li> <li>-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잡지 광고</li> </ul> <p>3) 표시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 (타르 및 니코틴)</li> </ul> <p>4)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별표5 참조</li> </ul> <p>가) 타르와 니코틴은 각각 한글로 표기하고, 그 함유량에 대하여는 타르는 소수점 1자리, 니코틴은 소수점 2자리까지 각각 밀리그램 단위로 표기하여야 함</p> <p>&lt;&lt;예시&gt;&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르 0.0mg</li> <li>- 니코틴 0.00mg</li> </ul> <p>나) 2개 이상의 품목의 명칭 또는 형태가 나타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품목별로 담배성분을 표기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배사업법 제25조의2</li> <li>-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9조의3</li> <li>-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044-215-5176)</li> </ul>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다) 개별 품목의 명칭 또는 형태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광고하려는 품목들 중 1개 품목 이상의 담배성분을 표기하여야 함.</p> <p>라) 표시의 크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배의 갑포장지의 경우에는 포장지의 옆쪽 넓이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함.</li> <li>- 잡지를 이용하는 광고의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함(시행규칙 제16조의2 별표5 2.나. 표 참조).</li> <li>- 스티커 또는 포스터의 경우에는 광고물의 크기에 따라 위 잡지광고에서 정한 광고면적에 대한 표시의 크기에 비례하여 소비자에게 명확히 잘 보일 수 있는 크기로 함</li> </ul> <p>마) 성분표시의 색상은 담배 갑포장지 등의 도안의 색상과 보색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하여야 함</p> <p>바) 글자체 : 고딕체</p> <p>사) 담배의 갑포장지의 경우에는 그 양 옆쪽 중 한쪽에 표시하여야 함.</p> <p>아) 잡지·스티커 또는 포스터의 경우에는 각 광고면 하단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함</p>		
	<p><input type="checkbox"/> 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p> <p>1) 표시금지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li> </ul> <p>2) 표시금지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배의 포장 및 광고</li> </ul> <p>3) 표시금지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여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용어·문구·상표·형상 또는 그 밖의 표시(오도문구 등)를 담배포장 및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15.1.22일부터 표시금지)</li> </ul>	<p>- 담배사업법 제25조의5</p>	<p>-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044-215-5176)</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input type="checkbox"/> 특수용담배의 표시 1) 표시의무자 - 제조업자 2) 표시대상 - 담배 갑포장지 3) 표시내용 - 특수용담배에 대한 “면세용, Duty Free” 4) 표시방법 - 담배갑포장지에 가로 1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의 사각형 안에 “면세용, Duty Free”라고 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배사업법 제19조</li> <li>- 동법 시행령 제7조</li> <li>- 동법 시행규칙 제13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044-215-5176)</li> </ul>
	<input type="checkbox"/> 담배, 주류의 경고 표시·광고 가. 담배 1) 표시·광고의무자 -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 2) 표시·광고대상 - 담배갑포장지 앞·뒷면·옆면 - 법 제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 전시 또는 부착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에 의한 광고 - 법 제9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잡지에 게재하는 광고 3) 표시·광고 방법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등의 표기방법’에 의함 4) 표시내용 -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 담배에 포함된 발암성물질 6종(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li> <li>- 동법 시행령 제16조</li> <li>- 동법 시행규칙 제7조</li> <li>- 담배사업법 제25조</li> <li>-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li> <li>-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6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202-2822)</li> <li>-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044-215-5176)</li> </ul>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p> <p>나. 주류</p> <p>1) 표시·광고 의무자</p> <p>- 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p> <p>2) 표시·광고 대상</p> <p>- 국내에 판매되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중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p> <p>3) 표시·광고 방법</p> <p>4) 표시방법 :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참고</p> <p>1. 표기방법</p> <p>- 경고문구는 사각형의 선안에 한글로 “경고 : ”라고 표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고문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하여야 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lt;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과음경고문구&gt;</p> <p>○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p> <p>○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임신 중의 음주는 기형아 출생률을 높입니다.</p> <p>○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p> </div> <p>2. 글자의 크기 등</p> <p>가. 경고문구는 판매용 용기에 부착되거나 새겨진 상표 또는 경고문구가 표시된 스티커에 상표면적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p> <p>나. 글자의 크기는 상표에 사용된 활자의 크기로 하되, 그 최소크기는 다음과 같다.</p> <p>(1) 용기의 용량이 300밀리리터 미만의 경우: 7포인트 이상</p> <p>(2) 용기의 용량이 300밀리리터 이상의 경우: 9포인트 이상</p> <p>3. 색상 : 경고문구의 색상은 상표도안의 색상과</p>	<p>-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p> <p>- 동법 시행령 제13조</p> <p>-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p>	<p>-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044-202-2861)</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보색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하여야 한다.</p> <p>4. 글자체 : 고딕체</p> <p>5. 표시위치 : 상표에 표기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하단에 표기하여야 하며, 스티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밑의 잘 보이는 곳에 표기하여야 한다.</p>		
	<p><input type="checkbox"/> 비료의 보증표시</p> <p>가. 표시의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료업자 : 비료생산업자, 비료수입업자</li> </ul> <p>나. 표시장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li> </ul> <p>다. 표시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등의 보증표시</li> </ul> <p>라. 표시방법</p> <p>1)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유통 또는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등을 기재한 보증표를 교부함으로써 보증표시에 갈음할 수 있음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신고 필요)</p> <p>2)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는 비료를 생산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의 외부에 비료생산업자보증표 또는 비료수입업자보증표를 붙여야 함</p> <p>* 비료생산업자보증표 : 동법시행규칙 제 14조 별지 제18호 서식 비료수입업자보증표 : 동법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료관리법 제14조</li> <li>- 동법 시행규칙 제14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 044-201-1893)</li> </ul>
	<p><input type="checkbox"/> 사료의 표시</p> <p>가. 표시의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료관리법 제13조</li> <li>- 동법 시행규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044-201-2360)</li> </ul>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나. 표시대상 - 사료의 용기나 포장</p> <p>다.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p> <p>1) 배합사료</p> <p>가) 표시사항</p> <p>* "배합사료"란 함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p> <p>(1) 사료의 성분등록번호</p> <p>(2) 사료의 명칭 및 사료의 형태</p> <p>(3) 등록성분량</p> <p>(4) 사용한 원료의 명칭</p> <p>(5) 동물용의약품 첨가내용</p> <p>(6) 주의사항</p> <p>(7) 사료의 용도</p> <p>(8) 실중량 kg(톤)</p> <p>(9) 제조(수입)연월일 및 유통기간 및 유통기한</p> <p>(10) 제조(수입)업자의 상호(공장명칭)·주소 및 전화번호</p> <p>(11) 재포장 내용</p> <p>(12) 사료공정에서 정하는 사항, 사료의 절감·품질관리 및 유통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p> <p>나) 표시방법</p> <p>(1) 사료의 명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배합사료의 명칭을 사용할 것</p> <p>(2) 사료의 형태는 사료내용물이 처리된 형태를 표시한다.</p> <p>(가) 종류</p> <p>① 가루 : 곱게 가루로 만든 것</p> <p>② 펠렛 : 가루사료를 일종의 주형틀에서 압착하거나 밀어내어 성형시킨 것</p> <p>③ 크럼블 : 펠렛으로 성형한 사료를 특정 목적에 맞게 분쇄·선별한 것</p>	<p>제14조 별표4</p> <p>- 관련고시</p> <p>·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p> <p>제10조, 별표15</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④ 후레이크 : 사료를 그대로 또는 증기로 찌서 납작하게 압편한 것</p> <p>⑤ 익스투루전(팽화) : 압력 및 온도를 가하여 전분을 호화한 후 부피를 팽창시킨 것</p> <p>⑥ 액상 : 용액으로 된 것</p> <p>⑦ 그 밖의 형태 : 형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것은 그 형태에 적합하도록 표시</p> <p>(나) 표시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료의 형태 : 펠렛사료</li> <li>- 등록성분량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성분등록된 성분명과 성분량을 표시하며, 성분량 표시는 백분율(%)로 하고, 최저량에는 "이상", 최대량에는 "이하"를 표시</li> <li>- 사용한 원료의 명칭은 배합비율이 큰 순위대로 적는다. 다만, 식물성의 곡류, 강피류 및 박류는 사용한 원료의 명칭을 쓰지 아니하고 곡류·강피류·박류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하며, 첨가한 단미사료중 광물성과 보조사료는 품명을 적고, 다음 내용을 덧붙일 수 있다. "위 사용 원료는 공장사정에 따라 배합비율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동물용의약품 첨가내용은 첨가한 동물용의약품의 명칭(상품명은 괄호 안에 적을 수 있음)과 사용된 함량과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적고, 붉은색글씨 또는 눈에 잘 보이도록 "동물용의약품첨가사료"로 표시하며, 휴약기간이 있는 동물용의약품일 경우에는 그 휴약기간을 명시한다.</li> <li>- 주의사항은 사료의 사용과 보관, 다른 사료와의 혼합 금지 등에 관하여 필요</li> </ul>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한 사항을 보증성분표 하단에</p> <p>(주의): 형태로 붉은색글씨 또는 눈에 잘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하고,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동물성사료 또는 남은 음식물사료가 포함된 배합사료는 "반추가축에게 먹이지 마십시오"를 표시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료의 용도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수요자가 혼란을 줄 정도로 사료의 명칭에 비하여 제품의 상품명을 과대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li> <li>- 실중량은 제품의 실제 중량을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단위는 포장크기에 따라 "kg" 또는 "톤"으로 표시함</li> <li>- 제조(수입) 연월일과 유통기간은 제조(수입)포장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정확하게 표시한다.</li> <li>- 재포장 내용은 재포장 사유·날짜·중량, 재포장한 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를 표시하고, 그 외의 보증 성분의 함량 등은 재포장전에 표시된 대로 표시하여야 하며, 재포장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계약한 자만 할 수 있음</li> </ul> <p>2) 보조사료 및 단미사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미사료"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li> <li>-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li> </ul> <p>가) 표시사항</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1) 사료의 성분등록번호</p> <p>(2) 사료의 명칭 및 형태</p> <p>(3) 등록성분량</p> <p>(4) 사용한 원료의 명칭</p> <p>(5) 사료의 용도</p> <p>(6) 주의사항</p> <p>(7) 실제 중량 kg(톤)</p> <p>(8) 제조(수입) 연월일과 유통기간 및 유통기한</p> <p>(9) 제조(수입)업자의 상호(공장명칭)·주소 및 전화번호</p> <p>(10) 재포장 내용</p> <p>(11) 사료공정에서 정하는 사항, 사료의 절감·품질관리 및 유통개선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p> <p>나) 표시방법</p> <p>(1) 사료의 명칭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 거래상의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괄호 안에 표시할 수 있다</p> <p>(2) 사용한 원료의 명칭은 사용비율이 큰 순서대로 명칭을 적는다</p> <p>(3) 사료의 용도는 정확하게 표시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p> <p>(4) 주의사항은 사료의 사용과 보관, 다른 사료와의 혼합금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증성분표 하단에 그 내용을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주의):</span> 형태로 붉은색글씨 또는 눈에 잘 보이도록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추동물을 원료로 한 동물성사료 또는 남은음식물 사료는 "반추가축 사료로 사용금지 또는 반추가축에게 먹이지 마십시오."라고, 돼지전용 남은 음식물 사료(80℃에</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서 30분이상 가열)는 "돼지 외에는 먹이지 마십시오."라고 각각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p> <p>(5) 사료의 형태, 등록성분량, 사료의 용도, 실제 중량, 제조(수입) 연월일 및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재포장 내용은 배합사료의 표시방법과 같다.</p> <p>3) 사료의 기타 표시사항</p> <p>가) 용어의 정의</p> <p>(1) "제조연월일"이라 함은 포장을 제외하여 더 이상의 제조가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포장 후 멸균 및 살균 등과 같이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치는 사료는 최종공정을 마친 시점)을 말한다. 다만, 소분판매하는 사료는 소분용 원 사료의 제조연월일로, 원 사료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처리만을 하는 사료는 원 사료의 포장시점으로 한다.</p> <p>(2)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이라 함은 사료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예시 : 제조일로부터 3월까지) 및 기한(예시 : 2016.12.31까지)을 말한다.</p> <p>(3) "품질유지기한"이라 함은 사료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사료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p> <p>(4) "주표시면"이라 함은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사료를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을 말한다.</p> <p>나) 표시방법</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1) 표시는 한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자나 외국어는 한글 표시의 활자보다 크게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입되는 사료와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 의무표시대상이 아닌 제품의 상품명(이하 "제품명"이라 한다), 사료종류 등은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표시활자보다 크게 표시 할 수 있다.</p> <p>(2) 표시는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된 최소판매 단위 제품의 주표시면 면적이 30cm<sup>2</sup> 이하이고 여러 개의 최소판매 단위 제품이 하나의 용기·포장으로 진열·판매할 수 있도록 포장된 경우에는 그 용기·포장에 대신 표시 할 수 있다.</p> <p>(3) 최소 판매단위 포장 안에 내용물을 2 개 이상으로 나누어 개별포장(이하 "내포장"이라 한다)한 사료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포장별로 사료의 명칭, 등록성분량, 중량,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등을 표시할 수 있다.</p> <p>(4)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로 인쇄하거나 각인(刻印) 또는 소인(消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벌크사료 운반차량 및 탱크로리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차 내부에 비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세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이 인쇄 또는 기재된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하게 부착하여야 한다.</p> <p>① 제품포장의 특성상 인쇄, 각인 또는 소인 등으로 표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톤백포장, 드럼통, 컨테이너, 합성수지제 용기 등)</p> <p>② 통·병조립 및 병제품 등의 경우. 다만, 제조(수입)연월일은 제외한다.</p> <p>③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고 사료 제조업자의 제품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료용 제품의 경우. 다만, 제조(수입)연월일은 제외한다.</p> <p>④ 아무런 표시가 없는 포장재의 경우. 다만, 제조(수입)연월일은 제외한다.</p> <p>⑤ 제조업등록 및 성분등록 한 내용이 변경되어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이 수리된 경우와 단순 표시 오류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표시사항이 인쇄 또는 기재된 스티커 및 라벨 등을 사용하여 변경사항만을 변경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이란 표시내용의 오·탈자, 등록성분의 단위, 사료의 용도 및 형태의 누락, 주의사항 및 재포장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다만,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명칭, 등록성분량, 동물용의약품 첨가 내용, 중량, 제조(수입)연월일,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의 표시는 변경처리 할 수 없다.</p> <p>⑥ 제3호아목에 따라 조사처리 관련 문구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p> <p>⑦ 소량 생산하는 제품 등 특성상 공통된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 다</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만, 제조(수입)연월일은 제외한다.</p> <p>(5)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주표시면, 일괄표시면(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모아서 표시하는 면을 말한다) 및 기타표시면(주표시면과 일괄표시면 등을 포함한 모든 표시면을 말한다)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제조(수입)연월일,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등 일부 표시사항의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인 또는 압인(壓印) 등을 사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① 표시장소별 표시사항 및 활자크기</p> <table border="1" data-bbox="403 1093 967 1794"> <thead> <tr> <th data-bbox="403 1093 488 1167">표시 장소</th> <th data-bbox="488 1093 852 1167">표시사항</th> <th data-bbox="852 1093 967 1167">활자크기 (포인트)</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03 1167 488 1585" rowspan="8">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td> <td data-bbox="488 1167 852 1205">① 성분등록번호</td> <td data-bbox="852 1167 967 1205"></td> </tr> <tr> <td data-bbox="488 1205 852 1243">② 사료의 명칭 및 형태</td> <td data-bbox="852 1205 967 1243">8 이상</td> </tr> <tr> <td data-bbox="488 1243 852 1281">③ 등록성분량</td> <td data-bbox="852 1243 967 1281">8 이상</td> </tr> <tr> <td data-bbox="488 1281 852 1319">④ 사용한 원료의 명칭</td> <td data-bbox="852 1281 967 1319">7 이상</td> </tr> <tr> <td data-bbox="488 1319 852 1417">⑤ 동물용의약품 첨가내용(배합사료에 한함)</td> <td data-bbox="852 1319 967 1417">7 이상</td> </tr> <tr> <td data-bbox="488 1417 852 1456">⑥ 사료의 용도</td> <td data-bbox="852 1417 967 1456">8 이상</td> </tr> <tr> <td data-bbox="488 1456 852 1494">⑦ 실제 중량</td> <td data-bbox="852 1456 967 1494">12 이상</td> </tr> <tr> <td data-bbox="488 1494 852 1585">⑧ 제조(수입)연월일 및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td> <td data-bbox="852 1494 967 1585">10 이상</td> </tr> <tr> <td data-bbox="403 1585 488 1794" rowspan="4">기타 표시면</td> <td data-bbox="488 1585 852 1624">① 주의사항</td> <td data-bbox="852 1585 967 1624">10 이상</td> </tr> <tr> <td data-bbox="488 1624 852 1702">② 제조(수입)업자의 상호(공장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td> <td data-bbox="852 1624 967 1702">8 이상</td> </tr> <tr> <td data-bbox="488 1702 852 1740">③ 재포장 내용</td> <td data-bbox="852 1702 967 1740">10 이상</td> </tr> <tr> <td data-bbox="488 1740 852 1794">④ 기타사항</td> <td data-bbox="852 1740 967 1794">6 이상</td> </tr> </tbody> </table> <p>② 포장면적이 200cm<sup>2</sup> 이하인 제품의 경우 1)의 표시사항에서 규정한 활자크기보다 2포인트 작게 표시할 수 있다.</p>	표시 장소	표시사항	활자크기 (포인트)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	① 성분등록번호		② 사료의 명칭 및 형태	8 이상	③ 등록성분량	8 이상	④ 사용한 원료의 명칭	7 이상	⑤ 동물용의약품 첨가내용(배합사료에 한함)	7 이상	⑥ 사료의 용도	8 이상	⑦ 실제 중량	12 이상	⑧ 제조(수입)연월일 및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10 이상	기타 표시면	① 주의사항	10 이상	② 제조(수입)업자의 상호(공장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8 이상	③ 재포장 내용	10 이상	④ 기타사항	6 이상		
표시 장소	표시사항	활자크기 (포인트)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	① 성분등록번호																															
	② 사료의 명칭 및 형태	8 이상																														
	③ 등록성분량	8 이상																														
	④ 사용한 원료의 명칭	7 이상																														
	⑤ 동물용의약품 첨가내용(배합사료에 한함)	7 이상																														
	⑥ 사료의 용도	8 이상																														
	⑦ 실제 중량	12 이상																														
	⑧ 제조(수입)연월일 및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10 이상																														
기타 표시면	① 주의사항	10 이상																														
	② 제조(수입)업자의 상호(공장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8 이상																														
	③ 재포장 내용	10 이상																														
	④ 기타사항	6 이상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③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내포장한 제품의 표시사항 및 활자크기는 1)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p> <p>④ 사료의 명칭과 제품명을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에 의무 표시사항과 함께 표시할 경우에는 의무표시사항은 제품명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별도 구분없이 표시할 경우에는 규칙 별표 4 제1호나목7)에 따라 제품명을 사료의 명칭에 비하여 크게 표시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그 밖의 동물·어류용 배합사료와 애완동물용 사료,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고 사료 제조업자의 제품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료용 제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⑤ 사료의 형태 중 규칙 별표 4 제1호나목2)가)(7)의 그 밖의 형태는 개껌, 젤, 과립, 도넛, 바, 박편, 베일, 생물, 스틱, 시럽, 액상고형, 육포, 젤리, 종실, 칩, 캡슐, 쿠키, 큐브, 페이스트상, 편상, 환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p> <p>⑥ 사료의 용도는 아래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p> <p>㉠ 단미·보조사료는 사료원료용, 양축농가용, 양어농가용, 실험동물용, 애완동물용, 사육하는 동물용, 관상용수산동물용, 양식용수산동물용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을 병행하여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p> <p>㉡ 단미·보조사료 중 사료원료용 이외의 용도는 “성장단계 + 동물명”, “성장단계”, “동물명”, “동물종류”로 용도를 표시할 수도 있다.</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㉔ 배합사료는 별표 13에 따른 사용범위를 용도로 표시하거나, 나)를 준용하여 동물명 및 성장단계별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p> <p>(6) 용기나 포장은 다른 제조업자의 표시 및 다른 제품의 표시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료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용기로서 일반시중에 유통 판매할 목적이 아닌 다른 회사의 사료원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사용되는 유리병(같은 사료유형 또는 유사한 사료명칭으로 사용한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7) &lt;삭제&gt;</p> <p>(8) 제조업자의 상호(공장 명칭) 및 주소는 사료성분등록증에 기재된 업체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의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다.</p> <p>(9) 사료를 소분하여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원래 표시 사항을 그대로 표시하여야 하며, 재포장한 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도 표시하여야 하여야 한다. 재포장한 자의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다.</p> <p>(10) 수입사료에 대한 표시방법</p> <p>① 수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료의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고, 한글이 인쇄된 스티커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원래의 용기·포장에 표시된 제품명, 원료명, 수입연월일(또는 제조연월일),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등 일자표시에 관한 사항 등 주요 표시사항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용기·포장으로 포장하여 수입되는 사료의 경우에는 라목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시사항을 스티커 등으로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수입업자의 상호 및 주소는 사료성분등록증에 기재된 업체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고, 수입신고한 해당 사료의 수출국명과 제조회사명을 병행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국명과 제조회사명이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으면 한글로 따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한글표시 스티커 등에 당해 제품수출국의 언어로 표시할 수 있다.</p> <p>③ 자가제조용으로 수입하는 사료의 원료인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회사명과 수입연월일(또는 제조연월일)·유통기간 또는 품질유지기한만을 표시할 수 있고, 그 사료에 영어 또는 수출국의 언어 등으로 표시된 경우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p> <p>④ 수입되는 사료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p> <p>㉠ 용기·포장에 넣어지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p> <p>㉡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사료 및 사료원료. 다만, 같은</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관광사업용으로 수입되는 것은 제외한다.</p> <p>⑤ 수입연월일은 수출국의 제조연월일이 표시된 경우 생략할 수 있다.</p> <p>⑥ 외국의 인증마크 중 국내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HACCP 사료공장, 유기농, 친환경 등)은 표시할 수 없다.</p> <p>⑦ 수출국의 등록성분 표시사항이 사료 성분등록증의 성분량과 비교하여 「사료검사기준」 별표 4의 허용오차를 벗어난 경우에는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가려야 한다.</p> <p>(11)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p> <p>①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은 제조일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정보표시면에 일괄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의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p> <p>② 수입되는 사료인 경우 수출국의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표시순서가 위의 1) 표시순서와 다를 때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년, 월, 일의 표시순서를 예시하여야 하며, “연월일”만 표시되었을 경우에는 “연월일” 중 “일”의 표시는 제품의 표시된 해당 “월”의 1일로 표시하여야 한다.</p> <p>③ 유통기간의 표시는 유통기간이 1월 이내이면 "제조일로부터 ○○일까지", 유통기간이 12월 미만이면 "제조일로부터 ○○월까지", 유통기간이 1년 이상이면 "제조일로부터 ○○월까지 또는 ○○년까지"로 표시하여</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야 하며, 유통기한의 표시는 "○○년 ○○월○○일까지" 또는 "○○.○○.○○까지", "○○○○년○○월○○일까지" 또는 "○○○○.○○.○○까지" 로 표시하여야 한다.</p> <p>④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제품을 함께 포장하였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짧은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하나만을 표시하여야 한다.</p> <p>⑤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해당 제품의 사용 또는 보존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냉동 또는 냉장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제품은 「냉동보관」 또는 「냉장보관」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p> <p>(12) 실제 중량(내용량)</p> <p>① 실제 중량(내용량)은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용량 또는 개수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물이 고체 또는 반고체일 경우 중량(톤·kg·g 등)으로, 액체일 경우 용량(kl·l·ml 등)으로, 고체와 액체의 혼합물일 경우 중량 또는 용량으로 표시하고, 개수로 표시할 때에는 중량 또는 용량을 괄호 속에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p> <p>② 급여 전에 버리게 되는 액체(제품의 특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액체 제외)와 함께 포장되는 사료는 액체를 뺀 사료의 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p> <p>③ 정제형태로 제조된 제품의 경우에는</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판매되는 한 용기·포장내의 정제수와 총중량을, 캡슐형태로 제조된 제품의 경우에는 캡슐수와 피포제 중량을 제외한 내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포제의 중량은 내용물을 포함한 캡슐 전체 중량의 50% 미만이어야 한다.</p> <p>(13) 살균제품 또는 멸균제품은 "살균제품", "멸균제품"으로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별표 9 사료의 멸균 및 살균처리 기준 참고)</p> <p>(14)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사료명칭, 유통기간 등의 표시사항을 알기 쉬운 장소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자표시는 스티커 등을 이용할 수 있다.</p> <p>(15) 품질유지기한</p> <p>① 소비자의 올바른 사료사용을 위하여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통조림 형태로 되어 있는 사료는 품질유지기한을 가급적 표시하여야 한다.</p> <p>② 품질유지기한은 “○○년○○월○○일”, “○○.○○.○○”, “○○○○년○○월○○일” 또는 “○○○○.○○.○○”로 표시하여야 하고, 그 밖의 표시사항은 (11) ①부터 ⑤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p> <p>③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는 사료는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p> <p>④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과 함께 표시하는 품질유지기한 표시는 스티커 등을 이용할 수 있다.</p> <p>(16)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견분품이</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나 비매품 등)는 사료의 명칭, 제조(수입)업자의 상호, 유통기간, 주의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p> <p>(17) &lt;삭제&gt;</p> <p>(18) 제조연월일(이하 “제조일”로 표시할 수 있다)</p> <p>① 제조일은 “○○년○○월○○일”, “○○.○○.○○”, “○○○○년○○월○○일”, “○○○○.○○.○○” 또는 “유통기한으로부터 ○○월 전 제조”로 표시하여야 하고, 정보표시면에 일괄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제조일의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p> <p>② 수입되는 사료에 표시된 수출국의 제조일의 “연월일”의 표시순서가 1)의 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연월일”의 표시순서를 예시하여야 하며, “연월”만 표시되었을 경우에는 “연월일” 중 “일”의 표시는 제품의 표시된 해당 “월”의 1일로 표시하여야 한다.</p> <p>③ 제조일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제품을 함께 포장하였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빠른 제조일 하나만을 표시하여야 한다.</p> <p>(19) 등록성분의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별표 13의2 제3호 참조, 권고기준)</p> <p>① 최저량(이상)에 해당하는 등록성분의 실제측정 값은 가급적 표시량의 120% 미만이어야 한다.</p> <p>② 최고량(이하)에 해당하는 등록성분의 실제측정 값은 가급적 표시량의 80% 이상이어야 한다.</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③ ①과 ②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칙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등록 성분량은 “최저량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측정값은 표시 값 이상이어야 하고, 등록 성분량이 “최대량 이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시 값 이하이어야 한다.</p> <p>④ 실제 측정값이 ③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 양이 「사료검사기준」 별표 4의 허용 오차에서 인정하는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표시량을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p> <p>(20) 사용한 원료의 명칭 및 함량</p> <p>① 사료의 제조 시 사용한 모든 원료의 명칭(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정제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량비율로서 2% 미만인 경우에는 함량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표시할 수 있다.</p> <p>② 프리믹스배합사료 및 각종 합제류 등의 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사료의 명칭과 함께 괄호안에 대표 성분 2 ~ 3가지를 표시할 수 있다.</p> <p>③ 단미사료(광물성사료에 한한다)·보조사료·식품첨가물(이하 “보조사료 등”이라 한다)에 대한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p> <p>㉠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표 4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료를 제조 시에 직접 사용·첨가하는 보조사료등은 그 명칭과 용도(합성감미료, 합성착색제(또는 합성착색료), 합성보존제(또는 합성보존료), 산화방지제, 표백</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제, 합성살균제, 발색제, 향미증진제)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예시 : 삭카린나트륨(합성감미료) 등]</p> <p>㉑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표 5에 해당하는 보조사료등의 경우에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또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서 고시한 명칭이나 같은 표에서 규정한 간략명(결정섬유소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p> <p>㉒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표 6에 해당하는 보조사료등의 경우에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또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서 고시한 명칭이나 같은 표에서 규정한 간략명 또는 주용도(중복된 사용 목적을 가질 경우에는 주요 목적을 주용도로 한다.)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표 6에서 규정한 주용도(산도조절제, 영양강화제, 유화제, 증점제, 합성착향료, 피막제, 향미증진제, 효소제제 등)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고시한 명칭 또는 간략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p> <p>④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부터 3)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p> <p>㉓ 유지류는 “유지류 명칭” 또는 “동물성 유지, 식물성 유지(올리브유 제외)”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수소첨가로 경화된 식용유지에 대하여는 경화유 또는 부분경화유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예시 : 식물성유지(부분경화유) 또는 대두부분경화유 등]</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㉔ 전분은 “전분명(OO전분)” 또는 “전분” 으로 표시할 수 있다.</p> <p>㉕ 단미사료(동·식물성에 한 한다)에 해당하는 원재료 중 개별 원재료의 중량비율이 2%미만인 경우에는 사료종류 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제1. 3. 식품원재료 분류 1), 2)에서 정한 분류명칭으로 표시할 수 있다.</p> <p>㉖ 당해 제품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나 사료의 원료에서 이행(carry-over)된 보조사료등이 당해 제품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양보다 적게 함유된 경우에는 그 보조사료등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㉗ 사료의 가공과정 중 첨가되어 최종 제품에 제거되는 보조사료등의 경우에는 그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㉘ 주표시면의 면적이 30cm<sup>2</sup> 이하인 것은 정제수를 제외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만을 표시할 수 있다.</p> <p>㉙ 천연착향료를 사용한 경우 “천연착향료” 또는 구체적인 명칭으로,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경우 “합성착향료와 그 향의 명칭”으로 표시[예시 : 합성착향료(○○향)]할 수 있다.</p> <p>(21) 강조 표시기준</p> <p>① "천연"의 표시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천연첨가물의 경우에는 표시가 가능하며, 합성결착제·인공(조합)향·합성착색제·합성보존제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첨가되는 합성성분이 제품내에</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시가 가능하다.</p> <p>② "100%"의 표시는 표시대상 원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물질도 첨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농축액을 희석하여 원상태로 환원하여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환원된 표시대상 원재료의 농도가 100%이상이면 제품내에 보조사료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100%의 표시를 할 수 있다.</p> <p>③ 밀, 호밀, 보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사료는 무글루텐(Gluten Free)의 표시를 할 수 있다.</p> <p>④ “저”, “무”, “고(또는 풍부)” 또는 “함유(또는 급원)” 용어의 강조표시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9조 및 별지 1의 규정을 준용하여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제조과정을 통하여 해당 영양소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p> <p>⑤ “덜”, “더”, “감소 또는 라이트”, “강화”, “첨가” 용어 사용</p> <p>㉠ 영양소 함량의 차이를 다른 제품의 표준 값과 비교하여 백분율 또는 절대 값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제품의 표준 값은 동일한 사료명칭 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3개 이상의 사료를 대상으로 산출하여야 한다.</p> <p>㉡ 영양소의 함량의 차이가 다른 제품의 표준값과 비교하여 조단백질, 조</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지방, 조식유, 조회분, 아미노산, 열량, 탄수화물, 당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의 경우는 최소 25%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하고, 나트륨을 제외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표 2] 영양소 기준치표에서 정한 비타민 및 무기질의 경우는 최소 1일 권장량의 10%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p> <p>㉔ ㉔에 해당하는 제품 중 “덜, 라이트, 감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양성분의 함량차이의 절대 값이 4)의 규정에 의한 “저”의 기준 값보다 커야 하고, “더, 강화, 첨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양성분의 함량차이의 절대 값이 4)의 규정에 의한 “함유”의 기준 값보다 커야 한다.</p> <p>⑥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 금지</p> <p>㉔ 영양소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제조의 과정을 하지 아니한 원래의 사료에 해당 영양소 함량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영양소에 대한 강조 표시 금지</p> <p>㉔ 합성착향료를 사용하여 원재료의 향 또는 맛을 내는 경우 그 향 또는 맛을 뜻하는 그림, 사진 등의 표시 금지. 다만, 아래 예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 가능 (예시) 원재료로 사과과즙과 착향료를 함께 사용한 경우에는 사과 그림 등을 표시 가능</p> <p>㉔ “이온수”, “생명수”, “약수”, “무방부제” 등의 용어 표시 금지</p> <p>㉔ “무 보존제(또는 무 보존료)”, “보존</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제 무첨가(또는 보존료 무첨가)”, “무 착색제(또는 무 색소)” 등의 표시 금지. 다만, 보존제와 착색제를 직접 첨가하지 않고, 원재료로부터 이행(carry-over)된 보존제와 착색제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표시 가능</p> <p>⑦ 특정균 등의 함유사실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균 등의 함유균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p> <p>(22) 수출사료에 대하여는 수입국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p> <p>(23) 제품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제의 용기 또는 포장지에 대한 포장재질 표시</p> <p>① 합성수지제의 재질에 따라 염화비닐수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폴리염화비닐리덴,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페놀수지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p> <p>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염화비닐수지(PVC)가 표시되어 있으면 별도 재질표시 생략 가능</p> <p>(24) 냉동 사료의 표시사항</p> <p>① 냉동 사료는 유형에 따라 가열하지 않고 급여하는 냉동 사료는 “가열하지 않고 급여하는 냉동 사료”로, 가열하여 급여하는 냉동 사료는 “가열하여 급여하는 냉동 사료”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p> <p>② “가열하여 급여하는 냉동 사료”의 경우 살균한 제품은 “살균제품”, 발효제품 또는 미생물제 첨가제품은</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효모 또는 균수 등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p> <p>③ 냉동 사료는 해당 사료의 냉동보관 방법 및 조리시의 해동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p> <p>④ 조리 또는 가열처리가 필요한 냉동 사료는 그 조리 또는 가열처리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p> <p>⑤ 원재료의 전부가 식육 또는 농산물인 것으로 오인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육 또는 농산물의 함량을 제품명과 같은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제조업체가 냉동 사료를 해동하여 출고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연월일, 해동연월일, 냉동 사료로서의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이내로 설정한 해동 후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해동 후 보관방법 및 주의사항을 주표시면에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p> <p>(25) 기타 표시사항</p> <p>① pH가 4.6 이하인 산성통조림사료는 “산성통조림”으로 표시하여야 한다.</p> <p>② 레토르트(retort) 사료는 “레토르트사료”로 표시하여야 한다.</p> <p>③ 식육의 특정부위를 사용하는 제품은 식육의 원료육 명칭 뒤에 괄호로 그 부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p> <p>④ 원재료의 전부가 식육인 것으로 오인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육의 함량을 해당 표시와 동일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⑤ 어분, 육분, 육골분, 가금부산물건조분(계육분 포함) 등을 사용한 경우 원재료 명칭에 “OO고기”라고 표시할 수 없다.</p> <p>⑥ 희석·용해하여 급여하는 제품은 그 희석배수 또는 희석량을 표시하여야 한다.</p> <p>⑦ 액상 제품 중 400mL 당 열량이 2kcal 이하인 제품은 “다이어트”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있다.</p> <p>⑧ 추출제는 특수용도사료와 혼동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다) 세부표시기준 및 방법</p> <p>(1)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프리믹스용 배합사료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5 및 별표 6에 기재된 단미·보조사료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별표 5 및 별표 6, 별표 13 제2호 참조)</p> <p>① 사료의 명칭을 표시할 때에는 별표 5 및 별표 6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을 먼저 쓰고, 원소 및 화합물의 화학 명칭을 공정에 기재된 영문명으로 명기.</p> <p>예) 비타민B12 (Cyanocobalamin), 비타민C (Ascorbic acid)</p> <p>② 유효 성분명 및 함량, 부형물질 등의 명칭 및 함량. 다만, 착향료에 있어서는 유효성분명 및 함량의 표시가 필요 없다. 또한 별표 5 및 별표 6에서 정량법이 정하여 있지 않은 사료(착향료는 제외한다)의 함량은 함유율을 중량 퍼센트(%)로 표시한다.</p> <p>③ 첨가할 수 있는 배합사료의 종류 및 양</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④ 보존상의 주의사항은 별표 5 및 별표 6에서 정하여진 보존방법을 기재한다.</p> <p>(2) &lt;삭제&gt;</p> <p>(3)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는 혼합된 원료명은 섬유질류, 곡류, 박류, 강피류, 식품가공부산물류, 기타 원료(구체적 원료 명칭 표시)로 분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별표 13 제4호 참조)</p> <p>(4) 실험용동물 배합사료는 사료공정(사용 원료, 제조공정, 수분함량 등)을 달리 하여 성분등록 및 제조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별표 13 제5호 참조)</p> <p>(5) 시험연구용의 사료에는 「시험연구용」이라는 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p> <p>(6) 양식용 수산동물용 배합사료에서 추가로 표시하는 성분은 사료종류와 배합비율, 원료의 명칭을 아래 예시를 기준으로 표시하여야 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400 1256 967 1760"> <thead> <tr> <th>사료종류</th> <th>배합비율</th> <th>원료 명칭</th> </tr> </thead> <tbody> <tr> <td>동물성 단백질류</td> <td>65% 이상</td> <td>새우분, 어분, 육분</td> </tr> <tr> <td>식물성 단백질류</td> <td>15% 이하</td> <td>대두박(탈피), 밀글루텐, 옥수수글루텐, 주정박</td> </tr> <tr> <td>곡류</td> <td>10% 이하</td> <td>소맥분, 옥수수</td> </tr> <tr> <td>유지류</td> <td>6% 이상</td> <td>어유, 옥수수유</td> </tr> <tr> <td>보조사료 등</td> <td>4% 이상</td> <td>결착제, 비타민혼합제, 인산칼슘</td> </tr> </tbody> </table> <p>주1) 사료종류는 배합비율이 큰 순으로 4개 이상의 단미사료와 보조사료를 표시하여야 한다.</p> <p>주2) 원료명칭은 배합비율이 큰 순으로 2개 이상을 표시하여야 한다.</p>	사료종류	배합비율	원료 명칭	동물성 단백질류	65% 이상	새우분, 어분, 육분	식물성 단백질류	15% 이하	대두박(탈피), 밀글루텐, 옥수수글루텐, 주정박	곡류	10% 이하	소맥분, 옥수수	유지류	6% 이상	어유, 옥수수유	보조사료 등	4% 이상	결착제, 비타민혼합제, 인산칼슘		
사료종류	배합비율	원료 명칭																			
동물성 단백질류	65% 이상	새우분, 어분, 육분																			
식물성 단백질류	15% 이하	대두박(탈피), 밀글루텐, 옥수수글루텐, 주정박																			
곡류	10% 이하	소맥분, 옥수수																			
유지류	6% 이상	어유, 옥수수유																			
보조사료 등	4% 이상	결착제, 비타민혼합제, 인산칼슘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7) 확인받은 동물성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지대 등 포장지에 "확인받은 동물성 사료"를 표시하여야 하며, 별표 8에 따라 확인받지 않은 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지대 또는 포장지 등에 "소 등 반추동물에 급여금지" 또는 "소 등 반추동물 사료로 사용금지"를 표시하여야 한다.</p> <p>(8) 조사처리한 사료는 용기에 넣거나 또는 포장한 후 판매하여야 하며, 포장재 및 용기 등에 조사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별표 9 참조)</p> <p>① 활자크기(공통사항) : 7포인트 이상으로 표시</p> <p>② 표시장소는 완제품의 경우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하고, 조사처리한 원료를 사용한 사료의 경우 "사용한 원료의 명칭"란에 그 조사한 내용을 표시</p> <p>③ 표시사항은 완제품의 경우 조사처리된 사료임을 나타내는 문구 및 조사도안(☉), 조사처리한 원료를 사용한 사료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p> <p>㉠ 개별 원료명과 함께 표시 : 원료명 표시란에 해당 원료명에 괄호로 "조사처리"로 표시[예시: "양파(조사처리)", "조사처리마늘" 등]</p> <p>㉡ 조사처리한 사료 일괄표시 : 조사처리한 원료를 괄호로 하여 일괄표시 [예시: 조사처리한 원료(감자, 마늘, 양파 등)]</p> <p>㉢ 어떤 원료가 조사처리 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처리된 원료 일부 함유" 또는 "일부 원료 조사처리" 등의 내용으로 표시할 수 있다.</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9) 별표 11부터 별표 13의 비고란에서 표시하도록 기준이 설정된 사항은 표시하여야 하며, 미생물제를 이용해서 발효한 사료 중 그 명칭 앞에 “발효”를 표시한 경우(예 : 발효대두박)에는 균주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별표 3의3 참조).</p> <p>(10) 제12조제4항에 따른 단미사료는 혼합한 사료 또는 물질의 명칭·혼합비율 등을 반드시 표시하고 보관성이 약하거나 사용상 주의를 요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이를 용기 및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별표 23 참조)</p> <p>(11) 제12조제6항에 따라 부형제를 첨가한 경우에는 혼합한 부형제의 명칭 등을 반드시 표시하고 보관성이 약하거나 사용상 주의를 요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이를 용기 및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별표 24 참조)</p> <p>(12) 법 제15조제2항과 별표 22에 따라 6개월령 이상의 고기소 또는 젖소용 배합사료에 비단백태질소화합물을 혼합하거나, 양계용 또는 양돈용 배합사료에 염산불용물질을 혼합할 경우에는 그 물질의 혼입량과 주의사항 등을 용기 및 포장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p> <p>(13)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유전자변형 ○○포함 사료" 또는 사용한 원료의 명칭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변형" 또는 "유전자변형된 ○○"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우는 "유전자변형 ○○포함 가능성 있음"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p> <p>* “○○”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 (옥수수, 콩, 감자 등)을 적어야 한다.</p> <p>(14) 유효성분명 및 함량의 표시방법</p> <p>① 별표 5 및 별표 6에서 규정한 유효 성분명은 성분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함량의 주성분 명칭으로 한다.</p> <p>② 함량표시</p> <p>㉠ 함량은 성분규격의 함량을 화합물 또는 원소의 양 및 단위 또는 역가로 표시되어 있는 양으로 하며 유효성분에 대한 화합물 또는 원소의 양의 표시방법은 표 1과 같이 한다.</p> <p>㉡ 함량의 내용을 정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표 2와 같이 화합물 함량 또는 원소 함량으로 병기하여야 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미네랄 함량에 별도로 원소함량으로서 환산량을 병기할 수도 있다.</p> <p>㉢ 성분규격에서 함량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제조용 원물의 함유율은 중량%로 표시한다.</p> <p>㉣ 착향료에 대해서는 유효성분명 및 함량의 표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p> <p>③ 보존제의 혼합 예외 인정 : 별표 5 및 별표 6에 기재된 단미·보조사료의 주성분의 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최소한의 항산화제 등 보존제의 사용(필요에 따라 사용량의 폭은 인정함)은 첨가목적( )에 부기하여 사용할 것</p> <p>라) 허위 및 과장 표시·광고의 범위(외국어로 표시·광고한 것을 포함한다)</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1) 법 제8조에 따른 제조업등록과 법 제 12조에 따른 성분등록에 따라 등록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p> <p>(2) 법 제16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가 표시한 명칭 및 표시·광고</p> <p>(3) 제19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p> <p>(4)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p> <p>① “사료”는 동물의 영양이 되거나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사료에는 의약품이나 동물용의약품(허용된 9종은 제외)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 할 수 없음</p> <p>② &lt;삭제&gt;</p> <p>③ 표시·광고된 상품의 성능이나 효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발휘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 &lt;예시 : 정부기관 등 공인기관으로부터 의약품으로 약효를 인정받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gt;</p> <p>*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Ⅱ.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지침 - 5.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한 표시·광고 기준 참고</p> <p>④ 「약사법」 제2조제4호에서 의약품</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을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기계·장치 제외)으로 정의하고 있어 빈혈예방, 고혈압 예방 등의 표현을 사용할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고, 「약사법」 제61조제2항에서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p> <p>(5) 제조방법,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p> <p>(6)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축산학·사료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시·광고. 다만,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에 대한 축산학·사료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는 제외한다.</p> <p>(7)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①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상장</p> <p>②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p> <p>③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p> <p>(8)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p> <p>(9)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나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원료·등록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 또는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p> <p>(10)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사진 등을 사용하는 표시·광고</p> <p>(11)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13) 소비자가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을 포함)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시·광고</p> <p>파의 2. 별표 10 제7호가목·나목에 해당되는 유기사료에 대한 표시·광고</p> <p>(14) 허위 및 과장 표시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광고의 범위</p> <p>① 동물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한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표현</p> <p>② 동물의 건강유지·건강증진·체력유지·체질개선·식이요법·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p> <p>③ 동물의 특정질병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 내용의 표현. 다만, 당뇨병·변비·암 등 특정질병을 지칭하거나 질병(군)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나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사료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사료에 함유된 영양성분(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등)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p> <p>㉠ 특수용도사료로 임신수유기 영양보급, 병후 회복시 영양보급, 노령동물의 영양보급, 아픈 동물에 대한 영양보조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p> <p>㉡ 비타민 ○는 ○○작용을 하여 동물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p> <p>㉢ 칼슘은 뼈와 치아의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라는 표현</p> <p>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소의 기능 성분 함량</p> <p>⑥ 사료의 제조목적이나 주요 용도에 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p> <p>㉣ 해당 사료가 어린동물, 아픈동물 등으로 급여하는 특수용도사료라는 표현</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㉔ 해당 사료가 발육기, 성장기, 임신 수유기, 노령기 등 동물의 특정 성장단계의 영양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사료라는 것과 이와 유사한 표현</p> <p>⑦ 해당 제품의 사료학적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급여방법 또는 급여량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p> <p>⑧ 별표 10 제7호다목에 해당되는 유기 사료에 대한 표시·광고</p> <p>마) 주의사항 표시</p> <p>(1) 사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도 포장하여 넣은 선도유지제에는 "습기방지제(방습제)", "습기제거제(제습제)" 등 소비자가 그 용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먹어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주의문구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p> <p>(2) 냉동 유통되는 사료에 대하여는 "이미 냉동된 바 있으니 해동 후 재 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등의 표시. 다만, 제조업자가 냉동된 사료를 해동하여 출고할 때에는 "이 사료는 냉동된 사료를 해동한 사료이니 재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등의 표시</p> <p>(3) 수분함량이 14%를 초과하는 배합사료와 수분함량이 12%를 초과하는 단미·보조사료 등 개봉 후 부패·변질될 우려가 높은 사료에 대하여는 "개봉 후 냉장보관하거나 빨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등의 표시</p> <p>(4) "원터치캔" 통조림 제품에 대하여는 "캔 절단 부분이 날카로우므로 개봉, 보관 및 폐기 시 주의하십시오" 등의 표시</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5) 누구든지 사료에는 의약품(동물용의 약품을 포함)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6) &lt;삭제&gt;</p> <p>(7) &lt;삭제&gt;</p> <p>(8) 수산화암모늄, 초산, 빙초산,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차아염소산나트륨, 표백분 등 보조사료에는 "어린이 등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직접 급여하거나 음용시키지 마십시오", "눈·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등의 취급상 주의문구 표시</p> <p>(9) 폴리스티렌, 멜라민수지, 페놀수지 및 요소수지 재질의 용기·포장재는 가열·조리시 전자레인지에 넣어 사용하지 않도록 표시</p> <p>바) 표시사항 예시</p> <div data-bbox="405 1323 967 1953"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lt;예시1&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 ABCD1234</li> <li>■ 사료의 명칭 : 혼합성단미사료</li> <li>■ 사료의 형태 : 가루사료</li> <li>■ 등록성분량</li> </ul> <table border="1" data-bbox="427 1547 960 1659"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font-size: small;">성분명</th> <th style="font-size: small;">인</th> <th style="font-size: small;">조단백질</th> <th style="font-size: small;">칼슘</th> <th style="font-size: small;">조섬유</th> <th style="font-size: small;">조회분</th> <th style="font-size: small;">수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font-size: small;">성분량</td> <td>2.0%</td> <td>11.5%</td> <td>5.0%</td> <td>6.0%</td> <td>18.5%</td> <td>15.0%</td> </tr> <tr> <td></td> <td>이상</td> <td>이상</td> <td>이상</td> <td>이하</td> <td>이하</td> <td>이하</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한 원료의 명칭 : 밀기울, 쌀겨, 계분</li> <li>■ 사료의 용도 : 배합사료 원료용</li> <li>■ 실제 중량 : 25kg</li> <li>■ 제조 연월일 : 2015.01.20.</li> <li>■ 유통기간 : 제조일로부터 6월까지</li> <li>■ 제조업자 : 상호(공장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li> </ul> </div>	성분명	인	조단백질	칼슘	조섬유	조회분	수분	성분량	2.0%	11.5%	5.0%	6.0%	18.5%	15.0%		이상	이상	이상	이하	이하	이하		
성분명	인	조단백질	칼슘	조섬유	조회분	수분																		
성분량	2.0%	11.5%	5.0%	6.0%	18.5%	15.0%																		
	이상	이상	이상	이하	이하	이하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포장 내용 : 해당없음(또는 생략 가능)</li> <li>■ 기타 : 유전자변형옥수수 포함 가능성 있음</li> <li>■ 주의사항 : 직사광선을 피해 습기가 없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개봉 후 빨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li> </ul> <p data-bbox="419 633 523 663">&lt;예시2&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 EFGH5678</li> <li>■ 사료의 명칭 : 효소제한제</li> <li>■ 사료의 형태 : 가루사료</li> <li>■ 등록성분량</li> </ul> <table border="1" data-bbox="427 857 962 925"> <tr> <td>성분명</td> <td>키시라나제</td> <td>β-만난아제</td> <td>산성프로테아제</td> </tr> <tr> <td>성분량</td> <td>750천U</td> <td>250천U</td> <td>500천U</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한 원료의 명칭 : 키시라나제, β-만난아제, 산성프로테아제</li> <li>■ 사료의 용도 : 배합사료 원료용</li> <li>■ 실제 중량 : 25kg</li> <li>■ 수입 연월일 : 별도표기</li> <li>■ 유통기한 : 2016.12.31까지</li> <li>■ 수입업자 : 상호(공장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li> <li>■ 재포장 내용 : 해당없음(또는 생략 가능)</li> <li>■ 기타 : 해당없음(또는 생략 가능)</li> <li>■ 주의사항 : 직사광선을 피해 습기가 없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십시오.</li> </ul> <p data-bbox="419 1473 523 1503">&lt;예시3&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 IJKL9123</li> <li>■ 사료의 명칭 : 애완육성개사료1호</li> <li>■ 사료의 형태 : 액상고형물사료</li> <li>■ 등록성분량</li> </ul> <table border="1" data-bbox="427 1697 962 1809"> <tr> <td>성분명</td> <td>조단백질</td> <td>조지방</td> <td>칼슘</td> <td>인</td> <td>조섬유</td> <td>조회분</td> <td>수분</td> </tr> <tr> <td>성분량</td> <td>6.5%</td> <td>2.0%</td> <td>0.2%</td> <td>0.5%</td> <td>0.4%</td> <td>3.0%</td> <td>20.0%</td> </tr> <tr> <td></td> <td>이상</td> <td>이상</td> <td>이상</td> <td>이상</td> <td>이하</td> <td>이하</td> <td>이하</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한 원료의 명칭 : 양고기, 대두유, 미량광물질류 합제(대표 성분 2~3가지 정도 표시), 비타민합제(대표 성분 2~3가지 정도 표시)</li> </ul>	성분명	키시라나제	β-만난아제	산성프로테아제	성분량	750천U	250천U	500천U	성분명	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인	조섬유	조회분	수분	성분량	6.5%	2.0%	0.2%	0.5%	0.4%	3.0%	20.0%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하	이하	이하		
성분명	키시라나제	β-만난아제	산성프로테아제																																
성분량	750천U	250천U	500천U																																
성분명	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인	조섬유	조회분	수분																												
성분량	6.5%	2.0%	0.2%	0.5%	0.4%	3.0%	20.0%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하	이하	이하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료의 용도 : 생후 9개월 이상의 성견용</li> <li>■ 실제 중량 : 100g</li> <li>■ 제조 연월일 : 제품측면 표시</li> <li>■ 유통기간 : 제품측면 표시</li> <li>■ 제조업자 : 상호(공장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li> <li>■ 재포장 내용 : 해당없음(또는 생략 가능)</li> <li>■ 기타 : 유전자변형공 포함 가능성 있음</li> <li>■ 주의사항 : 직사광선을 피해 습기가 없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개봉후 빨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캔 절단 부분이 날카로우므로 개봉, 보관 및 폐기 시 주의하십시오.</li> </ul> <p data-bbox="419 931 523 958">&lt;예시4&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 MNOP4567</li> <li>■ 사료의 명칭 : 혼합성단미사료</li> <li>■ 사료의 형태 : 육포사료</li> <li>■ 등록성분량</li> </ul> <table border="1" data-bbox="427 1151 963 1263"> <thead> <tr> <th>성분명</th> <th>조단백질</th> <th>조지방</th> <th>조섬유</th> <th>조회분</th> <th>수분</th> </tr> </thead> <tbody> <tr> <td>성분량</td> <td>65.0%</td> <td>7.0%</td> <td>0.4%</td> <td>3.0%</td> <td>24.0%</td> </tr> <tr> <td></td> <td>이상</td> <td>이하</td> <td>이하</td> <td>이하</td> <td>이하</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한 원료의 명칭 : 돈피, 치즈, 고구마</li> <li>■ 사료의 용도 : 애완견 간식용</li> <li>■ 실제 중량 : 100g</li> <li>■ 수입 연월일 : 별도표기</li> <li>■ 유통기한 : 2016.12.31.까지</li> <li>■ 수입업자 : 상호(공장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li> <li>■ 재포장 내용 : 해당없음(또는 생략 가능)</li> <li>■ 기타 : 해당없음(또는 생략 가능)</li> <li>■ 주의사항 :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개봉 후 냉장보관하면서 가급적 빨리 급여하십시오.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소, 사슴 등 반추동물에게는 급여하지 마십시오.</li> </ul> <p data-bbox="395 1951 970 1984">사) 기타 표시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은 농</p>	성분명	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수분	성분량	65.0%	7.0%	0.4%	3.0%	24.0%		이상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성분명	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수분																
성분량	65.0%	7.0%	0.4%	3.0%	24.0%																
	이상	이하	이하	이하	이하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림축산식품부장관의 안내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기준」 등을 준용할 수 있다.</p>		
	<p><input type="checkbox"/> 유기농업자재의 표시</p> <p>가. 표시의 주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시를 받은 유기농업자재 공시사업자 (개인 포함)</li> </ul> <p>나. 표시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시를 받은 유기농업자재</li> </ul> <p>다. 표시방법</p> <p>1) 공시표시를 하려는 공시사업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번호, 유기농업자재의 명칭 및 사용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함</p> <p>2) 효능·효과를 표시하려는 공시품은 효능·효과 표시 도형을 사용할 수 있음</p> <p>* 유기농업자재의 표시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별표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li> <li>- 동법 시행규칙 제56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7)</li> </ul>
	<p><input type="checkbox"/> 유독물의 표시</p> <p>가. 표시의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독물영업자 및 유독물수입자</li> </ul> <p>나.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기나 포장에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함</li> <li>- 제조하거나 수입된 유독물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li> <li>- 유독물영업자 및 유독물수입자는 유독물취급시설 또는 유독물을 진열하는 장소에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함</li> </ul> <p>다. 표시내용</p> <p>1) 명칭 : 유독물의 이름이나 제품이름 등에 관한 정보</p> <p>2) 그림문자 :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p> <p>3) 신호어 :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p> <p>4) 유해·위험문구 :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li> <li>- 동법 시행규칙 제28조</li> <li>- 관련 고시</li> <li>-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부 화학물질과 (☎044-201-6774)</li> </ul>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5) 예방조치문구 :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p> <p>6) 공급자정보 :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에 관한 정보</p> <p>* 2)~5)의 사항은 유독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해성을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6의 유해성 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함</p> <p>** 유독물을 보관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 운반차량 및 용기포장에 표시하는 규격은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7 참조</p> <p>※ 화학물질 등의 표시 등에 대한 중복 규제의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하여 유독물 표시를 한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적재방법에 의한 위험물 운반용기와 이를 포장한 외부에 대한 위험물의 표시를 한 것으로 봄</li> <li>- 동일물질의 제조·보관·저장장소 또는 운반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의 표시중 제1호를 포함한 둘이상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가 제1호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표시를 한 것으로 봄</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제조소·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표시</li> <li>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에 관한 표시</li> </ol> <p>*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2013. 6. 4. 개정 법률 제11862호)으로 개정되어 시행(2015.1.1.)된 이후부터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 제2항을 말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 표지의 설치 또는 부착</li> </ol>	<p>기업 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52조</p>	<p>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 담당관 (☎044-203-5568)</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input type="checkbox"/> 간행물의 정가 표시 가. 표시의무자 - 출판사(전자책의 경우 판매자 포함) 나. 표시대상 - 판매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 다. 표시사항 -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정가) 라. 표시방법 - 해당 간행물의 표지에 표시(정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 전자출판물의 경우 서지정보에 명기, 판매사이트에 표시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 동법 시행령 제15조	-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044-203-3244)
	<input type="checkbox"/> 신문의 광고게재시 유의사항 가. 대상자 - 신문·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나. 광고게재시 유의사항 -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함	- 신문등의 진흥에관한법률 제6조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044-203-3214)
	<input type="checkbox"/> 정기간행물의 광고게재시 유의사항 가. 대상자 - 정기간행물 사업자 나. 광고게재시 유의사항 - 정기간행물의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함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044-203-3214)
	<input type="checkbox"/>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가. 표시의무자 1) 청소년유해약물 - 제조·수입한 자 2) 청소년유해물건 - 제작·수입한 자 나. 표시 방법 1) 주류 가) 표시문구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6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 (☎02-2100-6294)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 문구는 '19세 미만 판매금지' 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로 한다.</p> <p>- 군납용으로서 '군인 외의 사람에게 판매 금지'의 문구를 표시한 경우에는 1)의 문구를 생략할 수 있다.</p> <p>나) 크기</p> <p>- 문구는 아래 기준에 따라 사각형(테두리의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처리한 사각형으로 한다) 안에 표시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427 719 967 1137"> <thead> <tr> <th>용량 기준</th> <th>글자크기</th> <th>사각형 크기</th> <th>전면코팅용기 (캔류, 코팅병 등)</th> </tr> </thead> <tbody> <tr> <td>300ml 이하</td> <td>12포인트 이상</td> <td>2cm<sup>2</sup> 이상</td> <td rowspan="8">같은 용량 기준보다 글자 크기는 2포인트 이상, 사각형 크기는 1cm<sup>2</sup> 이상 각각 크게 한다.</td> </tr> <tr> <td>300ml 초과</td> <td>14포인트 이상</td> <td>3.5cm<sup>2</sup> 이상</td> </tr> <tr> <td>500ml 이하</td> <td>16포인트 이상</td> <td>5cm<sup>2</sup> 이상</td> </tr> <tr> <td>500ml 초과</td> <td>18포인트 이상</td> <td>6cm<sup>2</sup> 이상</td> </tr> <tr> <td>750ml 이하</td> <td>20포인트 이상</td> <td>7.5cm<sup>2</sup> 이상</td> </tr> <tr> <td>750ml 초과</td> <td>20포인트 이상</td> <td>7.5cm<sup>2</sup> 이상</td> </tr> <tr> <td>1ℓ 이하</td> <td>20포인트 이상</td> <td>7.5cm<sup>2</sup> 이상</td> </tr> <tr> <td>1ℓ 초과</td> <td>20포인트 이상</td> <td>7.5cm<sup>2</sup> 이상</td> </tr> </tbody> </table> <p>- 글자체는 견고딕체를 사용한다.</p> <p>다) 색상</p> <p>- 사각형 테두리 내 배경색은 상표 도안의 색상과 보색 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해야 한다.</p> <p>- 문구의 색상은 사각형 배경색과 보색 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해야 한다.</p> <p>라) 위치 :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p> <p>2) 주류 외의 청소년유해약물 등</p> <p>가) 담배</p> <p>i) 표시문구</p> <p>-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ii) 표시방법</p> <p>- (크기) 담배갑 뒷면 단면 면적의 1/5 이상 크기의 사각형 안에 기재</p> <p>- (색상) 바탕색과 보색</p> <p>- (위치) 담배갑 뒷면</p> <p>나) 부탄가스</p>	용량 기준	글자크기	사각형 크기	전면코팅용기 (캔류, 코팅병 등)	300ml 이하	12포인트 이상	2cm <sup>2</sup> 이상	같은 용량 기준보다 글자 크기는 2포인트 이상, 사각형 크기는 1cm <sup>2</sup> 이상 각각 크게 한다.	300ml 초과	14포인트 이상	3.5cm <sup>2</sup> 이상	500ml 이하	16포인트 이상	5cm <sup>2</sup> 이상	500ml 초과	18포인트 이상	6cm <sup>2</sup> 이상	750ml 이하	20포인트 이상	7.5cm <sup>2</sup> 이상	750ml 초과	20포인트 이상	7.5cm <sup>2</sup> 이상	1ℓ 이하	20포인트 이상	7.5cm <sup>2</sup> 이상	1ℓ 초과	20포인트 이상	7.5cm <sup>2</sup> 이상		
용량 기준	글자크기	사각형 크기	전면코팅용기 (캔류, 코팅병 등)																													
300ml 이하	12포인트 이상	2cm <sup>2</sup> 이상	같은 용량 기준보다 글자 크기는 2포인트 이상, 사각형 크기는 1cm <sup>2</sup> 이상 각각 크게 한다.																													
300ml 초과	14포인트 이상	3.5cm <sup>2</sup> 이상																														
500ml 이하	16포인트 이상	5cm <sup>2</sup> 이상																														
500ml 초과	18포인트 이상	6cm <sup>2</sup> 이상																														
750ml 이하	20포인트 이상	7.5cm <sup>2</sup> 이상																														
750ml 초과	20포인트 이상	7.5cm <sup>2</sup> 이상																														
1ℓ 이하	20포인트 이상	7.5cm <sup>2</sup> 이상																														
1ℓ 초과	20포인트 이상	7.5cm <sup>2</sup> 이상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i) 표시문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제품은 흡입 시 심신장애 등 심각한 피해를 가져옵니다. 이 제품을 흡입한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특히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로 한다.</li> </ul> <p>ii)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크기)용기 면적의 1/20 이상 크기의 면적에 기재</li> <li>- (색상) 바탕색과 보색</li> <li>- (위치)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li> </ul> <p>다) 부탄가스와 환각물질(공업용 제외)</p> <p>i) 표시문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로 한다.</li> </ul> <p>ii)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크기)업계 자율로 하되, 다른 의무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그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li> <li>- (색상) 바탕색과 보색</li> <li>- (위치)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li> </ul> <p>라) 법 제2조 제4호 가목 5)의 약물 및 같은 호 나목의 물건</p> <p>i) 표시문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li> </ul> <p>ii)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크기)상표 면적의 1/10 이상 크기의 면적에 기재</li> <li>- (색상) 바탕색과 보색</li> <li>- (위치)업계 자율</li> </ul> <p>iii)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청소년유해물건 중 해당 청소년유해약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의 특성상 표시문구나 표시방법을 달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다.</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input type="checkbox"/>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 형식승인의 표시</p> <p>1) 표시의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li> </ul> <p>2) 표시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제작회사</li> <li>나. 기기형식</li> <li>다. 형식승인번호</li> <li>라. 형식승인일</li> <li>마. 기기고유번호</li> <li>바. 수입신고일</li> </ul> <hr/> <p>※ 방제자재·약제에 대한 표시의무자에게 형식승인증서 발급 시, 부관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도록 명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형식승인번호</li> <li>나. 품명, 규격, 종류</li> <li>다. 형식</li> <li>라.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li> <li>마. 제조년월일, 제조번호</li> <li>바. 제조자의 성명 또는 명칭, 기타</li> </ul>	<p>-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 (형식승인의 표시)</p>	<p>-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044-200-5289)</p>
	<p><input type="checkbox"/> 소방용품의 인증표시</p> <p>가. 표시의 주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li> </ul> <p>나. 표시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염성능검사를 합격한 물품</li> <li>-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li> <li>-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li> </ul> <p>다. 표시내용</p> <p>1) 품질인증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용품 방염성능검사,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 합격표시, 우수품질인증표시</li> </ul> <p>2) 각 용품별 표시항목(예시 : 소화기, 소화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p>	<p>-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제39조제3항</p> <p>-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p> <p>-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p>	<p>- 소방청 소방산업과 (☎ 044-205-7511)</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① 소화기의 본체용기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종별 및 형식</li> <li>2. 형식승인번호</li> <li>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li> <li>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수입업체명</li> <li>5. 사용온도범위</li> <li>6. 소화능력단위</li> <li>7. 충전된 소화약제의 주성분 및 중(용)량</li> <li>8.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가스종류 및 가스량(가압식소화기에 한함)</li> <li>9. 총중량</li> <li>10. 취급상의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유류화재 또는 전기화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소화기는 그 내용</li> <li>나. 기타 주의사항</li> </ul> </li> <li>11. 적용화재별 표시사항은 일반화재용 소화기의 경우 “A(보통화재용)”, 유류화재용 소화기의 경우에는 “B(유류화재용)”, 전기화재용 소화기의 경우 “C(전기화재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li> <li>12. 사용방법</li> <li>13.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 등)</li> <li>14. 다음 각 호의 부품에 대한 원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용기</li> <li>나. 밸브</li> <li>다. 호스</li> <li>라. 소화약제 주원료</li> </ul> </li> </ol> <p>② 자동차용소화기에는 제1항의 표시상단의 “자동차겸용”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p> <p>③ 할로겐화물소화기는 제1항의 표시 외에 다음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p>	에 관한 규칙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주 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밀폐된 좁은 실내에는 사용을 삼가 하십시오.</li> <li>2. 바람을 등져서 방사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환기 하십시오.</li> <li>3. 발생하는 가스는 유독하므로 호흡을 삼가하십시오.</li> </ol> <p>④ 가압식소화기에는 제1항의 표시외에 다음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p> <p>이 소화기는 조작시 용기전체가 급속히 가압되므로 아래와 같은 소화기는 사용하지 마십시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녹, 부식, 변형이 심한 것</li> <li>2. 뚜껑이 완전히 조여져 있지 않은 것</li> <li>3. 폐기된 것</li> </ol> <p>라.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의 포장·용기의 표면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함.</li> <li>※ 소방용품별로 표시사항 기재내용은 상이할 수 있어 기본적인 표시사항을 기재함</li> </ul>		

<첨부>

인증대상 소방용품

구분	인증대상 소방용품	
소방용품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3)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 별표7)
	1.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별표 1 제1호가목의 소화기구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제외한다) 나. 별표 1 제1호나목의 자동소화 장치 다.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송수구, 관창(管槍),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 스관선택밸브 2.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나.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 향장치(경종만 해당한다) 3. 피난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간 이완강기 및 지지대를 포함한 다) 나. 공기호흡기(충전기를 포함한다) 다.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 석유도등 및 예비 전원이 내장 된 비상조명등 4.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소화약제(별표 1 제1호나목2)와 3)의 자동소화장치와 같은 호 마목3)부터 8)까지의 소화설비 용만 해당한다) 나. 방염제(방염액·방염도료 및 방 염성물질을 말한다)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	1. 축광표지(유도표지 및 위치표지) 2. 예비전원 3. 비상콘센트설비 4. 표시등 5. 소화전함 6.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가지관과 스프링클러헤드를 연결하는 플렉시 블 파이프를 말한다) 7. 소방용전선(내화전선 및 내열전선) 8. 탐지부 9. 지시압력계 10. 비화재보방지기 11. 공기안전매트 12. 소방용밸브(개폐표시형 밸브, 릴 리프 밸브, 푸트 밸브) 13. 소방용 스트레이너 14. 소방용 압력스위치 15.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16. 비상경보설비의축전지 17.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18. 소화설비용 헤드(물분무헤드, 분 말헤드, 포헤드, 살수헤드) 19. 방수구 20.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 21. 소방용 흡수관 22.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 하는 소방용품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2. 제조업 (7) 기타	<input type="checkbox"/> 가공제품의 방사선 작용 표시·광고 금지 가. 표시·광고 금지대상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가공제품*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가공하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 나. 표시·광고 금지자 -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 다. 표시·광고 금지사항 -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전리(電離), 여기(勵起) 등의 작용(소위 '음이온 효과')이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금지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의2	-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 02-397-7291)
3. 가스업	<input type="checkbox"/> 가스용품의 합격표시 가. 표시의무자 - 가스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는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경우에만 해당)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함 나. 표시방법 -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에 필요한 사항을 각인 또는 표시하여야 함 * 가스용품의 합격표시 :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18 - 검사에 합격된 가스용품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각인하거나 검사증명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표시 · 다만, 가스용품이 일관공정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에는 제조공정 중에 그 합격표시를 하게할 수 있음 - 배관용밸브의 합격표시는 각인으로 함 - 압력조정기·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콕·전기절연이음관·전기용착폴리에틸렌 이음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 산업자원통상부 가스산업과 (☎044-203-5325)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이형질이음관·퀵카플러, 강제혼합식가스 버너·연소기·연료전지, 고압호스·염화비닐호스·금속플렉시블호스는 각각 해당 검사증명서를 부착함		
	<input type="checkbox"/> 액화석유가스 충전량 등의 표시 가. 표시의무자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나. 표시대상 및 표시사항 -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 : 충전량 - 내용적 25리터 이상 125리터 미만의 용기 : 충전량 및 상호 - 액화석유가스를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착된 용기는 제외 다. 표시방법 -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는 때에는 그 용기에 충전량 및 그 사업자의 상호를 표시하여야 함 - 충전량 및 상호표시는 용기의 바깥면에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 - 충전량의 표시를 위하여 계량을 하는 때의 허용오차는 100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제23조 -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 산업자원통상부 가스산업과 (☎044-203-5325)
	<input type="checkbox"/> 고압가스 용기 등의 표시 가. 표시의무자 - 용기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나. 표시사항 1) 용기에 대한 표시 가) 용기의 각인 - 용기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용기의 어깨 부분 또는 프로텍터 부분등 보기 쉬운 곳에 다음 사항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의 경우에는 1)·2)·4) 및 11)의 사항에 한한다)을 각인(납붙임 또는 접합용기의 경우에는 인쇄, 복합재료 용기의 경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1조의2 - 동법 시행규칙제 41조제1항, 별표24	- 산업자원통상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79)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에는 인쇄한 라벨을 그 용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 재충전금지용기의 경우에는 용기 외면에 지워지지 않도록 인쇄하거나 금속박판에 각인한 것을 그 용기에 부착)을 할 것</p> <p>- 다만, 각인하기가 곤란 한 용기의 경우에는 다른 금속박판에 각인한 것을 그 용기에 부착함으로써 용기에 대한 각인에 갈음할 수 있음</p> <p>(1) 용기제조업자의 명칭 또는 약호</p> <p>(2) 충전하는 가스의 명칭</p> <p>(3) 용기의 번호</p> <p>(4) 내용적(기호 V, 단위 : L)</p> <p>(5) 초저온용기외의 용기는 밸브 및 부속품 (분리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하지 아니한 용기의 질량(기호: W, 단위 : kg)</p> <p>(6) 아세틸렌가스 충전용기는 5)의 질량에 용기의 다공물질·용제 및 밸브의 질량을 합한 질량(기호 : TW, 단위 : kg)</p> <p>(7) 내압시험에 합격한 연월</p> <p>(8) 내압시험압력(기호 : TP, 단위 : MPa) (초저온용기 및 액화천연가스자동차용 용기는 제외함)</p> <p>(9) 최고충전압력(기호 : FP, 단위 : MPa) (압축가스를 충전하는 용기, 초저온용기 및 액화천연가스자동차용용기에 한정함)</p> <p>(10) 내용적이 500 ℓ 를 초과하는 용기에는 동판의 두께(기호 : t, 단위: mm)</p> <p>(11) 충전량(g)(납불임 또는 접합용기에 한함)</p> <p>나) 용기의 도색 및 표시</p> <p>- 용기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용기의 외면에 도색을 하고 충전하는 가스의 명칭을 표시할 것. 다만, 스테인레스강등 내식성재료를 사용한 용기의 경우에는 용기 동체의</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외면 상단에 10cm이상의 폭으로 충전 가스에 해당하는 색으로 도색할 수 있음</p> <p>(1)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의 용기 : 별첨 (2) 의료용 가스용기 : 별첨 (3) 그 밖의 가스용기 : 별첨</p> <p>2) 용기부속품에 대한 표시</p> <p>- 용기부속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용기 부속품의 보기 쉬운 곳에 다음 사항을 각인하여야 함. 다만, 각인하기가 곤란한 것의 경우에는 다른 금속박판에 각인한 것을 그 용기부속품에 부착함으로써 그 용기부속품에 대한 각인에 갈음할 수 있음</p> <p>(가) 부속품제조업자의 명칭 또는 약호 (나) (바)의 규정에 의한 부속품의 기호와 번호 (다) 질량(기호 : W, 단위 : kg) (라) 부속품검사에 합격한 연월 (마) 내압시험압력(기호 : TP, 단위 : MPa) (바) 용기종류별 부속품의 기호</p> <p>① 아세틸렌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 : AG ② 압축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 : PG ③ 액화석유가스외의 액화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 : LG ④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 : LPG ⑤ 초저온용기 및 저온용기의 부속품 : LT</p> <p>3) 냉동기에 대한 표시</p> <p>- 냉동기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금속 박판에 다음 사항을 각인하여 이를 냉동기의 보기 쉬운 곳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하여야 함. 다만, 독성 가스 또는 가연성가스가 아닌 냉매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냉동능력이 20톤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인쇄된 표지를 부착할 수 있음.</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가) 냉동기제조자의 명칭 또는 약호</p> <p>(나) 냉매가스의 종류</p> <p>(다) 냉동능력(단위 : RT). 다만,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내용적(단위 : ℓ)을 표시하여야 함</p> <p>(라) 원동기소요전력 및 전류(단위 : kW, A). 다만, 압축기의 경우에 한함.</p> <p>(마) 제조번호</p> <p>(바) 검사에 합격한 연월(年月)</p> <p>(사) 내압시험압력(기호 : TP, 단위 : MPa)</p> <p>(아) 최고사용압력(기호 : DP, 단위 : MPa)</p> <p>4) 특정설비에 대한 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설비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금속박판에 다음 사항을 각인하여 이를 그 특정설비의 보기 쉬운 곳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하여야 함. 다만, 저장탱크, 차량에 고정된 탱크, 기화장치 및 압력용기외의 특정설비의 경우에는 그 몸통부분등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를 각인할 수 있으며,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경우에는 (가)의 (1) 내지 (10)의 사항을 각인하는 외에 그 외면에 은백색의 도색을 하고 충전하는 가스의 명칭 및 충전기한을 표시하여야 하며, 복합재료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인쇄한 라벨을 그 압력용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할 것.</li> </ul> <p>(가) 저장탱크·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압력용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조자의 명칭 또는 약호</li> <li>(2) 충전하는 가스의 명칭</li> <li>(3)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li> <li>(4) 사용재료명</li> <li>(5) 동체 및 경판의 두께(기호 : t, 단위 : mm)</li> <li>(6) 내용적(기호 : V, 단위 : ℓ)</li> <li>(7) 설계압력(기호 : DP, 단위 : MPa)</li> <li>(8) 설계온도(기호 : DT, 단위 : ℃)</li> <li>(9)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약호</li> <li>(10) 내압시험에 합격한 연월</li> </ol>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나) 기화장치</p> <p>(1) 제조자의 명칭 또는 약호</p> <p>(2) 사용하는 가스의 명칭</p> <p>(3)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일</p> <p>(4) 내압시험에 합격한 연월</p> <p>(5) 내압시험압력(기호 : TP, 단위 : MPa)</p> <p>(6) 가열방식 및 형식</p> <p>(7) 최고사용압력(기호 : DP, 단위 : MPa)</p> <p>(8) 기화능력(단위 : kg/hr 또는 m<sup>3</sup>/hr)</p> <p>(다)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p> <p>(1) 제조자의 명칭 또는 약호</p> <p>(2) 사용하는 가스의 명칭</p> <p>(3)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p> <p>(4) 최고사용압력(기호 : TP, 단위 : MPa)</p> <p>(5) 내압시험에 합격한 연월</p> <p>(라) 냉동용특정설비</p> <p>(1) 압축기·응축기 및 증발기의 경우에는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냉동기에 대한 표시기준을 준용함. 이 경우 압축기의 냉동능력 RT 또는 m<sup>3</sup>/hr 로 표시할 수 있음</p> <p>(2)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설비에 대한 표시기준을 준용함</p> <p>(마) 그 밖의 특정설비</p> <p>(1) 제조자의 명칭 또는 약호</p> <p>(2) 검사에 합격한 연월</p> <p>(3) 질량(기호 : W, 단위 : kg)</p> <p>(4) 내압시험에 합격한 연월</p> <p>(5) 내압시험압력(기호 : TP, 단위 : MPa)</p> <p>(6) 특정설비별 기호 및 번호</p> <p>① 아세틸렌가스용 : AG</p> <p>② 압축가스용 : PG</p> <p>③ 액화석유가스용 : LPG</p> <p>④ 저온 및 초저온가스용 : LT</p> <p>⑤ 그 밖의 가스용 : LG</p>		

<첨부>

(1)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의 용기

가스의 종류	도색의 구분	가스의 종류	도색의 구분
액화석유가스	회 색	액화암모니아	백 색
수 소	주 황 색	액 화 염 소	갈 색
아 세 틸 렌	황 색	그 밖의 가스	회 색

비 고

-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는 제외한다) 및 독성가스는 각각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 내용적 2ℓ미만의 용기는 제조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액화석유가스용기중 부탄가스를 충전하는 용기는 부탄가스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선박용 액화석유가스용기의 표시방법
  - (가) 용기의 상단부에 폭 2cm의 백색띠를 두줄로 표시한다.
  - (나) 백색띠의 하단과 가스 명칭 사이에 백색글자로 가로·세로 5cm의 크기로 "선박용"이라고 표시한다.
- 자동차의 연료장치용 용기의 외면에는 그 용도를 "자동차용"으로 표시할 것
- 그 밖의 가스에는 가스 명칭 하단에 가로·세로 5cm의 크기의 백색글자로 용도("절단용")를 표시할 것

(2) 의료용 가스용기

가스의 종류	도색의 구분	가스의 종류	도색의 구분
산 소	백 색	질 소	흑 색
액화탄산가스	회 색	아 산 화 질 소	청 색
헬 른	갈 색	싸이크로프로판	주 황 색
에 틸 렌	자 색	그 밖의 가스	회 색

비 고

- 용기의 상단부에 폭 2cm의 백색(산소는 녹색)의 띠를 두줄로 표시하여야 한다.
- 용도의 표시
 

의료용

 각 글자마다 백색(산소는 녹색)으로 가로·세로 5cm로 띠와 가스 명칭 사이에 표시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가스용기

가 스 의 종 류	도 색 의 구 분
산 소	녹 색
액 화 탄 산 가 스	청 색
질 소	회 색
소 방 용 용 기	소 방 법 에 의 한 도 색
그 밖 의 가 스	회 색

비고 : 내용적 2L 미만의 용기(소방용 용기는 제외한다)의 도색방법은 제조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3. 가스업	<p><input type="checkbox"/> 고압가스 용기의 합격표시</p> <p>가. 표시자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p> <p>* 용기등을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외국 용기등 제조자를 포함)는 당해 용기등을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함</p> <p>나.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에 합격된 용기등에는 합격내용 등을 각인 또는 표시하여야 함.(동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별표25 참조)</li> </ul> <p>1) 제조·수리·수입검사에 합격한 용기등에 대한 각인·표시</p> <p>가) 용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에 합격한 용기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인 또는 표시를 할 것. 다만, 각인하기가 곤란한 용기의 경우에는 다른 금속박판에 각인한 것을 그 용기에 부착하는 것으로 용기에 대한 각인을 갈음할 수 있음</li> </ul> <p>(1) 용기(납붙임 또는 접합용기를 제외)에는 그 어깨부분 또는 프로텍터부분 등 보기 쉬운 곳에 다음과 같이 "K" 각인을 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발행하는 표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4항</li> <li>- 동법 시행규칙 제41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자원통상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79)</li> </ul>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를 부착할 수 있음.</p> <p> 크기 : 6mm×10mm(다만, 내용적 5L 미만인 용기의 경우에는 3mm×5mm)</p> <p>가) 재충전금지용기</p> <p>나) 고압가스가 충전되어 수입되는 용기 (그 가스를 사용할 때까지만 부착함)</p> <p>(2)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에는 그 제조공정 중에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할 것(그림생략)</p> <p>나) 용기부속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에 합격한 용기부속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각인을 함(그림생략).</li> </ul> <p>다) 냉동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에 합격한 냉동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 각인을 함(그림생략)</li> </ul> <p>라) 특정설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에 합격한 특정설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구분에 따라 각인을 함.</li> </ul> <p>(1) 저장탱크, 차량에 고정된 탱크, 기화장치 및 압력용기에는 다음과 같이 "" 각인을 한다. 다만, 재검사에 불합격되어 수리를 한 저장탱크의 경우에는 "" 각인과 함께 "R"자의 각인을 하고, 복합재료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가른 금속박판에 각인한 것을 그 용기에 부착함(그림생략).</p> <p>(2) 냉동용특정설비에 대해서는 다)의 냉동기 표시방법을 준용함. 다만, 각인하기가 곤란한 냉동용특정설비의 경우에는 다른 금속박판에 각인한 것을 부착할 수 있음</p> <p>(3) 그 밖의 특정설비</p> <p>(1)에 규정된 것 외의 특정설비에는 다음과 같이 "" 각인을 함(그림생략).</p> <p>2) 재검사에 합격한 용기 및 특정설비에 대한 각인등</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가) 각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검사에 합격한 용기·용기부속품 및 특정설비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과 1)의 가)·나) 및 라)에 규정된 "㉠" 각인을 함. 다만, 각인이 곤란한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재검사기관이 행하는 합격증명으로 각인에 갈음할 수 있음.</li> </ul> <p>(1) 재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약호</p> <p>(2) 재검사연월</p> <p>(3) 충전하는 가스를 변경하고자 하는 가스의 명칭(충전하는 가스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회에 각인된 충전 가스의 명칭은 두 줄의 평행선으로 지워야 함)</p> <p>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대한 도색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검사에 합격한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는 그 외면에 은백색의 도색을 하고 충전 가스의 명칭 및 충전기한을 표시함</li> </ul>		
4. 건설업	<p><input type="checkbox"/> 전기공사표지의 게시</p> <p>가. 표시의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공사업자</li> </ul> <p>나. 표시사항</p> <p>1) 완공 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명, 발주자, 설계자, 시공사, 감리자, 시공 관리책임자, 공사비, 착공년월일, 준공예정년월일 등</li> <li>* 전기공사현장표지판 :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별지서식 제22호</li> </ul> <p>2) 완공 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명, 발주자, 설계자, 시공사, 감리자, 시공관리책임자, 착공년월일, 준공년월일</li> <li>* 전기공사준공표지판 :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별지서식 제23호</li> </ul> <p>다.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공사현장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게시하여야 함</li> </ul>	<p>- 전기공사업법 제24조</p> <p>- 동법시행규칙 제13조</p>	<p>- 산업자원통상부 전력산업과 (☎044-203-5159)</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공사현장 표지는 전기공사의 착공일 부터 준공전일까지 게시하여야 함</li> <li>- 공사업자는 수급한 전기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표시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주된 배전반에 붙이거나 확인하기 쉬운 부분에 설치하여야 함</li> </ul>		
	<p><input type="checkbox"/> 건축물의 분양광고</p> <p>가. 광고의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분양사업자</li> </ul> <p>나. 광고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분양신고번호 및 일자</li> <li>2) 대지의 지번(地番)</li> <li>3) 건축물 연면적</li> <li>4) 분양가격(면적별 · 용도별 또는 위치별로 구분할 수 있음)</li> <li>5) 건축물의 층별 용도</li> </ol> <p>5의2) 건축물의 내진(耐震)설계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li> <li>- 건축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li> </ul> <p>5의3) 건축물의 대지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현황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여부</li> <li>-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여부</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6) 분양사업자(신탁계약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가 되는 경우에는 분양사업자와 위탁자) · 분양대행사 및 시공업체의 명칭</li> <li>7) 분양대금의 관리자와 분양사업자간의 관계</li> <li>8)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li> <li>- 동법 시행령 제8조</li> <li>- 동법 시행규칙 제6조</li> </ul>	<p>-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55)</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체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p> <p>9) 연대보증을 한 2이상의 건설업자의 명칭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하여 다른 건설업자 2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이를 공증받은 경우)</p> <p>10) 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p> <p>10의2) 분양받은 자의 사용승인 전 건축물 방문에 관한 사항(오피스텔인 경우)</p> <p>11) 분양받을 자의 모집기간·모집방법(인터넷을 활용한 청약접수 가능 여부 및 방법 포함) 및 선정일시</p> <p>12) 구분소유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개 모집을 하는 경우 그 업종, 건축물 내 위치, 전체 분양면적 중 우선모집 면적비율, 분양받을 자의 자격제한 등 우선 공개모집의 내용에 관한 사항(동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p> <p>13) 거주자 우선 분양에 관한 사항(동법 제6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p> <p>14) 전매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동법 제6조의 3에 해당하는 경우)</p> <p>15) 구분지상권의 설정에 관한 사항(동법 제6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p> <p>16) 분양대금의 납부시기, 청약신청금 납부 금액·납부방법 및 환불시기</p> <p>다. 광고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양광고는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주된 보급 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여야 함. (분양분이 100실 미만인 오피스텔의 경우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가능) 다만, 두 번째 이후의 분양광고로서 광</li> </ul>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고문구에 위 (2)~(5), (5의2), (6), (10의 2), (16)의 사항을 분양사업장(분양건축물의 견본 등을 설치하고 청약 안내 등을 하는 장소를 말함)에서 게시함을 밝힌 경우 생략 가능		
	<input type="checkbox"/>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가. 표시의 주체 -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주체 나. 표시내용 : 5개 분야, 25개 항목 1)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화장실소음·경계소음 등 소음관련 등급 2) 리모델링 등을 대비한 가변성·수리용이성 등 구조관련 등급 3) 조정·일조확보율·실내공기질·에너지절약 등 환경관련 등급 4) 커뮤니티시설, 사회적 약자 배려,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등 생활환경 관련 등급 5) 화재·소방·피난안전 등 화재·소방 관련 등급 다. 표시대상 -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 라. 표시방법 -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표시	- 주택법 제39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
	<input type="checkbox"/>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표시 가. 표시의무자 -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주체 나. 표시방법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입주자모집공고시 표시 다. 표시사항 - 주택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공동주택	- 주택법 제37조제1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3)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의 1차에너지소요량 절감 또는 이산화탄소배출량 절감 성능수준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제1항에 의한 평가시</p> <p>- 창호·벽체의 단열성능, 고단열고기밀강재문 등 친환경주택 설계조건 적용 여부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제2항에 의한 평가시</p>		
5. 운수업	<p><input type="checkbox"/>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의 표시</p> <p>가. 표시의무자</p> <p>- 운송사업자</p> <p>나. 표시사항</p> <p>1)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p> <p>가) 시외우등고속버스: “우등고속”</p> <p>나) 시외고속버스: “고속”</p> <p>다) 시외우등직행버스: “우등직행”</p> <p>라) 시외직행버스: “직행”</p> <p>마) 시외우등일반버스: “우등일반”</p> <p>바) 시외일반버스: “일반”</p> <p>2)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전세“</p> <p>3)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한정“</p> <p>4)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장의“</p> <p>5)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p> <p>가) 자동차의 종류(“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p> <p>나) 관할관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는 제외)</p> <p>다)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 상호(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p> <p>라) 그 밖에 시·도지사가 정하는 사항</p> <p>6) 마을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마을버스“</p>	<p>-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p> <p>- 동법 시행규칙 제39조</p>	<p>- 국토교통부</p> <p>대중교통과</p> <p>(☎044-201-3832,3827)</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다.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차체 면에 인쇄하는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표시의 방법 및 위치 등은 관할관청이 정함</li> </ul>		
6. 통신업	<p><input type="checkbox"/> 정보통신망의 인증 표시</p> <p>가. 표시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에 적합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li> <li>-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함</li> </ul> <p>나.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그 제품이 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음</li> </ul> <p><input type="checkbox"/>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의 표시</p> <p>가. 표시의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 중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이나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 또는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li> </ul> <p>나.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는 당해 매체물에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li> </ul>	<p>-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p> <p>-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p> <p>- 동법 시행령 제24조</p> <p>- 관련 고시</p> <p>·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p>	<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061-338-4430)</p> <p>-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02-2110-1549)</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유해문구, 유해로고를 표시하여야 함</p> <p>- 위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 중 인터넷 사이트 자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함</p> <p><input type="checkbox"/>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의 표시·홍보</p> <p>가. 표시자</p> <p>-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정보보호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자</p> <p>나. 도안 및 표시방법</p> <p>- 도안 모형(고시 제25조제1항 별표4)</p> <p>-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받은 내용을 문서·송장·광고 등에 홍보하는 경우 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함</p>	<p>-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p> <p>- 동법 시행령 제52조</p> <p>-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5조</p>	<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044-202-6461)</p>
7. 금융업	<p><input type="checkbox"/> 투자광고</p> <p>* 투자광고 : 금융투자업자의 영위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광고</p> <p>가. 광고자</p> <p>- 금융투자업자,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금융투자업자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증권발행인 또는 매출인(해당 증권에 대해)</p> <p>나. 광고 포함사항</p> <p>1)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광고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 제외)</p> <p>가) 광고포함 의무사항</p> <p>(1) 금융투자업자의 명칭</p> <p>(2) 금융투자상품의 내용</p> <p>(3) 투자에 따른 위험</p> <p>(4)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p>	<p>-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7조</p> <p>- 동법 시행령 제60조</p> <p>- 관련 고시</p> <p>· 금융투자업규정 제411조 제412조</p>	<p>-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02-2156-9878) (☎02-2156-9890-9897)</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p> <p>(5) 금융투자업자로부터 (4)에 따른 설명을 듣고서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p> <p>(6) 수수료에 관한 사항</p> <p>(7) 투자광고를 하는 자, 투자광고의 내용, 투자광고의 매체·크기·시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 기관 등으로부터 수상, 선정, 인증, 특허 등(이하 '수상 등')을 받은 내용을 표기하는 경우 당해 기관의 명칭, 수상 등의 시기 및 내용</li> <li>- 과거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을 표기하는 경우 투자광고 시점(또는 기간)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다는 내용</li> <li>- 최소비용을 표기하는 경우 그 최대비용과 최대수익을 표기하는 경우 그 최소수익</li> <li>- 관련 법령·약관 등의 시행일 또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전에 실시하는 광고의 경우 투자자가 당해 거래 또는 계약 등의 시기 및 조건 등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li> <li>- 통계수치나 도표 등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출처</li> <l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회가 정하는 사항</li> </ul> <p>2)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p> <p>가) 광고포함 의무사항</p> <p>(1)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설명서를 읽어 볼 것을 권고하는 내용</p> <p>(2) 집합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p> <p>(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포함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라는 내용</p> <p>나) 광고포함 가능사항</p> <p>(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p> <p>(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에 관한 사항</p> <p>(3)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에 관한 사항</p> <p>(4)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일반사무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사무관리회사를 포함한다)의 상호 등 그 업자에 관한 사항</p> <p>(5)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일반사무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사무관리회사를 포함한다)가 받는 보수나 수수료에 관한 사항</p> <p>(6)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p> <p>(7) 과거의 운용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용실적</p> <p>(8)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p> <p>(9) 그 밖에 투자광고에 포함하여도 투자자 보호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가 고시하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47조에 따라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li> <li>- 집합투자재산은 신탁업자에 따라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li> <li>-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 및 회계감사인이 집합투자재산을 적법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한다는 사실</li> <l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에 적합한</li> </ul>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투자자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구조</li> <li>-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등이 평가한 평가결과</li> <li>- 일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li> <li>- 투자금의 한도 및 적립방법</li> <li>- 비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비교의 대상이 되는 다른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운용기간, 운용실적, 그 밖에 비교의 기준일자 등에 관한 사항</li> <li>- 투자광고의 특성상 필요한 표제·부제</li> </ul> <p>다. 광고시 준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됨</li> <li>2)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지 아니할 것</li> <li>3) 금융투자상품의 비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금융투자상품이 열등하거나 불리한 것으로 표시하지 아니할 것</li> <li>4)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함)의 사전 확인을 받는 등 금융위가 고시하는 방법을 따를 것</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고의 제작 및 내용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것</li> <li>-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실태평가결과와 영업용 순자본비율 등을 다른 금융투자업자의 그것과 비교하는 방법 등으로 광고하지 아니할 것</li> <li>-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을 것</li> <li>- 투자광고계획신고서와 투자광고안을 협회에</li> </ul>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것 - 협회의 투자광고안 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 - 투자광고문에 협회 심사필 또는 준법감시인 심사필을 표시할 것		
	<input type="checkbox"/> 대부조건의 게시 가. 표시의무자 - 대부업자 나. 표시사항 - 대부업 등록증 - 대부이자율 - 이자계산방법 - 변제방법 - 대부업 등록번호 - 연체이자율 - 대부계약과 관련한 부대비용의 내용 다. 표시방법 - 영업소마다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게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동법 시행령 제6조, 제6조의2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56-9475)
	<input type="checkbox"/> 대부조건 등의 표시·광고 가. 표시·광고 의무자 -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나. 표시·광고 사항 1) 대부업자 -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 대부업 등록번호 - 대부이자율(연이자율로 환산된 것 포함) 및 연체이자율 -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영업소의 주소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표시·광고 등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 현재 등록 중인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의 전화번호 -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2) 대부중개업자 -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 중개를 통하여 대부를 받을 경우 그 대부이자율(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동법 시행령 제6조, 제6조의2, 별표 1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56-9475)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 및 연체이자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li> <li>- 영업소의 주소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표시·광고 등에 사용되는 전화번호</li> <li>- 현재 등록 중인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의 전화번호</li> <li>-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li> <li>-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다. 표시·광고방법</li> <li>-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해 표시·광고하는 경우 위의 표시·광고사항을 포함하여야 함</li> <li>-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의 상호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 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함</li> <li>-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과 불법중개수수료 경고문구는 상호의 글자와 글자 크기를 같거나 크게 하고, 그 밖의 광고사항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함</li> <li>- 상호 및 등록번호는 광고 왼쪽상단에 표시함</li> <li>- 방송(라디오 방송 제외), 지면, 옥외간판, 현수막, 인터넷을 통한 광고는 상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및 차입의 위험성과 불법중개수수료 경고문구의 글자를 해당 광고에 표시된 최대글자의 3분의 1 이상의 크기로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함</li> <li>- 방송(라디오 방송 제외)을 통한 광고는 상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및 차입의</li> </ul>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위험성과 불법중개수수료 경고문구에 관한 내용이 전체 광고시간의 5분의 1 이상 자막으로 표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을 통한 광고는 해당 홈페이지의 최초 화면에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일반인이 인식하기 쉬운 방식을 통해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li> <li>- 고객모집 또는 대부상품 홍보를 위해 전화번호를 표기할 경우에는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제2호에 따른 경고문구 등 필수 표기사항을 모두 표시하되, 간판 등 단순히 영업소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경우 또는 음악, 체육행사 등의 후원 목적에 불과할 경우에는 상호 또는 상표만 표시할 수 있음</li> </ul> <p>라. 방송 광고의 시간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일의 경우 오전 7시~오전 9시 및 오후 1시~오후 10시, 토요일과 공휴일의 경우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이용한 광고가 금지됨</li> </ul>		
	<p>□ 예금보험관계의 표시</p> <p>가. 표시의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보금융회사</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은행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은행법 제8조 제1항)</li> <li>2) 한국산업은행(한국산업은행법)</li> <li>3) 중소기업은행(중소기업은행법)</li> <li>4) 농협은행(농업협동조합법)</li> <li>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법)</li> <li>6)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은행법 제58조제1항)</li> <li>7)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9조</li> <li>-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위원회</li> <li>- 구조개선정책과 (☎ 02-2156-9453)</li> </ul>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채결회사 및 예금 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제외</p> <p>8) 증권금융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p> <p>9)보험회사(보험업법 제4조제1항)</p> <p>- 재보험 또는 보증보험사업을 주로 하는 보험회사는 제외</p> <p>10) 종합금융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p> <p>11)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상호저축은행법)</p> <p>나. 대상 상품</p> <p>1) 은행이 예금·적금·부금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p> <p>2)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위탁받은 금전(증권금융회사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금전 포함)과 동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p> <p>3)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받은 수입보험료,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받은 금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p> <p>4) 종합금융회사 및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 관한법률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와 합병한 은행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제1항에 따라 어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이를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 조달한 금전</p> <p>5) 상호저축은행이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 등으로 조달한 금전. 다만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경우에는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만 해당</p> <p>6) 제외 대상</p> <p>가) 부보금융회사가 조달한 금전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조달한 금전은 대상상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p> <p>(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p> <p>(2)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p> <p>(3) 다른 부보금융회사</p> <p>-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인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적립금(예금등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으로 한정)을 예치받은 경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개설된 신탁업자인 부보금융회사로부터 금전(예금등으로 운용되는 금전으로 한정)을 예치받은 경우는 제외</p> <p>나) 은행이 조달한 금전으로서 다음의 방법으로 조달한 금전은 대상상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p> <p>(1) 양도성예금증서</p> <p>(2) 개발신탁</p> <p>(3) 채권의 발행</p> <p>(4)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p> <p>다)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부터 예탁받은 금전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대상상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p> <p>(1) 투자자예탁금에 관하여 발생한 조세의 납부를 위하여 예탁되어 있는 금전</p> <p>(2)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여 조달한 금전</p> <p>(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을 위하여 예탁되어 있는 금전</p> <p>(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에게 대부한 증권의 담보를 위하여 예탁된 금전중 동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에 보관된 금전</p> <p>라) 보험회사가 수입한 수입보험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대상상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p> <p>(1)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p> <p>- 다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또는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는 제외</p> <p>(2) 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p> <p>(3)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p> <p>마) 부보금융회사의 해외 지점이 조달한 금전으로서 해당 해외 지점이 소재한 국가의 예금보험제도 등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고 공사가 인정한 금전은 대상상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p> <p>다. 보험관계의 성립</p> <p>- 예금보험공사와 부보금융회사 및 예금자등 사이의 보험관계는 예금자등이 부보</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금융회사에 대하여 예금등 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성립함</p> <p>라.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보금융회사는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여부와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함</li> </ul>		
8. 사업서비스업	<p>□ 변호서비스 광고</p> <p>가. 광고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li> </ul> <p>나. 광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원의 학력·경력·주요취급업무·업무실적 기타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li> </ul> <p>다. 광고매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li> </ul> <p>라. 제한되는 광고의 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변호사의 업무 및 경력에 관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표시한 광고</li> <li>2)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으로 고객을 오도하거나 고객으로 하여금 객관적 사실에 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li> <li>3) 승소율, 석방율 기타 고객으로 하여금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li> <li>4) 다른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변호사나 그 업무의 내용을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li> <li>5) 변호사의 품위 또는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li> <li>6) 특정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나 이해관계인(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 예상되는 자 포함)에 대하여 그 요청이나 동의 없이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우편, 문자</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호사법 제23조</li> <li>- 변호사업무광고 규정(대한변호사협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 법무과 (☎02-2110-3657)</li> </ul>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메시지 송부,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접촉하여 당해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내용의 광고(다만, 소속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 허용)</p> <p>7) 국제변호사 기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p> <p>8) 과거에 취급하였거나 관여한 사건이나 현재 수임중인 사건 또는 의뢰인(고문 포함)을 표시하는 내용의 광고(다만, 의뢰인이 동의하거나, 당해 사건이 널리 일반에 알려져 있거나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등 의뢰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허용)</p> <p>9)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 등 업무(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목에 정한 사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p> <p>10)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에서 정한 수임 제한의 해제 광고</p> <p>11)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전문' 표시 광고</p> <p>12)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광고</p> <p>13) 기타 법령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이나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p> <p>마. 제한되는 광고의 방법</p> <p>1) 현재 및 과거의 의뢰인(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담당 임·직원 포함), 친구, 친족 및 이에 준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방법의 광고(다만, 상대방의 동의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허용)</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2) 불특정다수인에게 팩스,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광고 3) 광고이면서도 광고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광고 4) 광고 대상자에게 금품 기타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공여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광고 5) 자동차, 전동차, 기차, 선박, 비행기 기타 운송수단의 외부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방식의 광고 6)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애드벌룬, 도로상의 시설 등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방식의 광고 7) 광고 전단, 명함 기타 광고물을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나누어주거나, 차량, 비행기 등을 이용하여 살포하는 방식의 광고 8) 확성기, 샌드위치맨, 어깨띠 등을 사용하는 광고 9) 관련 행정법령 등 법령에 위반되는 광고		
	<input type="checkbox"/> 외국법자문서비스 광고 가. 광고자 - 외국법자문사 또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나. 광고내용 -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원자격국, 학력, 경력, 전문분야,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다. 광고매체 - 방송·신문·잡지·컴퓨터통신 등 라. 금지되는 광고 1) 외국법자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 외국법자문사법 제31조 - 외국법자문사업무광고규정 (대한변호사협회)	- 법무부 국제법무과 (02-2110-3661)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p> <p>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p> <p>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p> <p>5) 다른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또는 합작법무법인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p> <p>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외국법자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p> <p>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외국법자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입(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p>		
9. 교육서비스업	<p>□ 학원 교습비등의 표시·광고</p> <p>가. 표시·광고의무자 : 학원설립·운영자</p> <p>나. 표시사항</p> <p>1) 강사의 인적사항</p> <p>- 강사의 성명, 성별, 연령, 생년월일, 학력(전공과목), 경력, 소지자격증, 채용일자</p> <p>* 시행규칙 제10조 별지 제15호 서식 참조</p> <p>2) 교습비등(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및 기타경비)</p> <p>- 교습과목, 교습비, 징수단위(월, 분기), 기타경비(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p> <p>* 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24호의2호 서식 참조</p> <p>다. 표시방법</p> <p>-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위의 표시사항을 게시하여야 함</p> <p>라. 광고방법</p>	<p>-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5조</p> <p>-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5조</p>	<p>-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80, 6265)</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을 표시하여야 함.</li> </ul>		
	<p>□ 자격증 관련 표시</p> <p>가. 광고시 의무 표시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의 종류</li> <li>- 등록번호 또는 공인번호</li> <li>- 해당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li> <li>-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등에 드는 총비용 및 환불에 관한 사항</li> <li>- 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의 전화번호(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와 실제 광고주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각각의 전화번호를 말한다)</li> </ul> <p>나. 광고시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사항</p> <p>(1)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p> <p>(2)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에 해당되는 광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등록자격, 공인자격 또는 국가자격이 아님에도 등록자격, 공인자격 또는 국가자격으로 표현하는 광고</li> <li>② 공인자격이 아님에도 공인자격 또는 국가자격과 같거나 같은 수준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표현하는 광고</li> <li>③ 등록자격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인정 또는 공인한 자격" 또는 "교육부가 인정 또는 공인한 자격" 등으로 표현하여 공인자격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li> <li>④ 국가자격이 아님에도 "국가자격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표현하거나 등록자격 또는 공인자격이 아님에도 "등록예정", "공인 예정" 등의 내용으로 표현하여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li> <li>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최대", "국내 유일", "최고 자격" 등의 표현으로 해당 자격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자격인 것으로 과장하는 광고</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기본법 제 33조</li> <li>- 같은법 시행령 제 31 조 의 5, 제31조의6</li> <li>- 홈페이지와 민간 자격정보시스템에 공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li> <li>인재직무능력 정책과 (2044-203-6246)</li> </ul>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⑥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취업 보장", "고소득 가능", "채용 가산점"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p> <p>⑦ 교육훈련 이수시간과 교육훈련방법(집합 교육 또는 원격교육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광고</p> <p>⑧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등에 사용되는 교재의 금액과 구입 후 계약 파기시의 환불 기준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광고</p> <p>⑨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등에 드는 총비용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광고</p> <p>⑩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유형에 준하는 것으로서 주무부장관이 거짓 또는 과장 광고로 홈페이지와 민간자격정보 시스템에 공고한 광고</p>		
	<p>□ 학원 등의 선행학습 광고 금지</p> <p>가. 광고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p> <p>나. 금지되는 광고</p> <p>1)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p>	<p>- 공교육정상화 - 촉진 및 선행 - 교육 규제에 - 관한 특별법 - 제8조</p>	<p>- 교육부 - 학교정책과 (☎044-203-6439)</p>
10. 보건사업	<p>□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p> <p>가. 표시의무자</p> <p>- 의료기관</p> <p>나. 표시방법</p> <p>-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류(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 앞에 고유명칭을 붙임. 이 경우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하되,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p>	<p>- 의료법 제42조 - 동법 시행규칙 - 제40조, 제42조</p>	<p>-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3)</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음</li> <li>-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은 지정받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전문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음</li> <li>-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의원·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음</li> <li>- 부속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앞에 그 개설기관의 명칭과 "부속"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함</li> <li>-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만 해당한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만 해당한다),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의원·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해당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만을 표시할 수 있음.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1조에</li> </ul>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따른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함</p>		
	<p><input type="checkbox"/> 진료과목의 표시</p> <p>가. 표시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기관</li> <li>-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고 표시할 수 있음</li> </ul> <p>나.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다음과 같음</li> </ul> <p>1) 종합병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의 2) 및 3)의 진료과목</li> </ul> <p>2) 병원 또는 의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응급의학과</li> </ul> <p>3)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및 통합치의학과</li> </ul> <p>4)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법 제43조</li> <li>- 동법 시행규칙 제41조,[별표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li> <li>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3)</li> </ul>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5) 요양병원 위의 2) 및 4)의 진료과목 6)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한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동법 시행 규칙 [별표8]과 같음 7) 의료기관이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경우 에는 위의 진료과목 중 그 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장비 및 의료관계 인에 해당하는 과목만을 표시할 수 있음 8)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 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함		
11. 오락, 문화 관련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우수문화상품 등의 지정·표시 가. 표시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은 자 나. 표시방법 - 지정을 받은 당해 제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당 제품 또는 그 포장지 등에 부착할 수 있음 ※ 우수문화상품 표지 도안 모형 : 동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그림생략) 1) 표시도형의 세로의 길이(A)를 기준으로 가로의 길이(왼쪽 끝에서 KOREA의 오른쪽 끝까지)는 $1.01 \times A$ 로 하고, KOREA의 세로 높이는 $0.13 \times A$ , KOREA의 가로 길이는 $0.57 \times A$ 로 하며, 세로의 길이(A)는 15밀리미터 이상으로 함. 2) 표시도형의 색상은 흰색 그라데이션(K10~K25), 빨간색 그라데이션(M100+Y100+K10~M100+Y100+K60), 파란색 그라데이션(C100+M80~C100+M80+K45)으로 하되, 옷고름 중앙 마름모형태의 매듭 모형의 색상은 파란색 C100+M80으로, KOREA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5조 - 동법 시행령 제19조 -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044-203-2418)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의 글자색상은 파란색 C100+M80+K30으로 함.</p> <p>3) 표시도형의 바탕색은 흰색으로 함.            ※ 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표지 사용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지의 색상과 크기를 달리 정할 수 있음.(별도안내)</p>		
	<p>□ 복권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광고</p> <p>가. 표시·광고 의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권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li> </ul> <p>나. 표시·광고 장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복권면</li> <li>2) 다음의 광고물(* 다.(1)만 표시하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방송법에 의한 방송광고</li> <li>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게재하는 광고</li> <li>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옥외광고물</li> </ul> </li> </ol> <p>* 표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p> <p>다. 표시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경고문구</li> <li>2) 복권사업자</li> <li>3) 복권수익금의 사용용도</li> <li>4) 복권이 파손 등으로 당첨여부 또는 진위를 구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첨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뜻</li> <li>5)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기간</li> <li>6) 등위별 당첨금 또는 등위별 당첨금비율 등 당첨금 내역(온라인복권의 경우에는 복권신청양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같음)</li> <li>7) 당첨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장소</li> <li>8) 당첨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온라인복권의 경우에는 복권신청양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같음)</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권 및 복권기</li> <li>- 금법 제7조</li> <li>- 동법 시행령 제5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재정부</li> <li>- 복권총괄과</li> <li>(☎044-215-7811)</li> </ul>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 경륜·경정의 승자투표권의 표시·광고</p> <p>가. 표시·광고의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주사업자</li> </ul> <p>나. 표시·광고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자투표권</li> <li>- 경주장 및 장외매장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li> <li>- 경주사업자가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홍보자료</li> <li>- 그 밖에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li> </ul> <p>* “승자투표권”이라 함은 경륜 또는 경정 개최시 승자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경륜 또는 경정사업자가 발매하는 승자투표 방법·선수번호 및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표를 말함</p> <p>다. 표시·광고 장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자투표권의 앞·뒷면</li> <li>- 경주장 및 장외매장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 경주사업자가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홍보자료, 그 밖에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의 각 광고면 하단 중앙의 잘 보이는 곳</li> </ul> <p>라. 표시·광고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규칙 제15조 별표2 참조</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나친 구매행위는 자신과 가정에 해가 됩니다.</li> <li>2) 무리한 구매행위는 가족의 행복마저 빼앗아 갑니다.</li> <li>3) 과도한 구매행위는 불행의 시작입니다</li> </ol> <p>마. 표시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고문구는 사각형의 선 안에 한글로 "경고 : "라고 표시하고 표시내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표기하되, 승자투표권의 앞·뒷면에 각기 다른 내용으로 표기하여야 함</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륜·경정법 제10조</li> <li>- 동법 시행령 제17조</li> <li>- 동법 시행규칙 제15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044-203-3121)</li> </ul>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2) 사각형의 크기는 승자투표권의 경우에는 앞·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시하고 스티커·포스터·홍보자료 또는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의 경우에는 광고물의 크기에 따라 별도로 정한 사각형의 크기(세부내용 생략)에 비례하여 표시하여야 함</p> <p>3) 경고문구의 글씨는 이용자가 명확히 잘 볼 수 있는 크기로 표시하여야 함</p> <p>4) 사각형 및 경고문구의 색상은 승자투표권 또는 광고의 특성에 맞게 하되, 표시내용이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보색(補色) 관계에 있는 색을 사용하여야 함</p> <p>5) 표시위치는 승자투표권의 경우에는 앞·뒷면 하단에 표기하고, 스티커·포스터·홍보자료 또는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의 경우에는 각 광고면 하단 중앙의 잘 보이는 곳에 표기하여야 함</p>		
	<p><input type="checkbox"/> 사행기구의 표시</p> <p>가. 표시의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행기구제조업자 및 판매업자</li> </ul> <p>나. 표시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전판돌리기업에 이용되는 사행기구</li> </ul> <p>다. 표시사항</p> <p>1) 품명, 2) 제조연월일, 3) 제조번호</p> <p>4) 형식명칭(모델명), 5) 규격</p> <p>6) 제조업자, 7) 연락처(A/S)</p> <p>라.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시사항은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부착 또는 압날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16조</li> <li>-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li> <li>- 동법 시행규칙 제21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청 생활질서과 (☎02-3150-1355)</li> </ul>
	<p><input type="checkbox"/>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표시</p> <p>가. 표시의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반 등(음반, 음악과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과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li> <li>- 동법 시행령 제11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044-203-2432)</li> <li>- 대중문화산업과 (☎044-203-2464)</li> </ul>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나. 표시사항</p> <p>1) 상호, 제호, 제작연월일(수입 또는 복제의 경우에는 수입 또는 복제연월일)</p> <p>2)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 결과에 따른 등급표시(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에 한함)</p> <p>다.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반 : 나.1)의 사항을 표지 또는 포장지에 표시</li> <li>- 음악파일 : 나.1)의 사항을 전자적 형태로 표시</li> <li>- 음악영상물 : 나.1) 및 2)의 사항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업자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 중 표시 연월일과 이용조건만을 표시하고 나.1)의 사항을 표시</li> <li>- 음악영상파일 : 나.1)의 사항을 전자적 형태로 표시하고, 나.2)의 사항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업자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 중 표시 연월일과 이용조건만을 표시하고 나.1) 및 나.2)의 사항을 표시</li> </ul> <p>&lt;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제2항&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나 그 밖의 사항 : 해당 비디오물과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이나 후면의 하단</li> <li>* 비디오물의 등급표시 : 해당 비디오물과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과 옆면의 하단</li> <li>* 전체관람가등급 : 지름 2cm 이상의 원형 안에 녹색바탕에 검정글씨</li> <li>* 12세 이상 관람가등급 : 지름 2cm 이상의 원형 안에 파란색바탕에 검정글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5조</li> <li>- 동법 시행령 제27조</li> </ul>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세 이상 관람가등급 : 지름 2cm 이상의 원형 안에 노랑색바탕에 검정글씨</li> <li>* 청소년관람불가등급 : 지름 2cm 이상의 원형 안에 붉은색바탕에 흰글씨</li> </ul>		
	<p>□ 비디오물의 표시</p> <p>가. 표시의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리의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li> </ul> <p>나. 표시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함)</li> <li>-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 결과에 따른 등급, 내용정보</li> <li>-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의 신고번호(법 제5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li> <li>-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비디오물 등급분류 번호(법 제50조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li> <li>- 제작연월일</li> <li>- 방송프로그램을 비디오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방송법」에 따른 시청등급,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일자 및 해당 방송사명</li> </ul> <p>다.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나 그 밖의 사항 : 해당 비디오물과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 또는 후면의 하단</li> <li>- 비디오물의 등급 : 해당 비디오물과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과 옆면의 하단</li> <li>-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이나 뒷면의 하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적인 사항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li> <li>*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7조에 따라 표시한 사항 외에 별표 3에 따른 사항을 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5조</li> <li>- 동법 시행령 제27조</li> <li>- 동법 시행규칙 제25조</li> </ul>	<p>-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044-203-2432)</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 게임물의 표시</p> <p>가. 표시의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li> </ul> <p>나. 표시사항</p> <p>1) 아케이드게임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게임물의 제명, 상호, 이용등급, 등급분류번호, 제작 또는 배급된 게임물의 일련번호 및 제작연월일, 게임물내용정보, 게임물 운영정보</li> </ul> <p>2) 온라인게임물 및 모바일게임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게임물의 제명, 상호, 이용등급, 등급분류번호, 제작연월일, 게임물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의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li> </ul> <p>3) 개인용컴퓨터(PC)게임물 및 비디오게임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게임물의 제명, 상호, 이용등급, 등급분류번호, 제작연월일, 게임물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의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게임물내용정보, 게임물 운영정보</li> </ul> <p>다.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케이드게임물 : 게임기의 외관 전면</li> <li>- 온라인게임물 및 모바일게임물</l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게임초기화면 우측상단에 이용등급을 3초이상 표시</li> <li>· 온라인게임물의 경우 게임이용 1시간마다 이용등급 3초 이상 표시 또는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등급확인. 단,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초기화면이나 홈페이지 등에서 누구든지 이용등급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한 때에는 제외</li> <li>· 모바일게임물의 경우 초기화면에 이용등급 표시</li> </ul> </ul> <p>4) 개인용컴퓨터(PC)게임물 및 비디오게임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게임물 포장의 표면에 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li> <li>- 동법시행령 제19조, 별표3</li> </ul>	<p>-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044-203-2442)</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p> <p>가. 표시의무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인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라목에 따른 영화상업업자</li> <li>2.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인 경우: 해당 비디오물을 제작·수입·복제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li> <li>3.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인 경우: 해당 게임물을 제작·수입·복제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li> <li>4.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인 경우: 해당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을 제작·수입·복제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li> <li>5.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공연법」에 따른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한다)인 경우: 「공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연자 중 공연을 주재(主宰)하는 자</li> <li>6.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 정보인 경우: 해당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자</li> <li>7.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인 경우: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li> <li>8.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인터넷신문인 경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발행인</li> <li>9.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정기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인 경우:</li> </ol>	<p>- 청소년보호법 제13조</p> <p>-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p>	<p>- 여성가족부</p> <p>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2)</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해당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 간행물을 제작·수입·발행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p> <p>10.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인 경우: 해당 간행물,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을 제작·수입·발행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p> <p>11.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광고선전물 중 간행물에 포함된 것인 경우: 해당 간행물의 표시 의무자</p> <p>나. 표시문구 및 방법</p> <p>1) 영화</p> <p>가) 표시문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세 미만 관람 불가</li> </ul> <p>나)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시문구는 한쪽이 400mm 이상, 다른 한쪽이 100mm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li> <li>- 표시는 해당 영화상영관의 매표소와 출입구에 한다.</li> </ul> <p>2) 비디오물</p> <p>가) 표시문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세 미만 시청 불가</li> </ul> <p>나)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시문구는 한쪽이 60mm 이상, 다른 한쪽이 15mm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li> <li>- 표시는 해당 매체에 표시한다.</li> <li>-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한다.</li> </ul> <p>3) 게임물</p> <p>가) 표시문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세 미만 이용 불가</li> </ul> <p>나) 표시방법</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시문구는 한쪽이 60mm 이상, 다른 한쪽이 15mm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li> <li>- 표시는 해당 매체물에 표시한다.</li> <li>- 게임물의 경우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한다.</li> </ul> <p>4. 음반, 음악영상물</p> <p>가) 표시문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세 미만 청취 불가</li> </ul> <p>나)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시문구는 한쪽이 60mm 이상, 다른 한쪽이 15mm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li> <li>- 표시는 해당 매체물에 표시한다.</li> <li>- 음악영상의 경우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한다.</li> </ul> <p>5. 음악파일, 음악영상파일</p> <p>가) 표시문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세 미만 이용 불가</li> </ul> <p>나)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한다.</li> </ul> <p>6.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한다)</p> <p>가) 표시문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세 미만 관람 불가</li> </ul> <p>나)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시문구는 한쪽이 400mm 이상, 다른 한쪽이 100mm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li> <li>- 표시는 해당 공연장의 매표소와 출입구에 한다.</li> </ul>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7.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p> <p>가) 표시문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세 미만 이용 불가</li> </ul> <p>나)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한다.</li> </ul> <p>8. 방송프로그램(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p> <p>가) 표시문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세 미만 시청 불가</li> </ul> <p>나)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의 방송을 시작하기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시청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한다.</li> <li>- 프로그램의 방송 중에는 지름 20mm 이상이고 붉은색 테두리 두께가 3mm 이상인 크기의 원형 마크 안에 "19"라는 숫자를 흰색 바탕에 검정색으로 기재하여 화면 오른쪽 상단에 표시한다.</li> </ul> <p>9. 신문</p> <p>가) 표시문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세 미만 구독 불가</li> </ul> <p>나)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시문구는 한쪽이 60mm 이상, 다른 한쪽이 15mm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li> <li>- 표시는 해당 매체물의 앞표지와 뒷표지의 오른쪽 상단에 한다.</li> </ul> <p>10. 인터넷신문</p> <p>가) 표시문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세 미만 이용 불가</li> </ul> <p>나)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한다.</li> </ul>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11. 잡지, 정보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가) 표시문구 - 19세 미만 구독 불가 나) 표시방법 - 표시문구는 한쪽이 60mm 이상, 다른 한쪽이 15mm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 - 표시는 해당 매체물의 앞표지와 뒷표지의 오른쪽 상단에 한다.</p> <p>12. 간행물 및 외국간행물 가) 표시문구 - 19세 미만 구독 불가 나) 표시방법 - 표시문구는 한쪽이 60mm 이상, 다른 한쪽이 15mm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 - 표시는 해당 매체물의 앞표지와 뒷표지의 오른쪽 상단에 한다.</p> <p>13. 전자간행물 및 전자출판물 가) 표시문구 - 19세 미만 이용 불가 나) 표시방법 -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한다.</p> <p>14. 광고선전물 중 간행물에 포함된 것 가) 표시문구 - 19세 미만 구독 불가 나) 표시방법 - 표시문구는 한쪽이 60mm 이상, 다른 한쪽이 15mm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 - 표시는 해당 매체물의 앞표지와 뒷표지의 오른쪽 상단에 한다.</p> <p>* 비고 : 표시문구 및 표시방법의 경우</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 결혼중개업자의 표시·광고 의무사항</p> <p>가. 표시·광고의 주체 : 국내·국제결혼중개업자</p> <p>나. 표시·광고의 범위</p> <p>1) 표시 : 결혼중개서비스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중개사무소 등의 게시물 또는 회원권 등에 쓰거나 붙인 것</p> <p>2) 광고 : 결혼중개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방송, 전기통신이나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p> <p>다. 표시·광고시 의무적 포함 내용</p> <p>1) 국내결혼중개업 : 신고번호</p> <p>2) 국제결혼중개업 : 등록번호</p> <p>라. 표시·광고시 금지사항 :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p> <p>*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범위</p> <p>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p> <p>가.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p> <p>나.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성혼율 100%", "우수회원 1위"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p>	<p>-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p>	<p>-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지원과 (☎ 02-2100-6377)</p>

구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p>2. 회원모집, 계약 등 결혼중개를 하면서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p> <p>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 국가, 인종, 피부색, 성별, 나이, 종교, 장애, 사회적 신분, 미혼·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관련 사실, 임신 또는 출산 여부, 성적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내용의 표시·광고</p> <p>나. 용모 등 신체적 결함 및 약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내용의 표시·광고</p> <p>다. 다른 민족이나 다른 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의 표시·광고</p> <p>라. 사회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과도한 비속어, 은어 등이 사용된 표시·광고</p> <p>마. 저속하고 음란·선정적인 표현이 포함되거나 신체부위를 언급하는 방법으로 성적 충동을 유발할 수 있는 표시·광고</p> <p>바.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는 내용의 표시·광고</p> <p>사.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내용의 표시·광고</p> <p>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의 표시·광고</p> <p>자.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寄宿)시키는 행위</p>		